

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09. 11

결과보고서 목차

서문

- 인사말.1 이 광 영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 인사말.2 이 범 재 대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인사말.3 김 호 상 대표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본문

- 1장. 14회 부산국제영화제 모니터링의 의의.....7
 - 김 호 상 대표 부산장애인인권포럼
- 2장. 상영관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15
 - 전 혜 주 활동가 부산장애인인권포럼
- 3장. 영화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25
 - 손 원 진 사무국장 부산장애인인권포럼
- 4장. 영화참여 만족도 모니터링 결과.....35
 - 전 응 길 연구원 부산장애인인권포럼
- 5장.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 결과.....45
 - 윤 승 현 연구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웹와치사업단
- 6장. 소외계층 참여확대를 위한 인권친화적 문화시설 구축 및 운영.....71
 - 김 대 성 사무총장 한국 DPI
- 7장.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85
 - 김 철 환 활동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 8장. 14회 부산국제영화제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 및 장애인 문화참여 현황과 과제...99
 - 손 원 진 사무국장 부산장애인인권포럼
- 9장. PIFF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단 활동소감.....109
 -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단

별첨

- 별첨.1 PIFF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 평가지표.....117
- 별첨.2 PIFF 조직위원회, 지자체 질의 및 답변내용.....129
- 별첨.3 모니터링 결과 통계자료.....141
- 별첨.4 PIFF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단 소개.....163

인사말.1

이 광 영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창조와 여유로운 삶을 위한 문화향유권, 모두의 권리입니다.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도 나타나듯이 문화향유권이란 장애의 유무, 수입의 정도, 학력의 정도, 지역간 차이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 외에 창조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질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만의 독특한 욕구의 표현이며,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참여와 간접적인 참여 모드를 보장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모두가 인지하는 것처럼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시민을 넘어 전국민, 세계인의 영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장애인 접근 및 참여에 있어서도 여타 문화행사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 및 참여의 방법은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문화의 주체로서 농촌지역민, 빈곤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종종 잊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도시 중심의 문화정책, 경제수준과 문화향유권은 언제나 비례한다는 일부의 생각, 문화접근성 및 참여에 대한 감수성 부족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화공간 조성에 있어서 지역간 차이를 고려하고, 저소득층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문화를 누릴 방법 차이를 인정(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하여 이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 대표되는, 보고, 듣고, 움직이는 방식이 대다수의 국민과 다른 장애인에 대한 문화 접근과 참여의 확대를 시작으로 모든 사람들이 창조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도 인권친화적 문화·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자 인권교육, 장애인편의제공 및 만족도 설문 및 발표회 등에 도움을 주신 부산광역시와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만드는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2009년 11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소장

이 광 영

인사말.2

이 범 재 대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영화, 장애와 소통할 것인가?

신체적 손상과 이를 장애로 전환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시작되는 장애의 역사는 특수하게도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장애의 문제가 사회화되는 최초의 시작점이 다름 아닌 의학기술과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장애의 과학/기술 의존성은 숙명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현대의 대부분의 사회운동과 소수자의 운동이 과도한 기계화에 반대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것에 반하여 장애나 장애인이 어쩔 수 없이 기술과 과학에 의존적인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며, 과연 기술과 과학이 어떻게 장애라는 특성을 지닌 인간성과 만날 수 있을 것인가는 하나의 철학적 사건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미지 생성의 기술에 의존하는 영화와 장애의 만남을 지켜볼 수 있다. 약 백 년 전에 태어나고 이제 그 절정에 도달한 영화/영상 기술은 장애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의 수준은 매우 사회 의존적이다. 장애인의 인권은 여성이나 인종적 차별에 비한다면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 장애인이 이들보다는 인구학적으로 소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으로는 근대의 '노동'에 포섭될 수 없는 존재였으므로 하여 장애인은 오랫동안 근대적 시민권의 밖에서 머물러 있어왔다.

근대적 의미의 권리들은 대부분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과 함께 해왔고 그 경로를 따라 수입되어 왔다. 그런 면에서 주택과 같은 오래된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분야에 서보다는 서양의술이나 교통과 관련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장애인의 권리가 더 발전적인 측면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근대적 교통기술에서의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사례를 들 수 있다. 다양한 장애인을 위한 탑승/조종 장치들의 개발, 장애인 전용주차 공간과 같은 편의적 제도들, 철도나 비행기의 탑승 요금 할인제도, 자동차보유세의 면제나 할인 및 유류세의 할인제도와 같은 세제들을 보면 어떤 과학기술 분야보다도 다양하게 발전해온 교통기술의 장애인 권리옹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영화의 역사가 교통의 역사와 비슷한 연륜을 가진 것에 비한다면, 교통수단의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소수자를 위한 제도에 비교한다면 영화가 보여준 노력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영화가 기본적으로 소통을 위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소통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기술적 발전 및 제도적 보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영화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호사스럽다고 할지 모른다. 어쩌면 장애인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기술적, 제도적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본의 입장에서 고려되기 어렵다고 할지도 모른다. 장애와 장애에 대한 차별의 역사로 인해 제약된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은 이런 주장이 현실적임을 보여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현실적 고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또한 현대적 과학/기술의 총아인 영화가 이에 걸맞는 응답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번 14회 부산국제영화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보여지듯 영화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영화가 상영되는 그 오래된 권력인 영화관보다는 훨씬 장애인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부산국제영화제가 장애라는 특수한 집단에게 더 많은 소통을 허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은 또한 신생의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영화가 마땅히 보여줘야 할 진보적 태도일 것이다.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의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장애인 모니터링 요원들, 공동의 작업에 참여한 인권위원회 부산지부, 모니터링에 필요한 예산을 허락해 준 보건복지부, 그리고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산국제영화제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상이한 기관간의 협력과 노력은 우리에게 현실의 어려움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에 희망을 갖도록 한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2008년 11월 11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이 범 재

인사말.3

김 호 상 대표

관계당국과 국제영화제 조직위 측의 노력필요...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인권포럼

국내의 영화 관계자와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10월8일 시작돼 16일까지 이어졌던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작 - 굿모닝 프레지던트, 폐막작 - 바람의 소리의 상영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총 355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비 아시아권 영화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플래시 포워드' 부문이 신설되는 등 규모와 내실 면에서 관록 할 만한 성장을 이뤘단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제 국내 최고의 영화제로 평가 받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장애인의 접근과 참여가 용이한 영화축제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비장애인 중심의 문화 환경 속에서 장애인은 문화에 접근에서부터 어려움이 많아 장애인들이 문화를 마음껏 즐기기에 많은 제약과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에 접근하고, 그것을 향유할 권리는 비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번 주최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영화상영의 절대부족과 웹, 점자 인쇄물 부족, 외부 행사장 접근권, 이동수단(셔틀버스)부재, 등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주최측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시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영화제에서는 PIFF 조직위 측의 개선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가령,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 상영, 점자 시간표 등, 물리적 접근성 외에도 영화라는 문화상품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와 향유를 돕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습니다.

PIFF의 물리적 접근성의 노력과 인권위에서 실시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개선 및 서비스교육” 실시와 당사자단체에서의 역할의 중요성은 이번 행사에서도 잘 설명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칸영화제처럼 세계제일의 영화제로 성장시킬 야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상영전용관인 두레리움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레리움이라는 함께 어울린다는 그런 의미처럼 장애인도 함께 어울려서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부산시청 관계당국과 국제영화제 조직위 측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9년 11월 11일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김 호 상

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부산국제영화제 모니터링의 의의

김 호 상 대표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부산국제영화제 모니터링의 의의

‘부산국제영화제(PIFF)’는 한국 최초의 국제 영화제로, 세계 영화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 아시아 영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6년에 창설되었다. 해마다 출품작이 늘어 아시아 최고의 영화견본시장이라는 명성을 확보했으며, 현재 14회에 이르고 있는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이다.

그러한 위상에 걸맞지 않게 그 동안의 ‘부산국제영화제(PIFF)’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낙제점 수준이었다. 지난해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시각·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제공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우리 장애인당사자들의 참여와 요구로 인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약간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의 자막상영,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영화와 점자인쇄물 등이 마련됐다. 이연우 감독의 영화 ‘거북이 달린다’(11일)와 박철웅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특별시 사람들’(13일)이 화면해설 영화로 제작돼 이번 부산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되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한국영화이면서도 한글 자막이 들어간 한글 자막 서비스 상영관도 소폭 늘어났다. 그 밖에 각 영화관에는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과 유도시설 등이 설치됐다.

그럼에도 우리 장애인들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 왜 장애인들이 영화제를 모니터링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함께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축제로서의 ‘부산국제영화제(PIFF)’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문화향유권’이란?1)

헌법 제11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8년에 제정된 장애인인권헌장 제7조에서는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에서는 ‘문화활동 참여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강요 금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문화·예술시설 이용 등에 대한 시책 강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본 내용은 “장애 및 병력 차별 시정 국가 정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보고서 /윤점룡 [외지] ;국가인권위원회[편], 2004”의 내용을 인용하였음.

문화향유권이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직업을 갖고 일하는 외에 창조적이고 여유로운 삶의 질을 누리하고자 하는 인간만의 독특한 욕구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문화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음악·문예·무용·연극 등 순수 예술 분야에서부터 영화·오락·취미·스포츠 등의 운동이나 여가에 이르기까지 생계와 관련된 일을 제외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은 직접참여와 간접참여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문화를 향유한다고 할 때 전자보다는 후자를 선호한다. 그것은 직접참여가 오랜 시간과 단련과 비용과 노력이 따르는 반면, 간접참여는 대부분 직접 현장에 가서 일정한 비용만 지불하면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향유권을 말할 때는 직접참여와 간접참여가 모두 보장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꼭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고, 그동안 연마한 기예를 무대 위에서 발표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곡을 듣기 위해 공연장에 가서 관람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문화향유권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모니터링(Monitoring)’을 할 것인가?

최근에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현상을 종합적으로 총괄·평가하는 작업을 가리키는 말로 ‘모니터링(Monitoring)’이란 용어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에 이르러 특정한 하나의 분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시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감사·비판 기능을 통해 건전한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적극적인 참여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모니터링은 장애인당사자에 의해 모두가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부산국제영화제(PIFF)’에 대한 모니터링은 ‘장애인당사자주의²⁾’,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³⁾’에서 그 원론적인 의미를 찾

2) 이익섭 교수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장애인 인권운동 : 그 배경과 철학>에서, “장애인 당사자주의란 장애인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장애인을 억압하는 사회 환경과 서비스 공급체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비판·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한과 선택 및 평가가 중시되는 장애인복지를 추구하고, 그 결과 장애인의 권리, 통합과 독립, 그리고 자조와 자기결정을 달성하려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발전된 권리운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이를 위해 당사자주의 운동은 장애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지향함과 동시에 정책 결정자 및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전문가와의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결정과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영향력 있는 참여를 통한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을 추구하는 성격을 갖는다. 이 정의는 그동안 장애인 관련 노력에 나타난 다양한 개념과 원리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 상호 연관된 원리들의 시간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자료출처 : “장애인당사자주의 대토론회,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말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3) 신기봉의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와 현황에 관한 연구>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이념은 어린아이에서부터 고령자,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 도시환경, 그리고 사회적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환경개선을 전제로 하고

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등의 법적 규제로 인해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편의시설과 웹 접근성의 개선에 대한 논의 등의 장애인 참여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들의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개선과정에서의 장애인당사자의 참여가 배제된 채, 정책입안자들과 일부의 전문가들만으로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완료된 정책들이 다시 점검하고 고쳐야하는 예산낭비의 사례들이 목격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당사자의 의견개진과 참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장애인들은 본인의 의사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으며, 이는 단순히 시혜와 잔여적 관점의 복지정책에서는 일상적으로 발생해왔으며, 특히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예 논의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쉽게 얘기해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의 소통에 있어서도 버거운데, 그 외에 다른 문화적 향유에 대한 논의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우선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답변하는 정책입안자들의 편의적 사고의 벽에 부딪혀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번 반문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대다수의 사람들이 즐기며 공유하는 ‘영화’라는 매체가 일부의 사람들에게 허용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또는 영화가 일부의 장애인들⁴⁾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바른 것인가? 다수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에서 왜 장애인들은 배제되거나, 혹은 불편을 느껴야 하는가?

영화라는 매체, 그리고 그 영화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PIFF)’는 비단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단순히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이주민 그리고 그 외의

있다. 유니버설(Universal)이란 의미는 보편적인 또는 모든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제품, 건물, 환경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초부터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개념도 내포하고 있다. 즉, 전체의 장애유무와 연령, 성별, 국적,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발상의 기점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배리어 프리 디자인(Barrier-Free design)과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의 부위와 정도에 의해 가져올 수 있는 장벽(Barrier, 장벽)에 대처하여 환경이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배리어 프리 디자인(Barrier-Free design)인 반면,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은 모든 자연적, 인위적인 배리어(Barrier, 장벽)요소에 관계없이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전인적인 디자인을 말한다.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홈페이지)

- 4) 굳이 ‘일부의 장애인들’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현재의 영화라는 매체를 포함한 대다수의 멀티미디어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의도적으로 제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일부의 장애인들’이 지칭하는 것은 자막이나 화면해설과 같은 도구들이 필요한 시·청각장애인들과 직접 영화관을 방문했을 경우에 장애인관람석과 같은 편의시설의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들을 포함한다. 이를 좀더 확장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웹디자인 환경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범주가 더 확장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다양성을 가진 소수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기를 바라는 것이며, 이러한 각각의 다양성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단순히 ‘부산국제영화제(PIFF)’를 진행하는 조직위원회를 위시한 관련 기관들의 동정과 시혜의 베푸는 관점이 아닌,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나눔의 관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당사자와의 소통과 당사자들의 참여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장애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장애인당사자들의 참여로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왜 ‘모니터링(Monitoring)’하는가?

결국 “왜 장애인들이 ‘부산국제영화제(PIFF)’를 모니터링하는가?”하는 단순명료한 문제일 것이다. 우리 장애인들이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큰 불편과 제약 없이, 본인이 원하는 영화를 보고자하기 때문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적절한 장애인관람석이 없어 맨 앞자리에서 목에 뺨근함을 느끼며 영화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고, 청각장애인들은 한국영화를 볼 때 대사의 내용을 듣지 못하는 대신에 자막을 통해서 영화를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며, 시각장애인들은 화면해설을 통해서 영화의 흐름을 파악하며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영화를 한 편 관람하는 것이, 부산의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PIFF)’에 참여하는 것이 장애인에게만 어려워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현재 부산시내의 영화관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부산국제영화제(PIFF) 조직위원회’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고자,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PIF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그래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진정한 나눔의 영화제로써의 ‘부산국제영화제(PIFF)’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장애인 문화향유권의 법률적 근거 및 조례 제정 운동

이제 모니터링 사업을 정리하는 자리이니 만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장애인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은 장애인 문화향유권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 법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일이다.

'문화예술교육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자'는 것은 현재 한국사회의 중요한 담론이다. 장애인

이야말로 문화예술교육 확산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계층이라 할 수 있다. 특별한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에서 장애인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러 가는 일에서부터 예술가가 되는데 이르기까지 문화예술 향유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문권 향유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 24조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를 명백한 조항으로 못 박고 있다. 이 조항은 1. 출입구, 위생시설, 관람석 등 시설정비 2. 문화, 예술, 체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3.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을 통한 문화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또 한편으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 25조에서 영화발전기금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에 쓰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스스로가 만드는 영화에 대한 제작 지원은 물론 시·청각 장애인 및 모든 장애인의 영화접근권을 높이는 방법에 영화발전기금의 많은 부분을 쓰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제25조(기금의 용도 <개정 2007.01.26>)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01.26, 2008.6.5>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그러나 문제는 부산광역시의 그 어느 자치법규에도 장애인의 문화권이나 영화향유권을 위한 조항은 없다는 점이다. 현재 부산광역시의 영화에 관한 자치 법규는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조례」와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인데 그 조항을 면밀히 살펴봐도 소외계층이나 장애인의 영화향유권이나 문화권을 위한 조항이 없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상위법에 있다고해서 자치 법규에 모든 조항이 다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문제는 실제로 장애인이 이런 법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때 사회적인 차별과 소외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제화 시대의 세계적인 도시로 비상을 꿈꾸는 부산으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할 지도 모른다.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기본이 되는 자치 법규에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장애인의 영화향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지방자치 법규 제·개정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제도화 사항

1.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수단과 지원을 제도화 한다.
 2.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문화시설 및 문화축제를 계획할 시에 기획단계에서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소수자들이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반영한다.
-

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상영관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전혜주 활동가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인권포럼

14회 부산국제영화제 상영관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편의시설 조사는 작년 항목과 같이 13개 종류의 편의시설 80개 세부 항목으로 편의시설 증진법이 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 조사 시설은 38개 상영관, 5개 극장, 1개 야외극장으로 영화제가 실제 진행된 극장시설이 그 목적 대상이었다. 조사자 구성으로 1명의 단장과 18명의 모니터단을 구성해 2회의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1차 교육으로 전반적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 2차 교육으로 편의시설조사 내용의 설명과 일정표·비품배분으로 교육을 각각 2시간 정도로 진행하였다. 모니터단의 구성으로 뇌병변장애인 5명, 지체장애인 6명, 청각장애인 1명, 비장애인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휠체어나 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4명이다. 활동기간은 개막일과 폐막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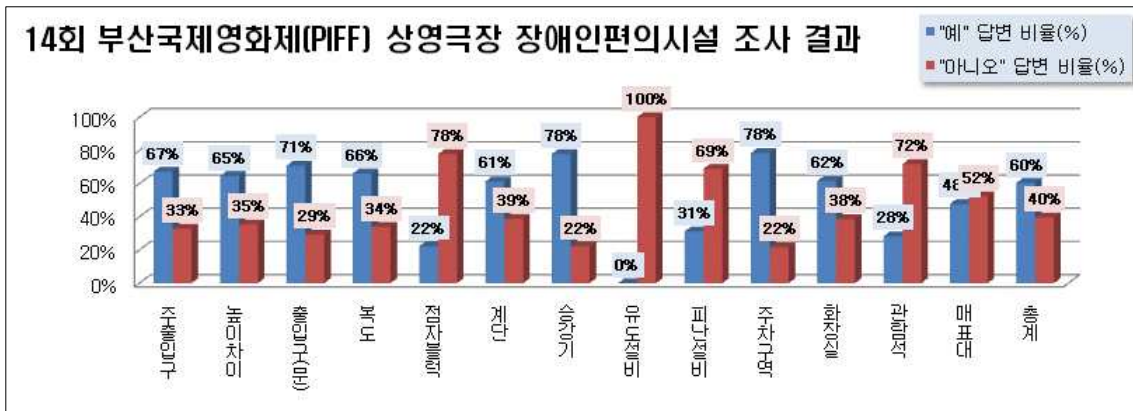
<표2-1> 편의시설 조사 항목별 결과

번호	항목	질문수	예	아니오	응답수	응답율	예	아니오	득점비율
					57개		%	%	
1	주출입구	5	168	82	250	87.72%	67.20%	32.80%	58.95%
2	높이차이	2	51	28	79	69.30%	64.56%	35.44%	44.74%
3	출입구(문)	7	215	89	304	76.19%	70.72%	29.28%	53.88%
4	복도	2	74	38	112	98.25%	66.07%	33.93%	64.91%
5	점자블럭	3	26	91	117	68.42%	22.22%	77.78%	15.20%
6	계단	9	249	157	406	79.14%	61.33%	38.67%	48.54%
9	승강기	7	274	78	352	88.22%	77.84%	22.16%	68.67%
10	유도설비	1	0	46	46	80.70%	0.00%	100.00%	0.00%
11	피난설비	1	14	31	45	78.95%	31.11%	68.89%	24.56%
12	주차구역	6	244	67	311	90.94%	78.46%	21.54%	71.35%
13	화장실	13	390	244	634	85.56%	61.51%	38.49%	52.63%
14	관람석	5	66	168	234	82.11%	28.21%	71.79%	23.16%
15	매표대	5	105	115	220	77.19%	47.73%	52.27%	36.84%
총계		66	1,876	1,234	3,110	82.67%	60.32%	39.68%	49.87%

위 표는 총 15개의 대상 편의시설 중 리프트와 건물 내 경사로를 제외하고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미조사 내용을 제외하고 백분율로 환산한 점수이다.

각 항목별로 설명하면 주출입구 5개 항목, 출입구 높이차이 2개 항목, 출입구(문) 7개 항목, 건물 내 복도 2개 항목, 건물 내 점자블럭 설치 3개 항목, 건물 내 계단 9개 항목, 승강기 7개 항목, 유도시설 및 피난시설이 각각 1개 항목 주차구역 6개 항목, 장애인전용 화장실 13개 항목, 마지막으로 매표대와 관람석이 각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니터링 조사지에는 경사로와 리프트 항목이 있었으나 해운대 지역 상영관들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반면 남포동 지역 상영관들에서는 경사로와 리프트설치가 되어있지 않아 평가내용에서 삭제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체 조사 보고서의 수는 67개로 수영만 야외극장 1개, 대영시네마 3개, 롯데시네마 9개, 부산극장 3개, 센텀 CGV 8개, 해운대 메가박스 11개로 영화관수가 많은 극장일수록 조사보고서 수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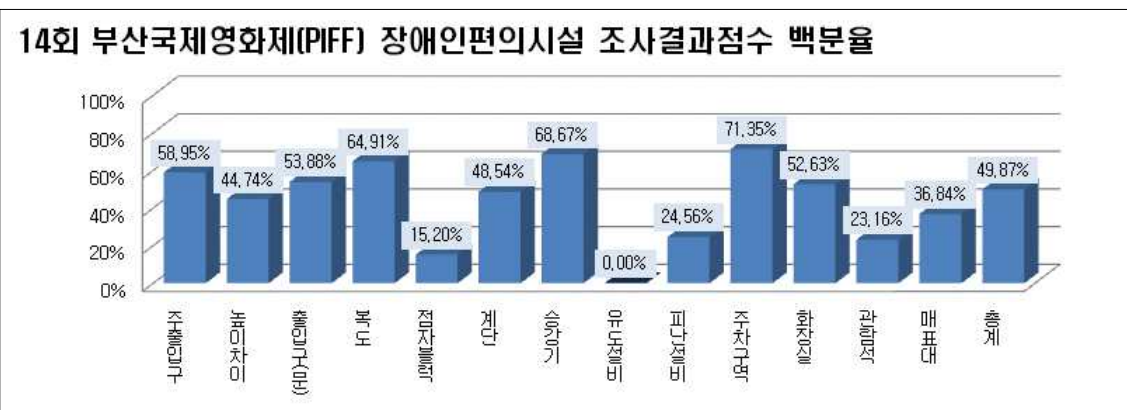
각 항목별 긍정적 응답(예)과 부정적 응답(아니오)의 비율을 살펴보자. 먼저 주출입구에 해당하는 총 문항수의 67.20%의 응답이 긍정적 응답으로, 32.80%의 응답이 부정적 응답으로 나타났다. 주출입구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응답으로 64.56%가 긍정적 응답, 35.44%가 부정적 응답으로 나타났다. 주출입구 문에 해당하는 질문의 항목으로 70.72%가 긍정적 응답으로, 29.28%가 부정적 질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물 내의 복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66.07%가 긍정적 응답, 33.93%가 부정적 응답으로 나타났다. 건물 내 점자블럭 설치관련 사항으로 22.22%에 해당하는 수가 긍정적 77.78%의 수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이는 건물 내의 점자블럭 설치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할 수 있는 항목이겠다. 이는 작년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극장들이 시각장애인의 위한 편의시설은 잘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다음은 건물 내 계단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긍정적 비율은 61.33%, 부정적 응답 비율은 38.67%로 나타났다. 승강기에 해당하는 응답으로 긍정적 비율이 77.84%, 부정적 비율이 22.16%로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남포동에 위치한 상영관

들은 미설치 극장들이라 전체적인 긍정적 응답 비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유도설비에 관련된 시설물로, 이는 응급상황 시 비상램프를 칭하는 항목이라 할 수 있는데, 조사대상 극장들에 이러한 유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거나 극장 내 직원들조차 어느 곳에 설치되어있는지 속지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시설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난시설 또한 31.11%의 긍정적 응답 비율과 68.89%의 부정적 응답비율로,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우려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차시설의 경우 78.46%가 긍정적인 응답을, 21.54%가 부정적인 응답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무래도 법적인 규제가 있는 탓에 각 극장별로 장애인주차구역 설치나 관리는 잘되고 있는 편이라 할 수 있으나, 승강기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전년에 이어 남포동 상영관 시설로 인해 부정적 응답비율이 다수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장애인전용 화장실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긍정적 응답 비율이 61.51%,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38.49%로 나타났다. 영화관 내의 관람석에 관한 항목에서는 28.21%의 응답이 긍정적으로, 71.79%의 응답이 부정적 응답으로 나타나, 본 결과 역시 CGV센터시티점의 등장으로 작년보다는 만족도가 조금은 높아졌지만 상영관 전체적으로는 장애인이 관람하기에 아직은 미흡한 환경인 것을 알 수 있다. 영화관 매표대의 해당하는 항목으로 47.73%가 긍정적 응답을 52.27%가 부정적 응답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 기준인 110cm의 높이를 아슬아슬하게 맞추고 있거나 비장애인이 서있는 높이를 기준으로 제작되어 있다.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는 매표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위와 같은 각 항목들의 전체 비율로 봤을 때 60%의 긍정적 응답과 40%의 부정적 응답으로 나타나 영화제참가 전체적인 상영관들이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괄목할 부분은 유도시설은 어느 상영관도 갖추지 못한 점과 피난시설, 점자블럭설치, 장애인 관람석에 해당하는 시설의 보완과 개선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위의 각 장애인편의 시설평가 자료를 백분율로 환산, 점수화 하여 평가해 보면 주 출입구

의 환경은 약 47점으로 건물 입구의 점자설치나 미끄럼 방지시설, 경사로 기울기 등이 법적 조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는 약 36점으로 건물과 외부 인도와의 높이차가 있는 것으로 법적기준 높이차가 2cm 이상일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지만 미설치 구역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건물 주 출입구의 문은 약 43점으로 거의 대부분이 자동문이 미설치된 곳이었으며, 문손잡이에 점자 안내문 설치 또한 거의가 미설치되었다. 입구의 촉지도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건물 안내는 전혀 되지 않았다. 건물 내 복도에 해당하는 항목의 점수는 약 52점으로 좁고 다니기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건물 내에 바닥재가 대리석이나 미끄러운 재질로 되어있어 장애인 뿐 아니라 어린이나 노인에게도 안전사고가 우려 된다. 건물 내 점자블럭 설치 항목으로 약 12점으로 미설치 영화관이나 건물이 다수로 나타났다. 건물계단의 항목의 점수로 약 39점으로 나타났으며, 남포동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계단이용의 빈도는 높지 않았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항목으로 약 55점 이상의 점수가 나왔으나 남포동 상영관들은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자들이 출입조차 불가능하다.

다음은 유도설비와 피난시설로 각 20점으로 조사되어 작년에 비해 설치는 이루어 졌으나 위급상황에서 장애인들에게 효율적인 활용이 의심되어 이 부분의 개선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약 57점으로 설치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어디 있는지 안내가 잘 되지 못한 곳이 있었으며, 비장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관리가 미비한 곳이 소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전용화장실 조사항목 점수로 약 42점, 관람석과 매표대로 각각 약 19점과 약 30점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관람석은 다수의 상영관들이 진입로에 계단이 있어 진입조차 어려운 곳과 퇴출로로 진입해야 하는 실정이고, 전용석 자체도 미설치된 곳이 다수로 조사되었지만 장애인전용 화장실은 활동보조인이 같이 들어가 휠체어 장애인 이용을 돕기에도 무리가 없을 만큼 넓은 공간으로 만들어진 CGV센텀시티가 참여하여 작년에 비해 일부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장애인을 아직도 고객이나 경제의 주체로 보지 못하다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매표대는 대부분의 상영장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110cm의 높이를 아슬아슬하게 맞추고 있는 실정이라 관람권 구매 시 휠체어 장애인은 원활한 안내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CGV센텀시티의 경우는 장애인 사용기준에 맞춘 낮은 데스크가 있지만 상주직원이 없어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체로 남포동을 제외하고 해운대 지역 상영관들은 건물 진입까지는 가능하나, 영화관내의 시설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이 편리한 환경에서 영화 관람은 힘든 환경이었다. 신축건물이라 하더라도 영화관 진입할 수 있겠으나, 장애인 관람석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배치되어 있지 않아 비정상적인 자리에서 관람해야하는 문제와 스크린과 가까운 자리로 배치되어 영화관람에 불편을 겪어야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맨 앞자리 공터, 진입로 중간 복도가 그나마 관람할 수 있는 자리로 조사되었으며, 진입로와 퇴출로가 모두 계단인 곳은 입장 자체가 불가능 했다.

<표2-2> 편의시설 조사 항목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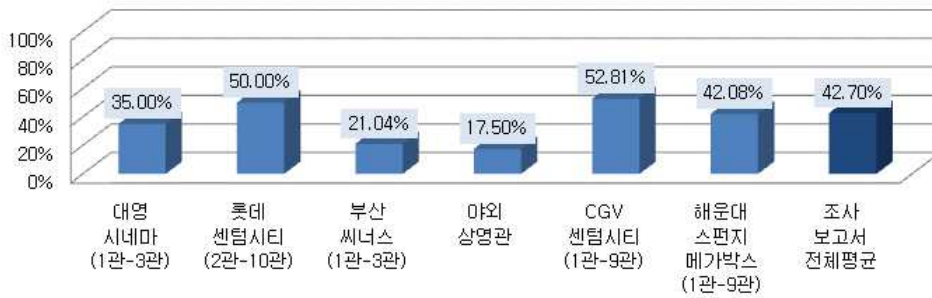
번호	항목	보고서수	예	아니오	문항	응답율	예	아니오	득점비율
					80		%	%	
1	대영시네마 (1관-3관)	6	168	216	384	80.00%	43.75%	56.25%	35.00%
2	롯데센텀시티 (2관-10관)	18	20	293	1013	70.35%	71.08%	28.92%	50.00%
3	부산씨너스 (1관-3관)	6	101	146	247	51.46%	40.89%	59.11%	21.04%
4	야외상영관	1	14	8	22	27.50%	63.64%	36.36%	17.50%
5	CGV센텀시티 (1관-9관)	8	338	154	492	76.88%	68.70%	31.30%	52.81%
6	해운대 메가박스 (1관-9관)	18	606	568	1174	81.53%	51.62%	48.38%	42.08%
조사보고서 전체평균		57	1,947	1,385	3,332	73.07%	58.43%	41.57%	42.70%

각 조사된 항목을 백분율로 상영관별로 평가해보면 ‘수영만 야외극장’이 약 17점, ‘대영시네마’ 35점, ‘롯데시네마’ 50점, ‘부산극장’ 약 21점, ‘CGV센텀시티’ 약 53점, ‘해운대메가박스’ 약 42점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남포동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비교적 오래된 극장들인 ‘대영시네마’, ‘부산극장’이 낮은 점수로 출입조차 어려운 환경으로 되어있으며 나머지 해운대지역 상영관들은 상영관 진입은 가능하나 전체적인 점수가 높지 못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CGV센텀시티의 경우 최고 점수를 평가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편리한 것으로 평가되기는 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적극 고려하지 못한 설계와 시공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점자블럭이나 유도설비 등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영화 관람은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가장 최하 점수를 받은 야외극장을 보면 접근성도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화장실 사용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소한 장애인 이동화장실이라도 준비되어 있어야 했을 부분으로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직접 모니터링단의 평가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인용하면,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부산극장과 대영시네마는 진입자체가 어려워 조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엘리베이터는 상시 운영을 하지 않았으며 에스컬레이터로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영화관 이용이 어려웠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편의시설 상영극장별 현황



14회 부산국제영화제 편의시설 모니터링 조사를 통하여 ‘부산국제영화제(PIFF)’를 진행한 상영관들의 환경들은 일부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작년 상영관인 프리미어스 영화관 대신 CGV센텀시티가 참여함으로써 편의시설 만족도가 작년에 비해 일부 향상되었다. CGV센텀시티는 최근 신설된 극장으로 넓은 공간과 깨끗한 환경을 엿볼 수 있었다. 장애인화장실 또한 다른 극장의 장애인 화장실과는 달리 활동보조인이 같이 들어가 휠체어 장애인 이용을 돕기에도 무리가 없을 만큼 넓은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문밖에 사용을 알릴 수 있는 장치와 사용 중을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능 또한 구비되어 있어 이용이 편리하였다. 장애인 관람석 또한 관람석 앞 라인 좌석을 이동이 가능케 하는 방법을 선보였다. 이러한 이유들로 작년 조사에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던 롯데시네마에 이어 올 해는 새로 선을 보인 CGV센텀시티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내용과 함께 아쉬웠던 점은 좋은 평가를 받았던 해운대CGV에서도 비상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들을 직원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거의 모든 극장들이 비상시 장애인들의 대피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의 영화관들을 살펴보면 부산국제영화제의 중심극장으로 시작되었던 남포동 상영극장들은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여전히 일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한 핵심시설이라 할 수 있는 상영관내 장애인 관람석 배치 자체가 준비되어있지 않은 것 또한 작년과 다름이 없는 큰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다.

본 모니터링결과가 부산국제영화제 참여 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

며 2008년 4월부터 발효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내용에 대한 법률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본다면 편의시설의 개선 부분은 하루빨리 준비되어 가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편의시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면서 우리사회가 얼마나 변화되어가고 있는지와 아직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 함께 느낄 수 있었다.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비단 부산국제영화제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일상에 접할 수 있는 전반적인 문화시설들과 밀접한 부분이며 나아가 문화 지적향유권의 사회시사 표본이라 할 수 있다.

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영화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손원진 사무국장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인권포럼

영화컨텐츠 모니터링 결과

1. 장애인과 영화 사이의 절묘한 혼합

장애인에 대하여 알고 싶으면 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저 막연하게 팔다리 없고, 말 못하고, 보고, 듣지 못한다고 하면 장애인이라 생각을 하였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것이 틀린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그들은 일반 보통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신체적으로 하나, 둘의 기능은 못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동체 생활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였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고만 생각을 하였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소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를 위해서 존재하고, 다수의 의견에 맞추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동일한 인격체이며, 단지 신체·정신적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단지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장애인을 생각하고 말함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측면은 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하게 될 때, 한편으로 무엇보다 먼저 숙지해야 할 점은 그들의 처지와 현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도 중요하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장애인들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한 비장애인들과의 공동체적인 삶을 준비할 수도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지낸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비장애인들의 시각과 관점은 데게 온전치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시작과 관점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2. 하지만 장애인과 영화는 물과 기름관계

청각장애인들에게도 이제 익숙한 자막해설과 수화통역방송, 다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만큼은 자주 TV에서 그것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화 분야에 있어서 장애인 접근권은 지극히 미흡한 수준이다. 방송의 경우 폐쇄자막을 사용하여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지만 영화의 경우 아직 대국민의 인식이 충분치 않아 거의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거의 갖추지 않은 영화관이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비장애인 중심으

로 만들어진 영화콘텐츠는 자막과 화면해설이 없어 시각, 청각장애인의 ‘영화 볼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의거하여 이것은 명백히 장애인 차별이다.

3. 장애인의 눈에 비춰진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2009년 10월 08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는 70개국의 총355편 영화 총 803회가 상영되었다. 관객수도 173,516명이 관람하여 명실공히 아시아 최대규모의 영화제를 넘어선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산이라는 도시를 영화의 바다로 만들어 버린 부산국제영화제는 규모와 내용면에서 예년보다는 훨씬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표>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결산통계자료

방 문 자	
총 관객 수	173,516 명
총 참석 게스트 (프레스 제외)	6,400 명
국내	3,178 명
해외	860 명
시네필	1,388 명
아시안필름마켓	974 명
프레스	2,202 명
내신	1,832 명
외신	370 명
상영횟수	
초청필름	355 편
월드 프리미어	98 편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46 편
총 상영횟수	803 회
아시안필름마켓	
세일즈 오피스	25개국 75개 업체, 45개 오피스
총 참가업체	42개국 534개 업체
총 필름	43 편 (마켓 프리미어 40편)
총 상영횟수	50 회

<표>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영화 장애인 편의제공

내 용	상영편수
한국영화 자막서비스 (청각장애인 배려)	6 회
영화 화면해설 서비스 (시각장애인 배려)	2 회

하지만, 영화를 즐기고 사랑하는 장애인들에게는 과연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로 인식이 될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영화제 주변 이동권과 편의시설 미비,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화상영 관련 장비 미구축 등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부산국제영화제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본다. 휠체어를 타고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계단과 불편하기 그지 없는 장애인 관람석, 청각장애인들은 전혀 내용을 알 수 없는 개막식이나 오픈 콘서트·부대행사와 내용, 그리고 시각, 청각장애인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상영하는 영화관들은 냉정히 말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장애인들이 문화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처참하게 무너뜨린다.

비록 작년 13회 국제영화제와는 달리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장치와 수신기를 설치하여 영화 상영을 했지만 총 355편의 영화중 2.4%에 해당하는 8편에 그쳤다. 이것은 장애인을 배려하기 보다는 단지 “보여주고, 생색내기 용(用)”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영화관람을 위하여 여태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시도를 하는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측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진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비록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다 보면 장애인들도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영화제가 아니라, 즐겁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세계속의 부산국제영화제로 발돋움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부산국제영화제(PIFF)가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있다. 먼저 조직위원회 쪽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주최 측의 그 누구도 장애인들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정보가 거의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문화생활을 즐겁게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닌, 다가가기 힘들고 장애물이 많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으로 만들어 버린다. 예를 들어 이번 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개막작은 한국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에는 시각·청각 장애인들은 아예 관람할 수 없는 영화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마치 “18세미만 관람불가”처럼 “굿모닝 프레지던트-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비 구비 미설치 관계로 관람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참여환경도 제대로 갖춰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들을 위한 조사가 선행이 될 것이다.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모니터링은 장애인들도 더욱 문화를 향유하고 싶다는 것을 강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영화콘텐츠의 문제 역시 작년(13회 부산국제영화제)

과 비교하여 볼 때, 거의 달라진 건 없다. 이것은 조직위와 부산광역시 측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가 된다.

① 청각 장애인을 위한 선별적 자막 상영 시스템 턱없이 부족

이번 영화제 기간 중 장애인을 위한 자막상영 한국영화가 총6편이 상영이 되었다. 이는 작년(8편)과 동일하고 자막삽입 기술 또한 매우 영성하게 편집이 되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짜증을 유발하게 했다. PIFF 조직위 측은 제일 큰 문제는 예산이고, 영화 판권을 갖고 있는 이들의 동의를 구해야만 한글자막을 입힐 수 있다. 또 ‘영화가 가린다’는 이유로 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한국영화 한글자막 서비스를 일부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애인의 영화 접근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자막과 화면 해설을 합해 영화 한 편 당 500만 원 이내며 이는 부산시와 PIFF 조직위 예산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장애인들한테 티켓이나 몇 장 나누어주고 생색을 내기 위해 몇 편의 영화에 자막을 덮어 상영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영화 접근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또한 상영관내에 자막 시스템을 설치한다든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택적 자막 서비스를 한 것은 아니어서 단순히 시혜적인 행사에 머물렀다는 평가이다.

한글자막 제공 한국영화 6편

1. 김씨표류기
2. 박쥐(확장판)
3. 해운대
4. 잘 알지도 못하면서
5. 마더
6. 거북이 달린다

②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영화 2편 상영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 싶었지만, 읽을 수 있는 책은 많지 않았다. 모두 다 그런 줄만 알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것은 차별이었다.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관에 갈 때마다 남들이 웃는 장면에서 함께 웃을 수 없었다. 나는 큰 걸 바라지 않는다. 남들이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며 웃을 때, 나도 함께 웃고 싶을 뿐이다."

위 말은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전인옥 상임이사가 한말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접할 수 있는 문화활동 범위가 얼마나 좁은지를 단편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이번 영화제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서비스로 상영된 영화는 2건이었다. 13회 때 단 한건도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조직위원회 측든 것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비춰진다. 하지만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주관으로 하여 진행되었고 이것은 오직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영화

화면해설 제공 영화 2편

1. 거북이 달린다
2. 특별시 사람들

상영 이벤트로 느껴지지 진정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영화제것은 보완회어렵다고 할 수 있다. 조직위 측은 화면해설 콘텐츠를 만들거나 0진행되었고느껴지지 구축하는할 수 예산상 관으덴유로 더더욱회어렵다는 답변만 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그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야 할 것이다.

③ 개·폐막식의 수화서비스의 부재

전라도 담양에는 매년 “대나무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 축제에 개·폐막식의 무대에는 수화통역을 하고 있는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담양시 대나무축제 조직위원회와 지역 농아인협회가 연계를 하여 많은 지역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을 지켜주고 있다.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의 백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개·폐막식에는 국제 언어통역은 이뤄지나 수화통역 서비스는 찾아볼 수 없었다.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의거하여 개막식이나 폐막식, 오픈 토크 등의 부대행사에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무하였다.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축제를 벌인 큰 행사에서 국내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창피한 일이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미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 하고 있다고 외부적으로는 인식이 되고 있지만 장애인 문화향유권에 대한 배려는 지역 소도시의 소규모 축제보다 더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향유권이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 외에 창조적이고 여유로운 삶의 질을 누리하고자 하는 인간만의 독특한 욕구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참여와 간접참여가 모두 보장된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인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고,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가 문화권의 주요 내용으로 이해되면서 포괄적 의미의 사회권으로써 문화향유권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최근 이러한 문화권의 소외계층으로 불리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문화권향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등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에 대한 국내·외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주 오래전에 모가수가 무대위에서 땀에로 복장을 하고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떠오른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고 춤을 추는 광대의 모습인 땀에로는 우리를 슬픔에 젖게 한다. 비록 삶의 여정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편견과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장애인들은 문화와 여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세심한 배려 하나 하나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법이다. 장애인들의 요청은 특권을 달라는 생떼가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는 차원의 외침인 것이다.



4. 장애인도 동참할 수 있는 역동적인 부산국제영화제가 되기 위한 제언사항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복지 혜택을 가로 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물리적 환경이며 시혜적인 차원에서 베풀어지는 장애인을 위한 형식적인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문화향유권 조성이 되는 가장 큰 핵심사항은 바로 접근가능한 문화환경이라 할 수 있다.

① 장애인 영화참여를 위한 전담 부서 구성

그동안 영화향유층에서 소외됐던 장애인을 영화를 즐기는 한 가족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영화제 기획 초기부터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Piff 조직위원회 및 운영부서에 장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전문부서를 구성 (장애인단체 활동가, 영화관련 장애인당사자 등으로 구성) 하여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축제를 즐기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장애 유형에 맞는 영화관람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해설 장비 도입과 한국영화의 경우 최소 50% 이상 자막 상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③ 영화 전용 상영관 “두레라움” 조기완공 촉구

두레라움이라는 함께 어울린다는 의미처럼 장애인도 함께 어울려서 문화를 향유하고 그런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 장비가 모두 갖춘 PIFF전용관"두레리움" 조기 완공이 시급하다.

④ 영화 관람 외 기타 PIFF에 관련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PIFF의 부대행사나 스타와의 만남, 피프빌리지 행사 등에 장애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공식행사에 수화통역을 배치하고 행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등 장애인 참여에 대한 여러 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 내년에는 장애인이 함께 동참 할 수 있는 PIFF가 되길 기원해본다
(14회 개막식 전경)

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영화참여 만족도 모니터링 결과

전 응 길 연구원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인권포럼

영화참여 만족도 모니터링 결과

PIFF 영화참여 만족도 조사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모니터단원들이 직접 부산국제영화제의 상영작들을 관람하기 위하여 극장을 방문하고,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상영관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영화관과 영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조사 내용은 편의시설 조사 이외의 장애인들이 실제로 영화제를 참여하여 영화를 관람하기 위하여 여러 경우의 수를 각 항목별 질문지로 작성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편의시설 조사만으로 나타나지 않는 영화관측의 서비스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크게 진행요원 및 자원봉사자의 대응 부분과 장애인 관람석의 편의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만족도 조사는 아래와 같이 12개 문항으로 하여 110명의 장애인들 평가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총 5점 만점의 척도로 ‘매우 부정적’ 항목을 1점으로 하고 ‘매우 긍정적’ 항목을 5점으로 배점하여 각 극장별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3-1> 만족도조사 결과 (극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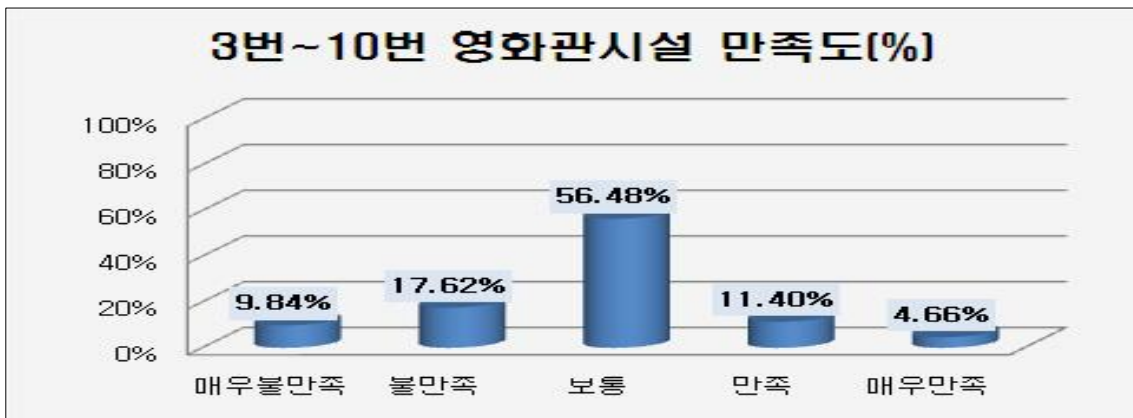
번호	조사 항목	구분 문항	항목					응답수 110	응답률
			①매우 부정적	②부정적	③보통	④긍정적	⑤매우 긍정적		
1	홈페이지 편리성	PIFF 홈페이지 이용이 편리하였습니까?	1	12	23	16	2	54	49.1%
2	교통수단의 편리성	극장 도착까지 이용하였던 교통수단은 편리하였습니까?	3	9	53	32	12	109	99.1%
3	도우미 찾기	현장에 도착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나 극장직원을 찾는 것은 어떠했습니까?	3	8	49	37	12	109	99.1%
4	도우미 배치	행사현장에 적절하게 자원봉사자나 극장직원이 잘 배치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	12	44	43	8	110	100%
5	도우미의 적극성	극장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응대하였습니까?	5	10	47	38	10	110	100%
6		안내 및 이동 등의 도움을 주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	11	58	29	8	108	98.2%
7	도우미의 친절도	도움을 주는 사람의 친절도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	7	44	47	8	108	98.2%

<표3-1> 만족도조사 결과 (극장별)

번호	조사 항목	구분 문항	항목					응답수 110	응답률
			①매우 부정적	②부정적	③보통	④긍정적	⑤매우 긍정적		
8	장애인 관람석	장애인 좌석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편리했습니까?(장애인좌석에서 관람했을 경우에만 답변)	3	9	6	0	4	22	20%
9	장애인 영화관람 편의성	이번에 방문한 상영관은 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하기에 시설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	18	60	14	6	110	100%
10	편의시설의 편의성	화장실 이용은 편리하십니까?	10	7	54	28	10	109	99.1%
11	영화관 재방문 의사	이번에 방문한 상영관을 다시 방문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7	13	48	33	8	109	99.1%
12	영화제 평가	14회 국제영화제는 장애인이 참여하기 어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10	72	14	5	108	98.2%

부산시내 6개 PIFF 상영관 중 영화관 시설 만족도는 75% 이상이 “만족한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는 13회 영화관 만족도 86%에 비하여 10% 이상이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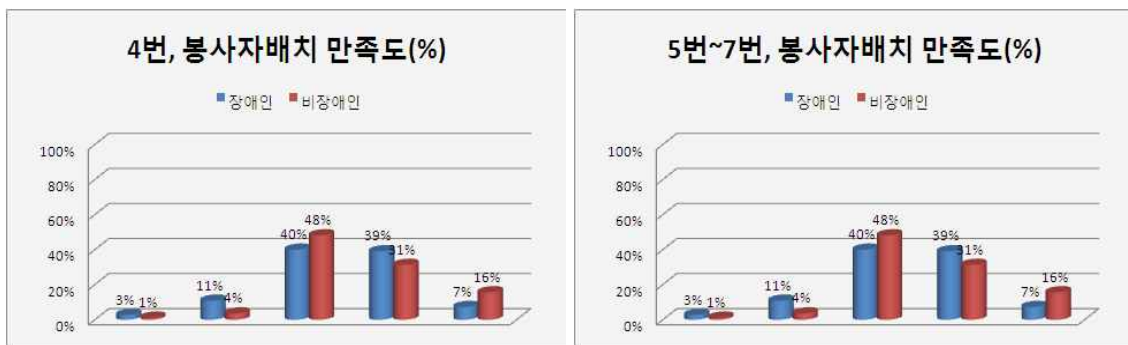
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과 비교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보강공사가 전무했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해운대 센텀시티 CGV가 올해 개장을 하여 영화관 만족도 부문이 소폭 상승할거라고 전망하였지만 나머지 5개 상영극장은 모니터링을 한 단원들이 조사를 할 때 작년과는 분명 달라졌을 거라는 기대에 모니터링을 했을 텐데 결국 결과가 작년과 다를게 전혀 없다는 실망감에 전체적인 영화관 시설 만족도가 10% 이상 하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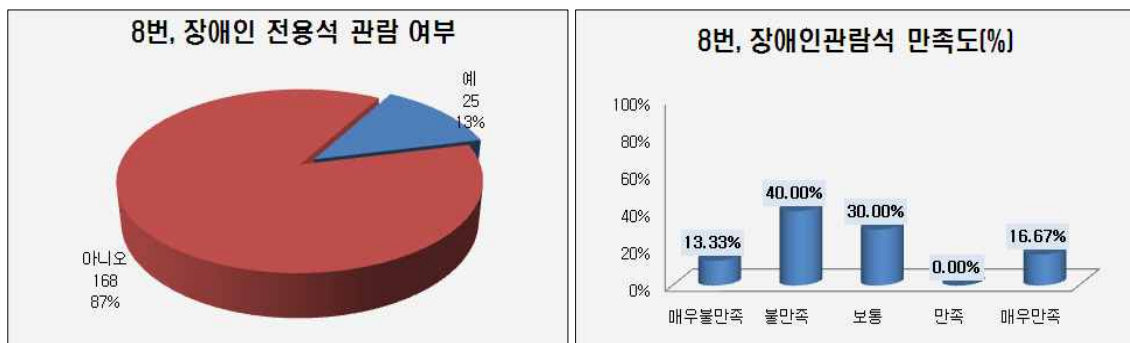
자원봉사자 배치에 대한 적절성과 봉사대응정도 항목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80%이상

응답이 만족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하지만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불만족”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자원봉사자들의 활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이 자원봉사자의 배치와 만족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여진다.

올해부터 부산국제영화제 자원봉사자들의 대상으로 “장애인인권교육과 장애인 응대요령” 교육을 부산장애인인권포럼 자체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응대 만족도는 작년에 비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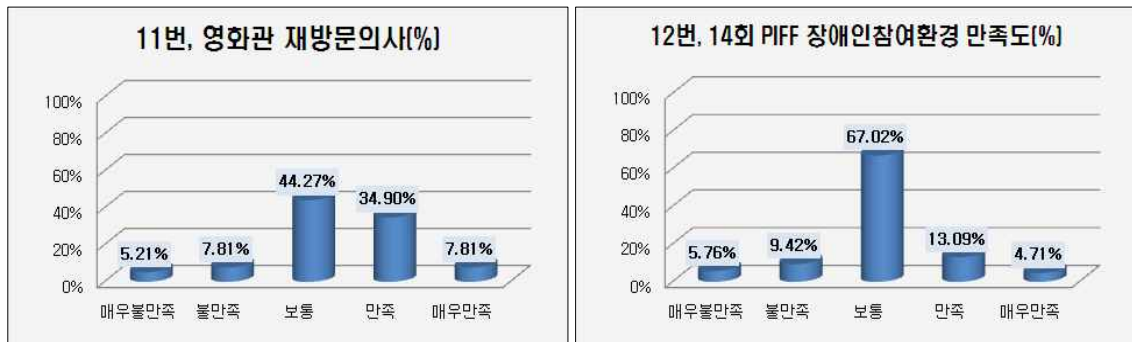


장애인 전용 관람석에서 관람 여부를 알아보는 항목으로 193개 조사지 중 25개 조사지 즉 약 13%만의 조사자들이 장애인전용 관람석에서 관람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관람한 사람 중 절반(53.3%)이 넘는 사람들이 장애인좌석에 대한 만족도가 불편하다고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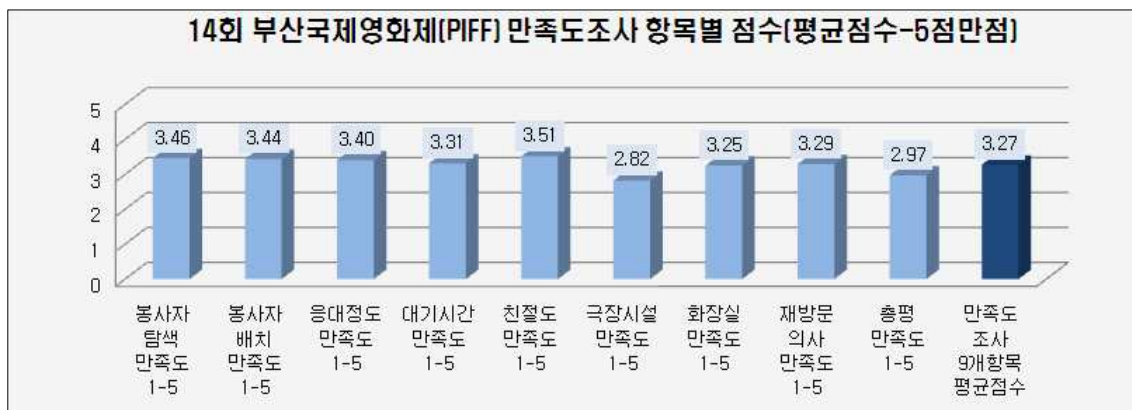


6개 상영관 중 4개는 장애인관람석이 마련되어 있지만 관람석 위치가 정중앙, 상단 쪽이 아닌 하단에 마련되어 있어 휠체어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고개를 위로 들고 90분이 넘는 영화를 관람해서 목에 통증을 호소했다. 이처럼 장애인 관람석을 전시행정 상 그저 명목적으로 설치하지 말고 관람석 배치를 장애유형에 맞게 설계하여 재배치 여부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논의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다.

다음으로 PIFF 영화관들을 재방문하여 관람 의사를 알아보는 항목에서는 재방문 의사에 ‘매우불만족(전혀없다)’과 ‘불만족(없다)’이라는 부정적 답변이 약 13%에 달하여 영화관의 관람 편리성의 부정적인 답변 비율인 27%의 절반에 달했다는 점이다. 또한, 영화관의 편리성에 대한 비율 중 긍정적인 답변은 16%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87%의 장애인들은 이번에 방문한 영화관을 재방문할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전체적이 환경이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으며,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문화생활 참여의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장애인들에게는 영화관람 등을 통한 문화 향유의 욕구는 있으나, 현실적인 요건에 의해 억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장애인들의 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한 영화관들의 노력과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 조사 항목의 만족도를 백분율로 환산한 평가 자료로 자원봉사자, 운영요원의 장애인에 대한 응대에 관한 항목의 평점은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로 평가 되었으나, 관람석을 포함한 극장시설 만족도를 묻는 항목의 평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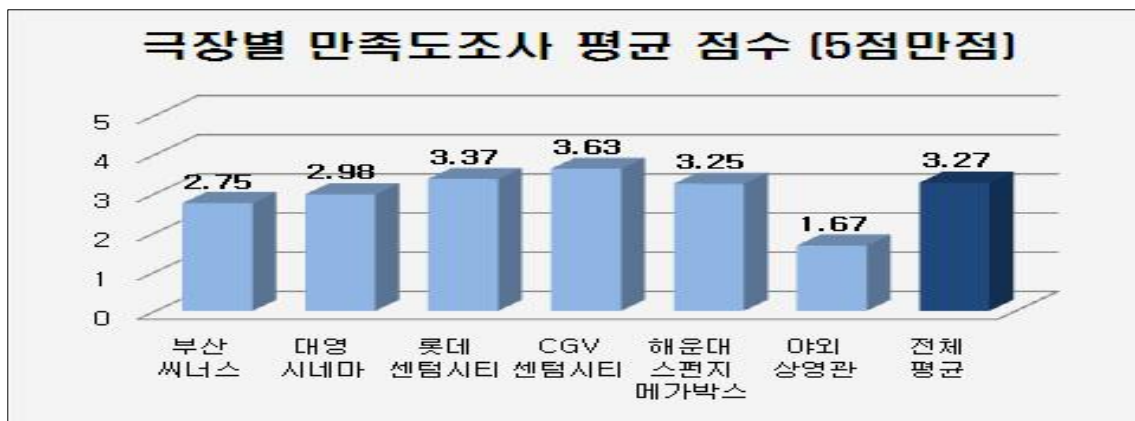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대상으로 “장애인인권교육과 장애인 응대요령” 교육을 부산장애인인권포럼 자체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나 진행요원들의 장애인 응대를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장애인관람석과 같은 영화관의 시설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의 시설에 해당하

는 관람석과 편의성의 항목은 점점 외부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들에 비해 시설이 따라 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며, 반면 도우미와 관련된 조사 항목의 그래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을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다.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욕구는 있는데 이를 위한 환경이 충분히 따라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회의 인식 변화에 비해 는데 이를 의시설이 부족한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즉, 부산국제영화제의 장애인 참여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영화관들의 노력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종 만족도 점수조사를 극장별로 살펴보면 5점 만점에 평균 3.63점을 얻은 센텀시티CGV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CGV센텀시티점이 올해초(3월)에 개관을 한 신축건물이고, 전체적인 편의시설과 화려한 인테리어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된다. 이번 평가 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극장이 오래될수록 극장 만족도는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은 노후된 극장일수록 개,보수 혹은 총체적인 리모델링이 현재 기준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남포동 지역 일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시초인 지역이다. 이런 유서 깊은 지역에서 승강기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 많은 장애인들이 아예 극장 조차에도 출입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



이제까지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여하고 있는 영화관을 직접 이용해 본 장애인들의 영화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살펴봤다.

야외상영관을 포함하여 6개 영화관, 37개 상영관에 대해서 19명의 편의시설 모니터단이

조사를 수행하여 실시된 영화관 만족도 조사의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들이 PIFF 홈페이지를 이용 시 장애인등의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티켓 예매를 위하여 홈페이지 접근시 티켓 예매를 위한 서비스가 전무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요즘은 거의 모든 국가관공서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성이 평균 80% 이상 개선이 되었지만,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까지 이용하는 PIFF 홈페이지 웹접근성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장애인을 배려한 자원봉사자의 배치와 친절도 부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각 상영관마다 자원봉사자들의 배치와 친절도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이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시 매우 당황하고 수월하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한다. 외국인이 도움 요청 시 각 극장별로 배치된 통역사가 쉽게 도움을 주는것에 비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는 전무하여 청각장애인들은 극장 내에서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이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극장 내 장애인관람석도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보통의 장애인 전용석들이 상영장 맨 앞 또는 상영관 내 복도에 위치하고 있어 공간 협소와 부적절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인 관람석에서의 영화 관람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답변이 많았다. 위 항목의 장애인 전용석이 없는 상영관을 포함한다면 장애인 전용석의 문제는 크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편의시설 “개선 대상 1호”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영화관의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문제라고 보기에에는 어려움이 있다. ‘부산국제영화제(PIFF)’는 각각의 상영관들을 행사기간 동안에 임대하여 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써, 영화관의 편의시설에 관련한 문제는 1차적으로 각 개별 영화관들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을 관객으로, 또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는 영화관의 인식 때문이라고 판단되어지며, 장애인이 영화를 즐기기 위해 필요한 시설들을 충분히 갖춰놓지 못한 개별 영화관들은 장애인들이 영화를 관람할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PIFF 전용관 조기완공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보여진다. 두레라움이라는 함께 어울린다는 의미처럼 장애인도 함께 어울려서 문화를 향유하고 그런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 관련 연구진과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최적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 장비가 모두 갖춘 PIFF전용관 "두레라움" 조기 완공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번 영화제에서는 PIFF 조직위 측의 개선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다.

가령,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 상영, 점자 시간표 등, 물리적 접근성 외에도 영화라는 문화상품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와 향유를 돕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장애인 영화관만족에 관해서는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각 개별 영화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다 많은 장애인들과 이동약자들이 영화관을 찾고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각 개별 영화관들의 노력과 배려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 결과

윤 승 현 연구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웹와치사업단

부산국제영화제(PIFF) 공식 웹사이트 장애인 접근 환경

I. 장애인과 웹 접근성

시각, 청각 등 신체 일부의 움직임이 불편한 사용자들은 웹을 사용함에 있어 해당 사이트를 볼 수 없고, 웹에서 제공되는 소리를 듣지 못하며, 마우스 사용이 용이하지 못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자들도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웹 접근성이 필요한 이유다.

즉, 장애인을 고려한 웹 사이트라 함은 장애인이 웹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말하며, 이는 장애인 뿐 아니라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접근성을 보장하며, 비취약 계층 사용자에게도 명료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II. 웹 접근성의 필요성

2009년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는 210만 명을 넘어섰으며, 고령자 480만 명, 저소득층 200만 명 등 정보취약계층에 속한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5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IT 인프라를 토대로 인터넷에 관련한 사용량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양한 업무를(전자정부,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교육, 뉴스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처리 할 수 있는 등 웹을 이용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교의 웹 사이트를 통해서만 수강신청을 받는 학교가 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은행들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 절감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이처럼 현대 사회생활에서 웹을 이용하지 못해 생기는 제약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51.8%로 전체 국민 77.1%에 비해 25.3%의 격차 발생 (2008년 12월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이처럼, 정보격차를 초래하는 원인으로는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문화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나 특히 장애인·노인들에게는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Accessibility) 부재가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웹 사이트에서 누구에게나 동등한 정보취득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보통신 기술에서 보편적 설계를 구현하면 정보격차를 줄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III. 국내외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현황

전 세계 25개국이 웹 접근성 준수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2007년 5월 기준) 그 중 17개국에서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W3C가 책정한 WCAG1.0과 접근성 관련 최초의 법안인 미국 재활법(Section 508)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현지화 시킨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12월 W3C가 새롭게 권고한 WCAG2.0에 대응해 미국의 재활법(Section 508)도 WCAG2.0을 참고로 개정될 전망이다.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인터넷 웹 표준은 World Wide Web Consortium (W3C, <http://www.w3c.org>)에서 만들었으며, W3C는 1994년 10월 미국의 MIT 컴퓨터 과학 연구소(MIT LCS), 정보 수학 유럽 연구 컨소시움(ERCIM), 그리고 일본의 게이오 대학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국제적인 웹 기술 표준 기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웹 환경 및 관련 보조기구를 고려하여 KWACG 1.0(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을 정보통신 표준으로 재정하였다. (2005년 12월)

□ 해외 주요국의 웹 접근성 제고 추진동향

● 미국

- ① 미국은 1990년대부터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지침들을 발표, 개정하는 노력을 계속 해옴
- ② 특히 최근(2009.7.24)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장애인법 제정 19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서명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나타냄

● 영국

- ① 영국은 사회보장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 평등인권위원회(The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이 법의 실행을 위한 지침을 제정함
- ②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웹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지침 마련, 인식제고 등의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음

● 일본

- ① 일본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법"에서 웹 접근성을 다루고 있지만, 직접적인 법률보다는 지침 형태의 권고를 제정하고 있음

- ② 특히 국가정보화정책 안에서 정보접근성을 포함하여 다루어 정보격차해소의 중요 부분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호주

- ① 호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웹 접근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 소송 판결을 계기로 웹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짐
- ② 호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일찍 웹 접근성이 이슈가 된 만큼 정보접근성에 관한 법제도 정비 및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EU

- ① 2001년 유럽위원회(EC)는 웹 접근성 관련 전달문(Communication)을 통해 회원국들의 웹 접근성 국제표준의 승인을 촉구하고, 2006년 유럽연합 장관회의 선언문을 통해 모든 공공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를 2010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함
- ② 유럽연합 차원의 웹 접근성 직접 관련 법률은 없지만, 몇몇 국가들에서는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고, 대부분 계도를 통해 웹 접근성 준수를 유도하고 있음

[출처] 주요국의 웹 접근성 추진동향 및 시사점

IV. PIFF공식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제언

1. 평가 기준

KWCAG 1.0(한국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본 내용에서는 준수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언급하였음.

(이 지침은 4개 지침, 18개 항목, 23개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음)

2. 평가 요약

(1) 인식의 용이성

-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인식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등 이미지를 볼 수 없는 환경에서는 해당 콘텐츠를 인식하기 어려움.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을 사용하여 화면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는 반드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함.

- 동영상, 오디오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동기화된 자막을 제공
홍보, 보도 내용의 동영상에는 별도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 청각장애인 등 소리를 듣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내용을 인지할 수 없음

청각장애인 등 소리를 듣지 못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기화된 자막을 제공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 콘텐츠의 내용과 동일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원고를 제공해야 함.

(2) 운용의 용이성

- 키보드만으로도 모든 콘텐츠의 운용
웹 사이트를 운용할 때 TAB키를 이용해 링크 단위로 이동하며, 방향키 등으로 본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나, 평가된 모든 웹 사이트가 TAB키로 이동할 수 없었으며, 커서의 위치를 알려주는 포커스도 보이지 않게 숨겨놓음.

웹 사이트의 링크와 서식 등 모든 콘텐츠는 TAB키와 SHIFT+TAB 키, 방향키 등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SUBMIT 버튼 등 동작 명령을 내리는 경우 키보드의 엔터 등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새 창으로 열리는 콘텐츠의 사전 정보 제공
웹 사이트에 접근하는 동시에 새 창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의 경우, TAB키로 이동하는 사용자들에게 큰 불편으로 작용하며, 웹 페이지 내에서 제공되는 새 창으로 열리는 콘텐츠에도 사전에 알려주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웹 사이트에 접근과 동시에 열리는 새 창은 사용을 피해야 하며, 새 창으로 열리는 콘텐츠의 경우 시각적으로 표현 하거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 사전에 새 창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3) 이해의 용이성

- 스킵 내비게이션 링크의 제공
복잡한 구조 또는 링크의 개수가 많은 웹 페이지에서 반복되는 콘텐츠를 뛰어넘어 주요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스킵 내비게이션이 제공되지 않아 페이지 구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키보드만으로 웹 사이트를 운용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화면 상단에 스킵 내비게이션을 제공함으로써 페이지 구조를 이해하고 반복적인 키보드 작업 없이 주요 위치에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함.

- 온라인 서식에 label(이름표) 제공
회원가입, 로그인 등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label이 제공되지 않아 해당 서식의 목적을 파악할 수 없어 운용에 혼란을 줄 수 있음.(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label 이 제공되지 않으면 해당 서식을 ‘입력창’ 등으로만 읽음)

온라인 서식 제공시 <label> 엘리먼트를 이용하여 서식의 용도 및 목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함. (id와 for를 적절히 매치시켜야 함)

(4) 기술의 진보성

- 플래시 메뉴의 대체 콘텐츠 제공
메인 메뉴, 하위 메뉴 등 주요 내비게이션을 플래시로 제공하고 있어 키보드 접근은 물론 시각장애인 등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링크를 인식할 수 없음.

자바스크립트, 자바애플릿, ActiveX, 플래시 등 외부 콘텐츠는 이를 지원하지 않는 환경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접근성을 지원하고 있어야 함.

V. PIFF 공식 웹사이트별 웹 접근성 준수상황

1. PIFF 공식 웹 사이트 (<http://www.piff.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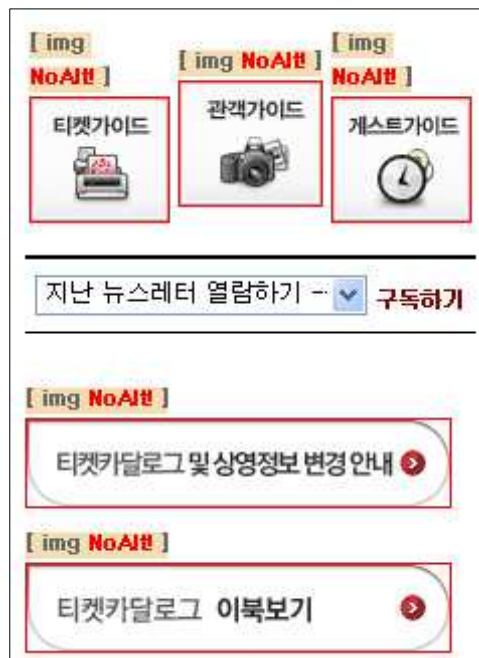
1. 총평

PIFF 공식 웹사이트는 대체 텍스트 제공 미흡, 키보드만을 사용한 접근 불가능, 스킵내비게이션 미제공, 온라인 서식의 레이블 미제공 등 웹 접근성의 주요 항목에 대한 준수사항이 미비함.

2.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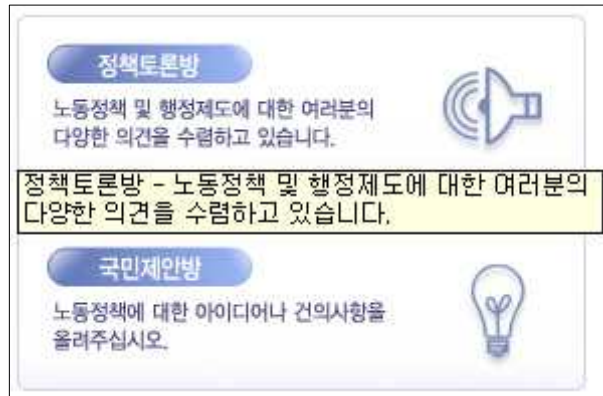
(1)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접근성

-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정보를 활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하기에 용이하지 않음.



<그림 1-1 대체 텍스트가 정의되지 않음>

-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모든 콘텐츠에는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사용해야 하며, 불릿 이미지의 경우에도 대체 텍스트를 alt=""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함.



<그림 1-2 대체 텍스트가 제공된 예시>

(2) 키보드만을 사용하여 모든 콘텐츠 접근의 용이성

- 상지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마우스 사용을 할 수 없는 사용자들이 키보드만을 사용하여 모든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으며, 포커스 윤곽을 보이지 않게 숨겨놓음.



<그림 1-3 포커스 윤곽이 나타나지 않음>

- 시각장애인 및 상지장애인 등 키보드만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고려하여 TAB키 등으로 모든 링크의 이동이 가능해야 하며, 포커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점선 및 위치 하이라이트 요소 제공이 필요함.



<그림 1-4 현재 포커스 위치 제공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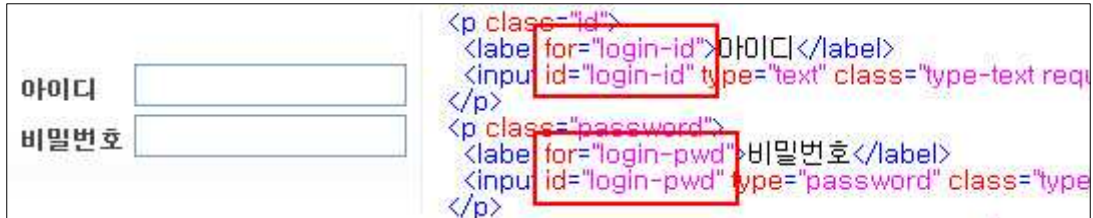
(3) 온라인 서식 이해의 용이성

- 온라인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입력박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어떠한 내용을 입력해야 할지 이해하기 어려움.



<그림 1-5 온라인 서식에 레이블이 없음>

- 온라인 서식을 제공할 경우 무엇을 입력해야 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입력박스 직전에 이름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id와 for 속성을 사용하여 서로 연결하여야 함.



<그림 1-6 온라인 서식을 적절히 제공한 예시>

(4) 신기술(스크립트, 플래시 등)에 대한 사용의 용이성

- 플래시 기술을 사용한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이를 표현할 수 없는 웹 브라우저 등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자를 고려하여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함.



<그림 1-7 플래시에 대한 대체 수단이 없음>

- 액티브(Active)X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가 어플리케이션은 자체적인 접근성 향상 방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술을 지원하지 않는 웹 브라우저 등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자를 고려하여 대체 접근 수단을 제공해야 함.



<그림 1-8 플래시에 대한 대체 수단 예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웹 접근성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2. PIFF 온라인 예매 (<http://www.piff.kr>)

1. 총평

PIFF 온라인 예매 웹 사이트는 키보드만을 사용한 접근이 불가능하며,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입력 서식에 대한 레이블 등이 제공되지 않아 웹 접근성 준수율이 매우 저조함.

2. 평가 결과

(1)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접근성

-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장애인은 이미지의 정보를 인식 할 수 없음.



<그림 2-1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음>

-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모든 콘텐츠에는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사용해야 하며, 불릿 기호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이미지의 경우에도 대체 텍스트를 alt="" 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링크가 아닌 그림 이미지에 대해서도 어떠한 내용이 담긴 이미지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함.



<그림 2-2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는 그림 콘텐츠 예시>

(2) 키보드만을 사용한 콘텐츠 접근성

- 상지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마우스 사용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거의 대부분의 콘텐츠에 접근이 어려우며, 현재 포커스 위치도 나타나지 않게 제공하고 있음.



<그림 2-3 키보드 접근이 되지 않으며 포커스 윤곽도 나타나지 않음>

- 시각장애인 및 상지장애인 등 키보드만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고려하여 TAB키 등으로 모든 링크의 이동이 가능해야 하며, 포커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점선 및 위치 하이라이트 요소 제공이 필요함.



<그림 2-4 현재 포커스 위치 제공 및 하이라이트 효과 예시>

(3) 프레임에 title 속성 제공 여부

- 웹 사이트에 프레임을 사용한 경우에 title 속성을 이용하여 설명을 제공하지 않으면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용도와 목적을 알 수 있도록 해당 프레임에 대한 title 정보를 제공해야 함.



<그림 2-5 title 속성이 제공되지 않은 프레임 사용>

- 웹 사이트 내에 프레임을 사용할 경우에는 title 속성을 이용하여 해당 프레임의 용도 및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림 2-6 프레임에 제공된 title 정보 예시>

(4) 웹 문서를 이해하기 위한 제목 제공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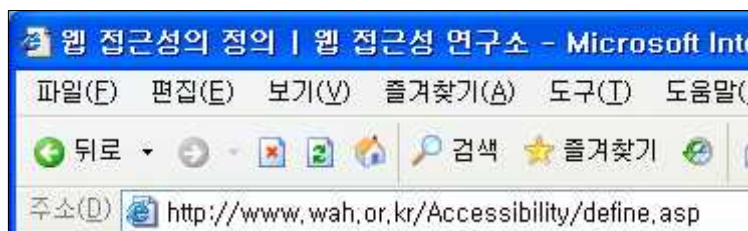
- 웹 문서의 제목을 제공하고 있으나 모든 페이지에 동일한 제목을 제공하고 있어 시각 장애인 등 화면낭독 프로그램 사용자는 실제 웹 페이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그림 2-7 웹 문서 제목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음>

- 웹 문서의 제목은 각 페이지별로 제공해야하며, 제목만으로도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웹 페이지인지 알 수 있도록 <title> 엘리먼트를 이용하여 제공해야 함.

<그림 2-8 웹 문서 제목이 적절히 제공된 예시>



3. PIFF 자원봉사자 커뮤니티 (<http://volunteer.piff.org>)

1. 총평

PIFF 자원봉사자 커뮤니티 사이트는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여부, 키보드만으로 모든 콘텐츠 접근 여부, 웹 문서 제목의 적절성 등 웹 접근성 지침의 주요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평가 결과

(1)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접근성

-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정보를 활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하기에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온라인 서식의 이미지 제어 버튼에도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웹 사이트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그림 3-1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음>

-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모든 콘텐츠에는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하며, 이미지 제어 버튼 등 중요 제어 요소에도 반드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함.



<그림 3-2 이미지 제어 요소에 대체 텍스트가 적절히 제공된 예>

(2) 키보드만을 사용하여 모든 콘텐츠 접근의 용이성

- 상지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마우스 사용을 할 수 없는 사용자들이 키보드만을 사용해서 모든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으며, 콘텐츠 접근 순서가 논리적이지 못함.

<그림 3-3 키보드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며, 키보드 이동 순서가 논리적이지 못함>

- 키보드만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및 상지장애인을 고려하여 모든 콘텐츠에는 키보드가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하며, 일반적인 시각의 흐름에 맞게 논리적 순서로 이동되도록 구성해야 함.





<그림 3-4 콘텐츠의 논리적 제공 예시>

(3) 신기술(스크립트, 플래시 등)에 대한 사용의 용이성

- 플래시 기술을 사용한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이를 표현할 수 없는 웹 브라우저 등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자를 고려하여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함.



<그림 3-5 플래시에 대한 대체 수단이 없음>

- 플래시 기술을 사용한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키보드로의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인식을 할 수 없으면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자들은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함.

<object>의 대체 콘텐츠 제공 방법

<object>태그는 하위에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를 상위 <object>의 대체 콘텐츠로 인식

```
<object data="hello.swf"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object data="hello.png" type="images/png">  
    <object data="hello.gif" type="images/gif">  
      <p>Hello!</p>  
    </object>  
  </object>  
</object>
```

<그림 3-6 플래시에 대한 대체 수단 예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웹 접근성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4. 시네마테크 부산 (<http://cinema.piff.org>)

1. 총평

시네마테크 부산 웹 사이트는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미제공, 키보드로만 운용 가능 여부, 테이블을 이용한 레이아웃 구성, 서식에 레이블 제공 여부 등 전체적으로 웹 접근성 지침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함.

2. 평가 결과

(1)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접근성

-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정보를 활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하기에 용이하지 않음.



<그림 4-1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대부분 제공되지 않음>

-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모든 콘텐츠에는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하며, 불릿 기호 등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이미지에는 대체 텍스트를 alt=""으로 제공해야함.



<그림 4-2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적절히 제공된 예시>

(2) 키보드만을 사용하여 모든 콘텐츠 접근의 용이성

- 상지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마우스 사용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해당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키보드만으로 접근 할 수 없음.



<그림 4-3 키보드만으로 접근 할 수 없는 콘텐츠>

- 키보드만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및 상지장애인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키보드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점선 등 포커스의 위치가 보이도록 제공해야 함.



<그림 4-4 현재 위치한 포커스의 점선 윤곽 예시>

(3) 테이블을 이용한 레이아웃 구성

- 웹 문서의 레이아웃을 테이블 엘리먼트를 이용하여 구성하게 되면, 콘텐츠의 구조화가 힘들어 스킵 내비게이션 등의 제공이 효율 적이지 못하게 됨.



<그림 4-5 테이블을 이용한 레이아웃 구성>

- 테이블 엘리먼트는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엘리먼트이므로 레이아웃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웹 문서의 구조화를 위해서는 레이아웃용 엘리먼트를 사용해야 함.



<그림 4-6 웹 문서를 구조화 시킨 예시>

(4) 온라인 서식 이해의 용이성

- 온라인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입력박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 등 화면낭독 프로그램 사용자는 어떠한 내용을 입력해야 할지 이해하기 어려움.



<그림 4-7 레이블이 제공되지 않은 입력 서식>

- 온라인 서식을 제공할 경우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입력박스 직전에 이름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id와 for 속성을 사용하여 서로 연결하여야 함.



<그림 4-8 입력 서식의 적절한 레이블 제공 예시>

5. 아시아 영화 아카데미 (<http://afa.piff.org>)

1. 총평

아시아 영화 아카데미 웹 사이트는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미제공, 데이터 테이블의 적절성, 스킵 내비게이션 제공 여부, 의미에 맞는 적절한 태그 사용 여부 등 웹 접근성 지침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함.

2. 평가 결과

(1)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접근성

-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정보를 활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이 매우 어려움.



<그림 5-1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음>

- 텍스트로 표현이 가능한 콘텐츠는 이미지로 제작하기 보다는 텍스트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할 경우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함. 또한, 불릿 기호와 같이 의미 없는 이미지의 경우에는 대체 텍스트를 alt=""으로 제공해야 함.



<그림 5-2 이미지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된 예시>

(2) 데이터 테이블의 제목과 요약정보 제공

- 시각장애인 및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웹 사이트에 사용된 데이터 테이블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테이블 전체를 살펴봐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함.

<그림 5-3 적절하지 못한 데이터 테이블>

- 웹 사이트에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 시각장애인 및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사전에 테이블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목 및 요약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하며,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목 셀과, 내용 셀로 구분해야 함.

분류	주요내용	비고
웹 접근성 이해	웹 접근성 이해 방법 제도, 국가표준	웹 접근성 기초
웹 접근성 기획	웹 접근성 기획 및 설계(계획수립, RFP 작성 등)	개발 계획 수립


```

<table border="1" cellpadding="0" class="dataTable" summary="온라인 지문서비스 분류별 주요 내용">
<caption class="none">지문서비스 분류 및 내용</caption>
<thead>
<tr>
<th class="first quarter">분류</th>
<th class="half">주요내용</th>
<th class="end quar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h class="subject1">웹 접근성 이해</th>

```

<그림 5-4 데이터 테이블의 적절한 코딩 방식 예시>

(3) 반복되는 링크가 많은 페이지의 운용성

- 해당 웹 사이트와 같이 반복되는 콘텐츠가 제공되게 되면 키보드만을 사용하는 경우

페이지의 주요 위치로의 이동이 번거로워 불편함을 느낌.



<그림 5-5 스킵 내비게이션이 제공되지 않음>

- 반복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웹 사이트는 키보드만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고려하여 페이지 내 반복되는 콘텐츠를 건너 뛸 수 있는 스킵 내비게이션 링크를 페이지 상단에 제공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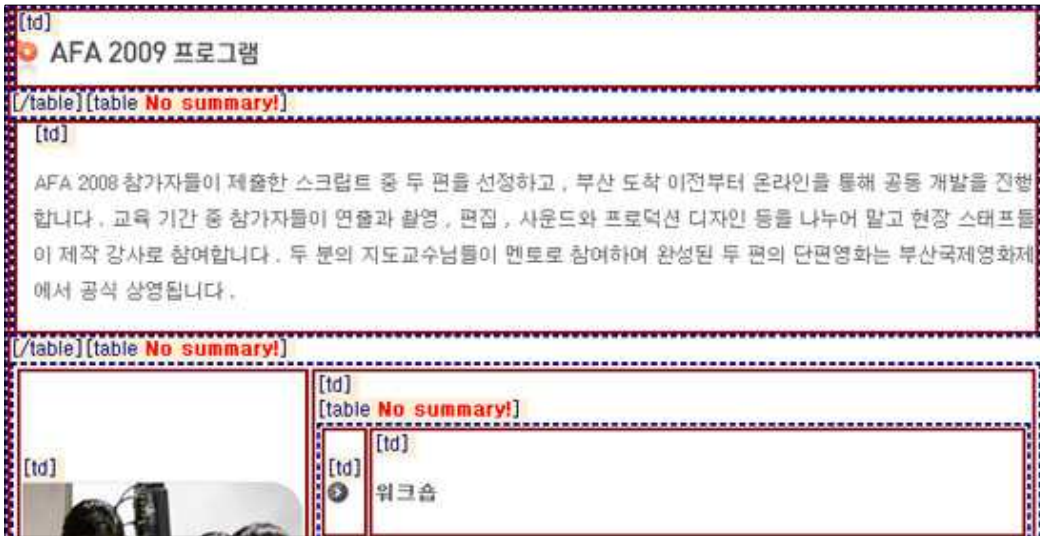


<그림 5-6 스킵 내비게이션이 제공된 예시>

(4) 의미에 맞는 적절한 태그 사용

- 제목 <h1> ~ <h6>, 문단 <p>, 목록 , , <dl> 등을 나타내기 위한 적절한 HTML 태그를 사용하지 않아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웹 페이지의 구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그림 5-7 적절한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테이블로 레이아웃을 구성>

- 웹 페이지의 구성은 제목 <h1> ~ <h6>, 문단 <p>, 목록 , , <dl> 등의 태그를 사용하여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페이지의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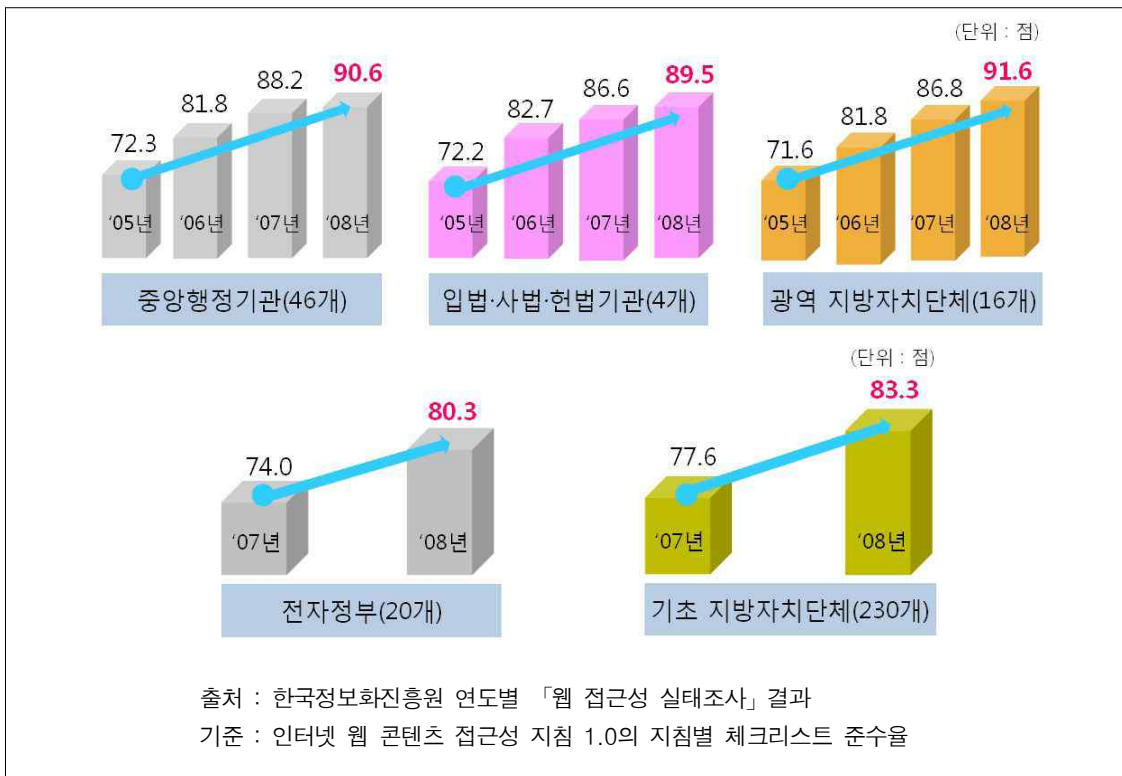


<그림 5-8 적절한 태그를 사용한 레이아웃 예시>

VI. PIFF 관련 사이트 전체 평가

장애인 웹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PIFF 관련 웹 사이트

웹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 보다도 높았던 올해에도 PIFF 는 여전히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허락하지 않았다. 웹 사이트에 제공된 대부분의 이미지에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키보드만을 사용해서 접근 할 수 없는 콘텐츠들과, 웹 사이트의 대문 격인 인트로 페이지에서 재생되는 동영상에는 자막조차 제공되고 있지 않아 웹 접근성에 대한 PIFF의 무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느낄 수 있었다.



전체 29개 페이지 평가 결과 49.2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기관 사이트의 평균이 87점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낮은 점수라고 볼 수 있으며, 기본 적인 웹 접근성을 준수한 정도라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1> PIFF 웹 사이트 주요 개선 필요사항

인식의 용이성	모든 이미지에는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운용의 용이성	키보드만으로도 모든 콘텐츠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해의 용이성	반복 콘텐츠를 건널 땀 수 있는 스킵내비게이션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온라인 서식에는 적절한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기술의 진보성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주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전 세계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PIFF 웹 사이트의 특성상 웹 접근성 개선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KWCA1.0(한국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을 준수하고, 사용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웹 접근성 진단평가를 통하여 추가적인 문제점들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로 14회를 맞아 대한민국 대표 영화제에서 세계적인 영화제로 거듭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점차 높아지는 위상에 걸맞도록 웹 접근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표2> 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관련 홈페이지 웹 접근성 평가결과

이름 (URL)		페이지		평가점수
1	PIFF 공식 웹 사이트 http://www.piff.org/	1	메인페이지	50.7
		2	전체개요와 특징	49.5
		3	상영관 운영 및 티켓예매	41.3
		4	날짜별시간표	50.8
		5	취소 및 환불규정	50.2
		6	출품작 검색	44.3
		7	자유게시판(글목록)	42.2
		8	자유게시판(글쓰기)	36.1
		9	자유게시판(글보기)	40.9
		10	메인페이지(영문)	61.5
평균				46.7
2	PIFF 온라인 예매 http://www.piff.kr/	11	메인페이지	57.3
		12	로그인	55.7
		13	회원가입	42.5
		14	예매하기	51.6
평균				51.8
3	PIFF 자원봉사자 커뮤니티 http://volunteer.piff.org/	15	메인페이지	58.7
		16	공지사항(글목록)	39.7
		17	2008 데일리영상	39.3
		18	연락처	43.4
		19	사이트맵	50.7
평균				46.4
4	시네마테크 부산 http://cinema.piff.org/	20	메인페이지	45.5
		21	프로그램 정보	49.4
		22	빠른예매	40.0
		23	공지사항(글목록)	45.1
		24	사이트맵	57.4
평균				47.5
5	아시아 영화 아카데미 http://afa.piff.org/	25	메인페이지	57.4
		26	조직도	57.4
		27	2009 일정	49.4
		28	FAQ(글목록)	57.4
		29	졸업작품 2008	46.0
평균				53.5
5개 사이트		29개 페이지		49.2

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소외계층 참여확대를 위한 인권친화적 문화시설 구축 및 운영

김대성 사무총장

한국DPI

소외계층의 참여확대를 위한 인권 친화적 문화시설 구축 및 운영

1. 들어가며

문화란 자연물외에 우리가 보고 접하는 유형의 사물만이 아니라 제도와 관습, 지식처럼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있는 무형의 것들을 다포함하는 개념이며, 우리의 행동과 생각, 느낌과 감정의 대부분이 문화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문화는 비장애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장애인을 포함한 그 지역의 유형, 무형의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예술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다. 자신의 생각을 음악, 그림, 연극 등으로 표현하여 스스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감동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좋은 예술은 많은 사람이 같이 감동할 만한 것이라는 점이 다를 뿐 누구나 예술을 하고 있으며, 좋은 예술을 하고 싶어 한다. 장애인도 인간이기에 이러한 기본적 욕구를 추구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 의해 생성되고 소비되는 대중들이 것이다. 어떤 특정인들에 의해 만들어 지고 그들만의 예술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대중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어야 진정한 문화예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참여하고, 생산해 내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한 균등한 표현의 기회가 차별받아서 안 된다. 오히려 장애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 육성하여 전체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과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장애인문화예술축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의 보장과, 참여권의 보장과 창조권의 보장을 선언하는 축제였다. 물론 첫 행사다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 실수와 의도한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장애인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욕구와 느낄 수 있었으며, 사회에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는 점은 소득이라 할 수 있다.

2. 인권친화적 문화시설

인권친화적 문화시설이란 유니버설디자인에 입각한 문화시설을 의미하며, 좀더 나아가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보장 즉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이 보장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보편적 설계)은 디자인계의 최신주제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개념을 창안한 것은 미국의 건축가 로날드 L.메이스 박사와 그의 동료들이다. 메이스 박사는 휠체어장애인였고, 그의 꿈은 장애인·비장애인과 노년층등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유니버설은 ‘모두를 위해’라는 의미이다. 메이스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유니버설디자인의 7가지 원칙을 개발하였다.

1. 공평한 사용
2. 사용의 유연성
3.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4. 쉽게 알 수 있는 사용정보
5. 사고방지와 오작동에 대한 포용성
6. 최소의 신체적 부담
7.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크기와 공간

다양한 사람들의 개성과 조건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근본정신이다. 남자이고, 여자이고, 어린이고, 청소년이고, 노인이고, 키가크고, 작고, 통통하고, 날씬하고, 오른손잡이고, 왼손잡이고, 임신중이고, 휠체어를 이용하고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나 물건을 만드는 일이다.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불편함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유니버설디자인을 향한 첫 걸음이다. 만약 디자이너가 그들의 유니버설디자인의 대상에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짐 보스트롬). 유니버설디자인이란 건물이나 시설을 추가 비용 없이 혹은 최저 비용으로 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능적이고 매력적으로 디자인 하는 방법이다(로날드L.메이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이제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는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휠체어마크가 필요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더 풍요롭게 외치는 소비자 중심의 생활 디

자인으로 지금 세계 디자이너들이 추구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을 접목시킨 문화시설일 경우 장애인 뿐 만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임산부 등 누구라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문화공간시설의 중심과 상징으로 생각하는 곳이 예술의 전당이다.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장차법의 단계적 적용시설의 개보수 또는 신규시설에 해당됨으로 이곳을 리모델링할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리모델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3. 인권친화적 문화시설에 관련된 장애인 문화예술관련 법

1) 장애인권리협약

본 협약 2007년 12월 유엔에서 제정되어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에 국회비준을 거쳐 2009년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는 조항이 있어 곧 협약은 국내법으로 보면 된다.

이 협약의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 (a)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대한 존중
- (b) 차별 금지
- (c)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 (d)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
- (e) 기회의 균등
- (f) 접근성
- (g) 남성과 여성의 평등
- (h) 장애아동의 발전적인 역량의 존중과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리의 존중

합리적 편의 제공과 보편적설계에 대한 정의

“합리적 편의”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필수적이고 적절한 변형 및 조정을 의미한다.

“보편적 설계”는 개조 혹은 특별한 설계를 할 필요 없이 최대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설계를 의미한다. “보편적 설계”는 이러한 장비가 필요한 특정한 장애인 그룹을 위한 보장구를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권리협약 제30조(문화생활·레크레이션·레저·스포츠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적인 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 (b)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기타 문화적 활동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 (c) 극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과 여행 서비스와 같은 문화 행사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의 문화적 명소 및 유물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향유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신의 이익 뿐 아니라, 사회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의 창의적이고 예술적이며 지적인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문화적인 자료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장벽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수화 및 농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수한 문화 및 언어 정체성에 대한 인지 및 지원을 받아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레크리에이션, 여가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장애인이 주류 스포츠 활동의 전 영역에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증진한다.
 - (b) 장애인이 장애 특화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하고 개발하며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적절한 지침, 훈련 및 자원의 공급을 장려한다.
 - (c) 장애인이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장소 및 여행지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d) 장애아동이 교내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e)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여행, 여가 및 스포츠 활동의 구성과 관련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용 어

- 여가와 레크리에이션(leisure and recreation): 레크리에이션은 비교적 조직적이며 사회적 편익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공간에서의 활동과 경험을 의미한다. 산업기관에서 직원 연수교육 시 행해지는 심성수련, 게임, 노래, 춤, 스포츠 등과 같은

각 활동이 이에 포함된다. 반면 여가는 포괄적이고 덜 조직적이며 개인적인 동시에 쾌락과 자기표현과 같은 내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독서나 TV시청, 음악 감상 등이 여가활동에 속한다. 레크리에이션은 넓은 의미에서 이성화된 여가의 형태이며 즐거움의 향유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농문화(deaf culture): 농문화 즉, 청각장애인의 문화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청각장애인은 청력이 상실되었거나 약화되었기 때문에 시각적인 수단인 수화 또는 문자를 기초로 한 청각장애인의, 청각장애인에 의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집단적, 창조적인 총체로 농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문화에는 의사소통, 사회적 의례, 예술, 연예, 레크리에이션, 종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 주류 스포츠 활동의 참여(participation in mainstream sporting activities): 장애인의 장애를 이유로 일반적인 주류 스포츠 활동에서 무조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은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당구와 같은 구기종목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 제9조(접근성): 문화적 자료와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동 조항과 함께 그 의무가 준수되어야 한다.
-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 문학, 연극 등의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은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 및 표현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의 규칙 10(문화)⁵⁾은 장애인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예술적이고 지적인 잠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이용가능성과 접근성을

5)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이 동등하게 문화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통합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1. 당사국들은 장애인들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도시 또는 시골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창조적이고 예술적이고 지적인 잠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한 활동의 예로는 춤, 음악, 문학, 연극, 조형예술, 그림, 조각이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인형극, 낭송, 이야기와 같은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예술의 형태가 강조되어야 한다.
2. 당사국들은 극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과 같은 장애인을 위한 문화 공연 및 서비스 장소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활성화해야 한다.
3. 당사국들은 장애인이 문학, 필름, 연극에 접근 가능하도록 특수기술 장비 개발 및 사용을 시작해야 한다.

보장해야 하며 기술 및 장비 등에 대한 개발을 해야 한다. 동 표준규칙의 규칙 11(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⁶⁾에서는 장애인들이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활동장소, 프로그램, 직원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특수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활동에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 합리적인 배려, 동등한 기회보장과 훈련 등이 마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동 조항은 다섯 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등에 관한 권리 향유와 접근성의 보장을 언급하고 있다. 모든 문화활동을 위한 자료는 반드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해야 하며 물리적 장소에 대한 접근성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제2항 이후부터는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실현을 위한 각국의 조치를 언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항은 권리실현을 위한 조치에 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권리의 향유에 관한 부분이다. 주목할 점은 제3항과 제4항을 통해 장애인의 지적재산권⁷⁾과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손으로 표현되는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청각장애인의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의 보장은 일반원칙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장애의 다양성과 언어 및 의사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5항 (a)호는 장애인을 위한 주류 스포츠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더불어 제5항 (b)호에서는 장애인 특유의 스포츠에 대한 촉진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제5항 (a)호와 (b)호는 적절히 균형을 맞추어 보장될 필요가 있다.

-
- 6) 당사국들은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갖고 있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1.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이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를 위한 장소, 호텔, 해변, 운동장, 체육관 복도 등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로는 접근성 방법의 개발을 위한 과제를 포함하여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프로그램 직원을 위한 지원, 그리고 참여, 정보,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2. 관광공사, 여행사, 호텔, 자발적인 단체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또는 여행기회를 계획하는 기타 단체는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를 고려하여 모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스포츠 단체들은 스포츠 활동에 있어 장애인들의 참여 기회를 개발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일부 경우에 있어 접근성 조치들은 참여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특수설비 또는 특수게임이 필요하다. 당사국들은 국내 및 국제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4.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다른 참여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할 때 장애인 단체와 논의해야 한다.
- 7)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7호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은 국가가 발명과 창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저작물의 전파 및 문화적 정체성의 개발을 장려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과학적,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완전성을 보전하는 우선적인 수단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인권과 달리 지적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성격의 것이며, 철회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허가되거나 양도될 수 있다. 자신의 과학적,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는 예술, 과학 및 사회 전반의 발전에 대한, 그리고 사회 전반의 발전에 대한 창작자들의 활발한 기여를 장려하도록 한다.

2)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차별행위)

-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동법시행령 제15조 요약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①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단계적 범위	해당 문화예술사업자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공공도서관,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대학박물관,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대학미술관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	사립 대학박물관, 사립 대학미술관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	민간 일반공연장,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사립박물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②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3) 문화예술진흥법

2008년 1월 17일에는 장애인문화예술향유권을 증진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문화예술정책을 규정짓는 법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크게 진일보한 것이다.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상기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문화예술관련시설의 설치와 시책마련 및 관련경비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적인 성격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요구된다.

4.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제1,2,3차 장애인 복지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외부적으로 공표한 문건을 보면 제1차 5개년 계획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3개 부처가 주관하였고 제2차 5개년계획에는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가 추가로 동참하였으며 제3차 계획에 와서 드디어 문화체육관광부도 주관부처로 참여한 것은 동부처가 문화복지부분 장기계획수립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매슬로우(A.H. Maslow 1908~1970 미국 심리학자)의 인간욕구 5단계설에서 처럼 복지정책의 초기에는 정책과제가 생리적인 욕구(식욕)와 안전욕구(주택, 직업)등 장애인의 의식주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던 것을 보다 단계를 높여 사회적인 욕구(관계성), 명예욕구, 자아실현욕구에 해당하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권진작이라는 성숙한 단계로 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개년 종합계획은 전부처가 매년 사업이행실적과 추진계획을 모니터링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면 그간 수립되어 추진되어 오고 있는 1-3차 장애인 복지종합5개년 계획 내에 문화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행사항	세부이행사항
제1차 5개년계획 (98-02)	여가·문화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향수권 확대 및 문화공간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공공문화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면 확대·설치 - 장애인에 대한 극장·공연·전시장의 관람료 할인 - 기존 장애인 이용시설에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1시설 1개 이상의 문예 프로그램 실시('99년부터 점차 확대) - 장애인시설 종사자(15명씩)에 대한 문화연수프로그램 실시 - 각 시·도별로 1개소씩 문화복지센터 건립·운영 ○ 문예프로그램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장애인실태조사에 문화육구 실태조사 내용 반영 - 장애영역별로 문화유산 답사프로그램 실시 - 음악 등 각 부문별, 장르별로 국제교류 추진 ○ 예능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년부터 전국 특수학교에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전 교사 배치(교육부 : 매년 5개교에 3명씩 배치) - 예술분야에 재능을 지닌 장애인 대상으로 문화교실 운영 ○ 문예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진흥기금을 통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사업 적극 지원
제2차 5개년계획 (03-07)	문화활동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이용하기 용이한 문화 프로그램 보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문화시설별 문화교육강좌 운영 확대 - 장애청소년을 위한 문화현장체험활동 지원 및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는 문화활동권장
제3차 5개년계획 (08-12)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바우처 사업 및 취약계층 복지관광 지원 ○ 장애인 문화복지 향상 프로그램('08년 신규사업) 및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상영 편수: '08년 12편 → '12년 15편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점자도서, 녹음도서, 수화영상도서 등 대체자료 제작·보급을 통해 장애인 독서환경구축 '08년 117종 → '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표준수화와 한국점자규정의 보급으로 특수언어 표준화 도모

제1차 5개년계획에는 문화시설이용편익, 문화향수, 문예창조활동, 문화교육 등이 고루 포함되어 있는데 제2차 5개년계획에서는 오히려 문화향수와 교육으로 계획의 폭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관부서도 보건복지부, 협조부서가 문화관광부로 되어 있다. 제1,2차 종합계획에는 이행 과제가 1개 항목 이었는데 비해 제3차에 와서는 2개 항목으로 늘어나고 계획의 내용도 보다 구체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제1차부터 3차 계획에 걸쳐 포함되어 있는 문화 복지 계획은 일정한 방향을 갖고 점차 고도화되면서 수립되었다기 보다는 장애인 문화 복지 전담과의 부재로 그때마다 문화부내에 산재해 있는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사업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수준에 그친 듯 하다.

한편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은 초기에는 주로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대해서만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향수권 사업을 시작하여 창조와 향수라는 양대 축을 갖고 발전해오고 있다.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표현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향수권 사업과 함께 제1차 5개년 계획에 등장하여 창조와 향수라는 형태를 갖추는 것 같더니만 제2차와 3차 계획에서는 문화향수정책만 강조되어 있고 장애인들의 표현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나타나 있지 않다.

5. 맺음말

장애인이 겪는 영상문화 접근의 어려움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극장내 급 경사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물리적 접근이 열악하다.
- 극장에 접근하였다 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좌석은 아무도 앉고 싶어하지 않는 자리인 가장 앞쪽과 가장 뒤쪽으로만 제한되어 있다.
- 자막이 없다.
- 오디오로 설명이 없다.
- 영화와 세션시간에 대한 정보습득이 불가능하다.
- 극장에 가기 위한 대중교통 수단이 용이하지 않다.

영상문화뿐만 아니라 연극, 전시, 무대, 공원 등에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친화적 문화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은 대중들에 의해 생성되고 소비되는 대중들이 것이다. 장애인을 비롯한 대중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어야 진정한 문화강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 친화적 문화시설이란 장애인권리협약 언급한 비차별적이고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와 통합, 접근성의 기회균등 원칙에 해당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에 해당된다.

인권 친화적 문화시설은 이 사회 모든 시설을 건장한 비장애인청년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개성과 조건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신으로 만드는 것이다, 장애인이건 사회적 약자이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나 건물을 만드는 것이다.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정당한편의제공(합리적 편의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이 문화적 자료와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접근성이 보장받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다.

앞으로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를 하여야 하며,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계에서도 법과 제도를 잘 활용하여 장애인이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과정의 인권친화적 문화시설 구축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김철환 활동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

1. 들어가며

지난 10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이하 인권위원회)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었다 한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좌석을 마련해 달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하고 수화통역 서비스도 제공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인권위원회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장애인의 접근 서비스를 요청 한 것은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함께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행사가 되길 바라는 의도’라고 밝히고 있다.⁸⁾

그 동안 장애인들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등 장애인들은 부산국제영화제에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권위원회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취한 행동은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번 되짚어 볼 것이 있다. 그 동안 장애인들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상대로 차별 진정을 하고, 여러 차례 민원도 냈음에도 접근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원회가 부산국제영화제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의서비스를 강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지 못하고 협조를 구하는 선에서 그쳤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인권위원회를 탓할 수 없다. 현재까지는 영화나 영상물에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아도 인권위원회가 이를 강력히 규제할만한 법적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인권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⁹⁾ 따라서 이 토론문은 장애인들이 문화 활동에 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정책개선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문화영역에서의 차별금지의 내용을 실효성 있게 실천하기 위하여 참여권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하는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문제는 없는지

8) 김철환칼럼. “DPI매거진 2009년 11월호”. 한국장애인연맹

9)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가운데 장애인의 영화나 영상물 접근과 관련한 근거는 미흡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에 대한 내용을 담고자 한다.

2. 장차법에서 문화권의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총 6개장 50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의 문화접근과 향유를 하는데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제2장 ‘재화용역의 이용’의 내용 가운데 ‘정보와 의사소통’ 관련 조항들과 ‘문화와 예술’ 관련 조항들이 그것이다.

정보와 의사소통의 조항들 가운데 장애인의 문화접근과 관련한 내용은 법 제21조와 그에 따르는 시행령 제14조이다. 이 조항은 장애인의 문화와 예술을 비롯한 접근에 있어서 내용적인 측면인 정보접근이나 의사소통에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제공자가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당한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편의는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정보’에서는 ‘웹 접근’을 명시하고 있으며, 웹 접근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보제공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외의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 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문화 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물리적인 제약이나 서비스적인 측면은 법 제24조와 그에 따른 시행령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서도 문화나 예술 활동에서 차별을 금지하면서 차별방지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편의를 4가지 형태로 명시하고 있다. 첫째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15에 접근 X4조와 그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둘째, ‘문화·예술 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셋째,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15 장비 및 기기 제공’, 넷째, ‘문화·예술 활동 관련 정보 제공’이다. 또한 정당한편의의 제공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사업자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15조의 별표에는 그 시기를 2010년과 2012년, 2015년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2010년의 경우 공공성을 띤 문화예술 사업자를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종합공연장인 대형 박물관을, 2015년에는 그 외 문화 활동그시설을 명시하고 있다.

<표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의 문화접근 관련 조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

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 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 ③제2항 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 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관련 정보 제공

[별표 4]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1.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대학박물관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대학미술관

2.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 사립 대학미술관

3.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일반 공연장
-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3. 장차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정책 개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차별금지란 차별이 일어난 사후의 문제를 가지고 권리구제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차별을 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차별이 생겼을 때 장애인들이 겪어야 하는 ‘인간답지 못한 삶’도 문제이지만 차별 이후에 진행되는 구제절차도 일반 시민들에게 그리 달가운 것이 아니다. 장애인들에게 차별이 생긴다는 것은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에게도 다 이득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차별발생으로 구제절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적인 낭비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차별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화예술 행위자가 적절한 정당한편의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지 2년이 지났음에도 관련 정책개선에 미온적이다. 현재 정부의 입장¹⁰⁾으로 봐서 앞으로도 크게 변화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장애인들에게나 비장애인들에게, 더 나아가 이 사회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의 미온적인 입장을 버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부가 개선하여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를 짚어본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의 문화접근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도 짚어보고자 한다.

10) 문화관광체육부에 한정한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장애인의 문화권을 향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취약하다. 물론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중기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에 맞춘 정책을 개발하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 또한 가속화되는 정보사회와 진보하는 기술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을 위하여 정부의 노력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사업자에 대한 의무준수를 위한 정책, 장애인들의 문화접근을 넘어서서 자유로운 창작과 창작의 결과물을 비장애인과 공유하고 상품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먼저 손대야 할 것은 시행중인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다. 이 5개년 계획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이후 만들어진 것이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5개년 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얼마 전에 끝난 국회의 정부감사 자료 가운데 조영택 의원(민주당)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08년에 지출한 소외계층의 문화지원 사업은 2007년의 예산인 630억8600만원보다 30%가량이나 줄어든 255억9100만원이었다고 한다. 구체적인 예산으로 소외계층의 영화와 연극 등 공연관람을 지원하는 '사랑의 티켓'도 2007년 5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축소됐었다. 소외계층 문화순회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사업도 2007년엔 75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줄었다. 장애인영화제 지원의 경우 2007년 5000만 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었고, 소외계층 매체운영지원도 2007년도 1억2400만원에서 6400만원으로 줄었다. 그 외의 대부분 예산도 줄었으며, 체육 분야의 경우 예산 항목이 사라진 경우도 있다.

현재 문화소외계층을 위하여 일부를 사용하는 문예진흥기금의 경우도 일반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예산에 비하여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턱없이 적다. 2009년도 예술위원회 전체 예산은 2천 22십억 7천 1백 98만원 정도이고,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은 4억 2천 6백 5십만 원이다. 즉, 일반 문화예술지원 예산에 비하여 장애인들에게 지원예산은 0.94%로 1%도 안 된다. 더욱이 현재의 예산은 장애인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만 있고 차별을 막기 위한 문화예술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예산 구조로는 장애인의 차별을 막을 수 있는 환경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한 예산 확보나 공익기금의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하는 데는 예산의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하도록 홍보를 하여야 하고,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를 하여야 한

다. 문화관광체육부가 문화영역에 대한 시행시기가 남았다고 판단해서인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에 미온적이다. 모니터에 대한 계획도 초보단계이다. 하지만 이는 오산이다. 2010년이면 문화예술사업장에도 법률이 적용된다. 민간영역에도 2015년까지 모두 적용된다. 법률에서 정하는 정당한편의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지만 홈페이지를 바꾸고, 물품은 구입하고, 건물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것도 있다. 또한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 문화예술인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작은 예산의 경우는 쉽게 마련이 되겠지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나 홈페이지 등 환경, 인식개선은 하루아침에 어렵다.

따라서 문화예술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차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정당한편의를 제공할 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지원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을 만들며 사전 모니터를 실시하여 해당 행위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경각심도 심어주어야 한다.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것은 공공기관의 경우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을 평가할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준수여부를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민간의 경우 공공기금을 받는 문화예술행위에 장애인에 대한 사용 예산을 평가할 때 장애인들에게 정당한편의를 어느 정도 준수했는지를 물어 준수여부를 차기년도 예산 지원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있어서 견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각 시도나 광역시를 중심으로 장애인 접근을 구비한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정당한편의의 내용을 책자나 영상 등 홍보를 통하여서 알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일반 시민들에게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¹¹⁾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견본 모델을 제시하여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국민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역별 행사개발과 부산국제영화제 등 지역축제의 지원을 통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외에 학술연구 지원들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작업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문제점도 있다. 출판물에 장애인 접근이 시급하고, 문화예술 분야 가운데 영화에 대한 접근 욕구가 높음에도 이를 규제할 근거 조항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가운데 영화접근의 경우 비현실적인 내용이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어 비장애인과 다른 장애인 문화 향유의 문제나 문

11)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등에서 국민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 관련한 세부적인 홍보가 없어 이에 대한 별도의 홍보가 필요하다

화예술 창작의 문제가 취약하다.

지난 2006년도 전국 564개의 공공도서관의 장서는 약 5천만권이다. 하지만 점자나 녹음도서 등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장서는 약 10만종이다. 이 수치는 총 장서의 0.2%에 해당하는 것이다.¹²⁾ 그리고 매년 5만 여종의 서적이 만들어지는데 이중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변환된 서적은 1천여 종으로 2%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서적의 양도 부족하고, 신간 서적이 나오고 이를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점자나 녹음도서 등으로 변화하는 데에도 짧게는 3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영화의 경우도 지난 한해 400여 편 정도가 국내에서 상영이 되었는데 장애인들이 일반극장에서 관람이 가능했던 영화는 고작 10여 편에 불과했다. 이동장애인들은 접근이 어려워, 시각장애인들의 경우는 화면을 볼 수가 없어서, 청각장애인들은 들을 수가 없어서,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입장을 거부하여 영화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시설 개선으로 환경이 좋아지고 있고, 보호자가 동반하면 관람이 가능하여 이동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의 경우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화면해설이나 자막 등 서비스가 없어 여전히 영화를 보는 것은 어렵다.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이다.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3항으로 정부안과 국회의원(정하균의원, 박은수의원, 이하 의원안)이 있다. 정부안은 출판물 사업자와 영화 등 영상 사업자가 장애인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편의 제공을 임의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의원안은 해당사업자가 편의제공을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의원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이 개정되면 해당 사업자들의 도산을 하는 등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러한 주장은 정부가 장애인의 문화정책이 부재하고 관련예산 확보를 게을리 하여 생긴 것을 장애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현재 영화진흥관련 예산이 500억 정도인데 이 가운데 장애인의 영화접근 관련 예산은 4억에 불과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자의 민원을 빌미로 책임회피를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차별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가운데 의원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도 만들어야 한다.

<표 2>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안(출판, 영상분야만 발체함)

12) 한국도서관 연합, 2007

현 행	정 부 안	박은수의원안	정하균의원안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③(생략) <신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④(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③(생략) ④ 출판물을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간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과 점자 및 확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③(생략) ④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하는 사업자와 해당 출판물의 저작권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과 점자 및 큰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⑤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영화, 비디오물 등의 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와 해당 영상물의 저작권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접근에 무게를 두다 보니 다양한 문화 향유나 창작의 확대와 같은 부분은 소홀하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만들어진 문화가 있다. 수화가 일반적인 음성언어와 다른 시각언어이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시각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모든 것을 시각화시킨다. 이러한 바탕이 청각장애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6년 UN에서 만들어지고 올해 1월 국회에서 비준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는 이러한 청각장애인의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³⁾ 장애인만의 문화에 대한 문제는 청각장애인만의 것이 아니다. 시각장애인들도 그렇고 이동장애인들도 그렇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차후에 법률 개정을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문화와 예술 창작에 있어서 차별금지 조항도 미흡하다. 창작에 대한 차별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차별이 발생할 경우나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정책을 개발 할 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률에서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창작을 비장애인의 영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창작품을 수익과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야 한다.

4.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7)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의 정보격차는 줄고 있으나 여전히 일반 국민과의 24%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이용률의 격차도 26%가 된다. 더욱이 정보사회에서 정보접근이 절실한 시각, 청각, 뇌병변장애인들의 정보격차는 더 심각하다. 시각, 청각, 뇌병변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33.9%~43.4%의 격차가 생기고 있다. 이 자료는 인터넷 격차에 한정하고 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화와 관련한 격차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이러한 격차가 단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문화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저작물이나 문화에 접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창작조의 기회가 차단되는 것은 물론 동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소외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로 한정된 지식으로만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은 진학이나 취업 등에서 비장애인과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장애인들이 사회의 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 현재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 1,819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3,370천원)의 54.0% 수준이며, 만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도 41.1%로 전체 실업률의 3.3%보다 2.5배 많은 8.3%이다. 라는 통계(2008.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의 문

13)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문화생활·레크리에이션·레저·스포츠참여) 4.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수화 및 농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수한 문화 및 언어 정체성에 대한 인지 및 지원을 받아야 한다.

화접근이 문제를 낭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계발과 비장애인과 삶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14회 부산국제영화제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 및 장애인 문화참여 현황과 과제

손 원 진 사무국장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 참여 편의제공 모니터링 종합평가

2009년 10월 08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이번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는 70개국의 총355편 영화 총 803회가 상영되었다. 관객수도 173,516명이 관람하여 명실공히 아시아 최대규모의 영화제를 넘어선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산이라는 도시를 영화의 바다로 만들어 버린 부산국제영화제는 규모와 내용면에서 예년보다는 훨씬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14회째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영화산업의 발전과 부산이 영화도시로써의 위상은 높아졌다 할 수 있으나, 반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영화제 조직위원회측에서는 특정 작품에 한하여 장애인단체를 통해 무료로 장애인들에게 초대권을 보급하고 있으며, 그 초대권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은 사실이다. 물론 직접 관람권을 구매해 관람하는 장애인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들을 영화제를 통해 골라 보는 재미가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에게는 이러한 선택과 결정의 기본적인 권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부산국제영화제(PIFF)’에 참여하는 상영관들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특정장애 즉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작품을 관람하는 것은 몇 편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개막식이나 기자회견과 같은 각종 부대행사 진행시 수화통역이나 도우미 배치와 같은 장애인을 고려한 행사 진행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부산국제영화제(PIFF)’가 지역민과 전 국민 그리고 외국인까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서 더욱더 크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3항에서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부산국제영화제(PIFF)’는 이러한 부분에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그러한 점들이 보완된다면 명실상부하게 모두가 참여하는 영화축제으로써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음은 당연할 것이다.

이에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사)부산장애인인권포럼’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와 함께 장애인들의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참여환경을 제안하여 장애인들의 참여를 높이고,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인 영화와 문화에 대한 향유권을 개선하여 사회인식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 편의제

공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 진행을 위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 발된 모니터 단원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이들 모니터단은 개막식 행사, 부대행사, 폐막식, 상영작, 각종 인쇄물, 영화제 관련 홈페이지 웹 접근성, 행사장 편의시설, 행사 진행 요원들의 장애인 응대기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직접 수행하였다. 야외상영장을 포함한 6개 상영관의 38개 스크린에 대한 직접 편의시설 조사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각종 자료와 영화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장애인 참여 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들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제안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더 편리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부산국제영화제(PIFF)’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9일간의 행사와 동시에 진행된 모니터링의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1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나타난 장애인 참여를 저해하는 점들을 확인해 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 하도록 하겠다.

첫째,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화상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체 한국영화 상영작 중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이 제공된 영화의 수는 겨우 6편이며, 영화 상영과 기타 기자회견, 감독과의 대화와 같은 부대행사에서 수화통역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장애인 참여를 위한 준비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가져 본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을 제공한 상영작은 6개 영화관의 37개 스크린에서 화면해설을 위한 영화는 단 2편, 각 1회 상영에 그쳤다.

비록 작년 13회 국제영화제와는 달리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장치와 수신기를 설치하여 영화 상영을 했지만 총 355편의 영화중 2.4%에 해당하는 8편에 그쳤다. 이것은 장애인을 배려하기 보다는 단지 “보여주고, 생색내기 용(用)”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영화관람을 위하여 여태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시도를 하는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측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진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장애인을 위한 자막·해설 영화가 상영되기 위해서는 영화관측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국제영화제(PIFF)’에 참여한 영화관들이 이러한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장애인들의 ‘부산국제영화제(PIFF)’로 향하는 걸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PIFF)’에 상영하는 영화들이 한글 자막과 화면해설을 삽입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사전제작 시간을 제공하지 못한 채 영화제 측에 제공되어, 영화제 조직위원회측이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장애인을 위한 사전작업들을 하지 못했다는 점도 또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비록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다 보면 장애인들도 기대보

다 걱정이 앞서는 영화제가 아니라, 즐겁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세계속의 부산국제영화제로 발돋움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둘째,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정보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웹 접근성에 대한 부문은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 보다도 높았던 올해에도 PIFF는 여전히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허락하지 않았다. 웹 사이트에 제공된 대부분의 이미지에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키보드만을 사용해서 접근 할 수 없는 콘텐츠들과, 웹 사이트의 대문 격인 인트로 페이지에서 재생되는 동영상에는 자막조차 제공되고 있지 않아 웹 접근성에 대한 PIFF의 무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리플렛과 안내책자 제작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인쇄물을 일부 출판하여 극장에 비치하여 영화제를 찾은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조직위원회의 노력을 엿볼수 있는 14회 PIFF였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메인 영화안내책자 제작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장애인인권포럼, PIFF 조직위, 인쇄기획사와 함께 시장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바코드(텍스트리딩 바코드) 삽입을 위하여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추진하려 하였으나, 보이스아이 프로그램과 인쇄편집 프로그램과의 호환이 되지 않아 계획을 접어야만 했다. 향후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의 기술개선이 이루어진다면, PIFF조직위의 강한 의지가 있으므로 향후 기대해 볼만한 부분이다.

셋째, 상영관들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번 ‘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 참여환경 조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상영관들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내용으로 노인, 임산부, 장애인들의 다양한 계층의 환경적인 참여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조사라 할 수 있다.

편의시설 조사는 야외상영관을 포함하여 6개 영화관, 37개 상영관에 대해서 주 출입구, 출입문 등을 12개 편의시설에 대해 80개 항목으로 구성된 편의시설 조사표를 19명의 모니터단이 각 상영관별로 2회 조사를 수행하여 실시되었다. 극장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남포동을 제외하고 해운대 지역 상영관들은 건물 진입까지는 가능하나, 영화관내의 시설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이 편리한 환경에서 영화 관람은 힘든 환경이었다. 신축건물이라 하더라도 영화관 진입은 어렵게 할 수 있겠으나, 장애인 관람석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배치되어 있지 않아 비정상적인 자리에서 관람해야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맨 앞자리 공터, 진입로 중간 복도가 그나마 관람할 수 있는 자리로 조사되었으며, 진입로와 퇴출로가 모두 계단인 곳은 입장 자체가 불가능 했다.

각 조사된 항목을 백분율로 상영관별로 평가해보면 ‘수영만 야외극장’이 약 17점, ‘대영시네마’ 35점, ‘롯데시네마’ 50점, ‘부산극장’ 약 21점, ‘CGV센텀시티’ 약 53점, ‘해운대메가박스

스' 약 42점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남포동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비교적 오래된 극장들인 '대영시네마', '부산극장'이 낮은 점수로 출입조차 어려운 환경으로 되어있으며 나머지 해운대지역 상영관들은 상영관 진입은 가능하나 전체적인 점수가 높지 못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CGV센텀시티의 경우 최고 점수를 평가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편리한 것으로 평가되기는 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적극 고려하지 못한 설계와 시공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점자블럭이나 유도설비 등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영화 관람은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가장 최하 점수를 받은 야외극장을 보면 접근성도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화장실 사용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소한 장애인 이동화장실이라도 준비되어 있어야 했을 부분으로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영화관의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부산국제영화제(PIFF)'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부산국제영화제(PIFF)'는 각각의 상영관들을 행사기간동안에 임대하여 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써, 영화관의 편의시설에 관련한 문제는 1차적으로 각 개별 영화관들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을 관객으로, 또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는 영화관의 인식 때문이라고 판단되어지며, 장애인이 영화를 즐기기 위해 필요한 시설들을 충분히 갖춰놓지 못한 개별 영화관들은 장애인들이 영화를 관람할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편의시설의 문제는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관람석 진입을 위한 영화관 출입구 및 복도와 통로의 개보수와 승강기의 확충을 통해 관람석까지의 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상영관 맨 앞이나 맨 뒤에 배치된 장애인 관람석을 출입이 유리하고 관람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함과 동시에 휠체어 보관이 가능한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각 영화관들이 시설을 보수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안내시설의 경우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촉지도, 피난시설, 유도시설 등을 관련 단체의 자문을 얻어 설치해야 할 것이다.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매표소는 데스크의 일부를 기차역과 같이 장애인전용 창구로 설정하고 그 높이를 낮추어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며, 매표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테이블을 제공하여 장애인 응대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전용 화장실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긍정적 응답 비율이 61.51%,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38.49%로 나타났다. 영화관 내의 관람석에 관한 항목에서는 28.21%의 응답이 긍정적으로, 71.79%의 응답이 부정적 응답으로 나타나, CGV센터시티점의 등장으로 작년보다는 만족도가 조금은 높아졌지만 상영관 전체적으로는 장애인이 관람하기에 아직은 미흡한 환경인 것을 알 수 있다. 영화관 매표대의 해당하는 항목으로 47.73%가 긍정적 응답을 52.27%가 부정적 응답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 기준인 110cm의 높이를 아슬아슬하게 맞추고 있거

나 비장애인이 서있는 높이를 기준으로 제작되어 있어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남의 도움 없이는 매표자체가 불가능 했다

또한 극장 외부시설의 경우 건물 입구의 자동문이 미설치된 극장에는 자동문 설치가 필요하며, 건물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이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점자블럭이 설치된 문이 잠겨있어 시각장애인의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물내부 복도와 통로의 경우 점자블럭의 미설치로 시각장애인 보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건물안내에 대한 건물안내 촉지도가 설치되지 않아 건물과 극장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영화관들에 있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따라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블럭의 설치와 건물 출입문의 관리가 필요하며, 건물안내 촉지도 설치가 이루어져 시각장애인도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해서는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각 개별 영화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다 많은 장애인들과 이동약자들이 영화관을 찾고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각 개별 영화관들의 노력과 배려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부산국제영화제(PIFF)’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 배려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올해부터 부산국제영화제 자원봉사자들의 대상으로 “장애인인권교육과 장애인 응대요령” 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와 부산장애인인권포럼 자체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영화제 관람을 위한 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각각의 상영관별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문 비치나 상황적인 대처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미비하여, 모니터단이 방문했을 시 일부 상영관에서 적극적인 상황대처가 미비했던 점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상영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와 장애인 응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각 영화관들의 몫이나, 상영관 선정 시 조직위원회의 사전 배려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화관의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때 1차적으로 편의시설의 문제는 각 영화관들의 문제라는 것은 이미 인지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편의시설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산국제영화제(PIFF)’ 조직위원회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상영관 선정 시에 사전에 개별 상영관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조사나 관련 장애인단체들의 자문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우수한 상영관을 상영극장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선정된 상영관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하여 각 상영관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도록 제안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영화콘텐츠’, ‘영화관 편의시설’, ‘정보제공과 웹 접근성’, ‘조직위원

회의 운영'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장애인 편의시설 환경은 생각보다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부산국제영화제(PIFF)'가 장애인의 참여를 무시하거나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이번의 '장애인편의제공 모니터링'도 영화제 조직위원회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제 조직위원회 측에서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에서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조직위원회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참여하는 장애인들에게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로 드러났다.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등의 소수자 참여를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이다.

향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영화제로써의 위상과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면 명실공히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국제영화제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애인당사자나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조직위원회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작게는 영화제에 참여하고 있는 영화관의 인식 개선으로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가장 큰 기반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 그리고 영화제에 참여하는 모든 부산시민들의 노력에 기반을 두어야지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한 몇 가지의 논의점들을 제안한다면,

첫째, '부산국제영화제(PIFF)' 조직구성내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소수자 참여를 위한 공동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화제 프로그램 중 “장애인인권영화” 프로그램과 같은 소수자 및 약자와 관련된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의 개설을 통해 '부산국제영화제(PIFF)'에 참여하는 영화관, 스텝, 자원봉사자, 그리고 수십만의 관객들과 관계자들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그동안 모든 부산시민들의 숙원이던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전용관인 부산영상센터 '두레라움'이 건립되고 있는데, 이 '두레라움'의 현재 건립단계에서 부더라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개념을 도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가의 참여한다면, 장애인이나 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의 모든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전용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번 모니터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노력이 단순히 부산

의 영화인들과 장애인들만의 성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장애인들의 영화향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 및 영화 향유 보장을 위한 조문마련에 장애인단체등의 장애인 당사자와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부산국제영화제(PIFF)’ 조직위원회 만이 아닌 부산광역시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부산국제영화제(PIFF)’는 세계영화제의 선두주자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인권영화제로써의 선두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진행된 “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은 국제영화제로써의 위상이 높은 ‘부산국제영화제(PIFF)’를 비판하고 공격하고자 진행된 것은 절대 아니며, 다만 그동안 다소 소외되어왔던 사람들이 ‘부산국제영화제(PIFF)’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간의 배려를 요청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서도 밝혔듯이 현재의 ‘부산국제영화제(PIFF)’는 장애인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는 아직은 약간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이번 영화제에서는 PIFF 조직위 측의 개선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다. 가령,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 상영, 점자 시간표 등, 물리적 접근성 외에도 영화라는 문화상품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와 향유를 돕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이번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부산국제영화제(PIFF)’가 되기 희망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PIFF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단 활동소감

장애인편의제공 모니터링단

10월의 가을...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되었다

(해운대 스펀지 메가박스, 해운대 센텀시티 롯데 시네마)

곽봉금 (PIFF 편의시설모니터링단, 뇌병변장애)

맑고 청명한 10월의 가을 ...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되었다. 장애인이 영화관을 찾을 때 불편한 사항이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 하는 일을 올해도 참여하게 되었다. 작년 영화제에도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했는데 올 영화제 또한 참여 하게 되어 작년과 올해 어떤 점들이 개선되었고 변화하였는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를 했다.



(해운대 롯데시네마 전경)

2009년 10월 12일 해운대 스펀지 메가박스를 찾았다. 작년영화제를 떠올리며 여러 편의시설이나 장애인을 위한 배려 등을 찾아보고 비교해보았으나 크게 달라지거나 개선된 점이 없어 아쉬웠다. 그 후 이들이 지난 10월 14일 해운대 센텀시티 롯데 시네마를 다시 방문하였다. 작년 영화제 모니터링 때에는 그나마 장애인을 위한 배려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있다고 생각했던 곳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을 찾아 볼 순 없었다. 두 상영관 모두 쇼핑몰중심의 상업시설 속에 있는 상영관이다 보니 출입구부터가 혼잡하여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었다.

영화 관람뿐 아니라 쇼핑과 여과생활을 즐기려는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시설 제공 등 조금의 세심한 배려가 좀 더 갖추어졌으면 하는 생각에 씁쓸함을 담고 집으로 향하였다.

처음 참여해보는 영화제였습니다.

(해운대 스펀지 메가박스, 해운대 센텀시티 CGV)

전혜주 (PIFF 편의시설모니터링단, 지체장애)

14회 부산국제영화제지만 부산에 살면서도 처음 참여해보는 영화제였습니다. 2호선 지하철을 타고 4구간을 지나 도착한 영화관은 이번 영화제에 새로이 선보이는 해운대cgv... 안내 요원들이 출입구에 있어주어 입구통과는 쉬웠지만 사람이 많은 승강기는 이용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영화를 보려면 영화표를 구입해야하기에 매표소로 먼저 향했습니다. 다른 극장과 달리 데스크가 낮은 곳이 있어 그 곳에서 서비스 받기를 기다렸지만 데스크만 낮은 직원분의 시야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직원분을 불러서야 영화표를 받을 수 있었고 제가 도착한 순서와는 무관하게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영화표를 받은 뒤, 영화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영화관을 잠깐 둘러보았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게 잘 꾸며진 공간인 cgv영화관은 계단의 디자인까지 세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분들이 오신다면 점자블럭이 없어 얼마나 힘이 드실지.. 목발을 짚는 장애인분들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 어쩌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영관으로 들어서자 행사 진행스텝분이 장애인좌석을 먼저 권하셨습니다. 스크린과 제일 가까운 맨 앞자리 좌석을 한쪽으로 당기니 휠체어가 정차할 수 있는 휠체어좌석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10분 이상 영화를 본다면 목이 너무 아플듯해서였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자세히 시설들을 돌아보면서 모니터링 항목들을 표기하다보니 그래도 편의시설은 잘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처럼 아쉬운 부분들 또한 있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누구나 함께하는 영화축제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처럼 어느 누구나 장애가 있든 없든 함께할 수 있는 영화제로 매년마다 변화해 가기를 바랍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많은 공부한 것 같다.

(해운대 센텀시티 롯데 시네마, 해운대 센텀시티 CGV)

서범주 (PIFF 편의시설모니터링단, 지체장애)

피프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하면서 많은 공부 한 것 같다. 지금까지 모니터링이란 것이 쉽게 생각을 한 저는 모니터링을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고 많은 준비성과 내 자신과 나와 다른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 하면서 활동을 해야 하는 일이 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모니터링을 한 곳은 센텀시티지점인 CGV와 롯데시네마를 돌아보면서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조사 하였지만 생각했던것 보다 편의시설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았다.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지하철이다 보니 두 곳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별 어려운 점은 없었지만 편의시설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장애인전용엘리베이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 표시판이 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찾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장애인전용좌석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아 영화관람 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다.

그리고 그밖에 편의시설 부분에 있어서 보안 할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었던 것은 화장실을 이용하기엔 너무 편리 하였다. 물론 일반 화장실에 안전봉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었지만, 장애인전용화장실 만큼은 대체로 시설이 잘 되어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점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아직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아 안타까웠다.

올해 피프 기간 동안에는 ‘신종플루’란 유행과 사회 전반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라서 그런지 피프 시작한 몇일 동안은 많은 관심과 관람을 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날이 흐름에 따라 관심도와 참여율이 점점 떨어져 보였다.

그 동안 힘들게 모니터링 활동한 보람을 오래도록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도 피프에 참여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영화관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해운대 센텀시티 롯데 시네마, 해운대 센텀시티 CGV)

정연경 (PIFF 편의시설모니터링단, 뇌병변장애)

나는 지난 10월에 열렸던 14회 부산국제영화제에 모니터링 조사를 했다. 모니터링 이란 일은 장애인이 편하게 영화를 관람 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는 일이다.

나의 첫 영화는 "롯데시네마"에서 "기다리게 하는 도시"였다. 롯데시네마에는 작년 내가 갔을 때처럼 여전히 영화 관람석이 불편했다. 장애인 관람석이라는 것이 없었다.



(해운대 센텀시티 CGV 전경)

물론 장애인이 가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있으나, 앞이라 보기 힘이 들뿐 아니라 심지어 목도 아팠다. 장애인석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영화를 보려면 목도 아프고 장애인이 불편함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 간 영화관은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CGV였다.

나는 신세계 영화관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좋을 줄은 몰랐다. 장애인이 다니기에 아주 편리했다. 화장실은 물론이고 장애인 주차장, 엘리베이터 그리고 장애인 관람석이 있었다. 관람좌석은 이동식 좌석이라 아주 편리했다

국제영화제 편의조사 모니터링을 한 나의 느낌은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인들을 위해 만든 편의시설을 좀 더 편하게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영화관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누구나 동참하고픈 영화제... 현실은...

(시너스 부산극장)

김현주 (만족도 조사지 작성자, 지체1급)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즐기러 부산씨너스가 있는 남포동으로 향하였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본고지인 남포동 인만큼 국제영화제를 제대로 즐겨보고자 했던 기대감도 잠시 어렵게 휠체어를 타고 남포동에 도착 부산씨너스를 향하는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인산인해를 이룬 광장사이클 휠체어를 타고 진입하기란 여간 힘든 여정이 아니었다. 어렵게 부산씨너스를 찾아 도착하여 휠체어 진입로를 찾아 한참을 헤맸으나 진입로가 따로 없어 자원봉사자에게 물어보니 부산씨너스 상영관은 휠체어진입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자원봉사자의 말에 정말 어안이 병병하였다. ‘부산국제영화제’ 말 그대로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장애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편의시설조치 갖추어져있지 않은 영화제 주최 측에 화가 났다.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행사로 자리 잡은 행사인 만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 행사라 함에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의 장이 열려야하는 당연한 현실임에도 정말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치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비장애인들과 외국인들만의 소수의 축제인가라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행사 첫 시행년도도 아닌 14회라는 시간들을 지나오며 행사를 주최 해오면서 이런 소소한 배려나 장애인들도 함께한다는 마인드가 부족하니 이런 문제점들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장애인들은 취미생활이나 여과생활에 참으로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장애인들이 그나마 쉽게 접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취미생활중 하나가 영화 관람일 것이다. 비장애인들에게도 영화마니아가 있듯 분명 장애인들 또한 영화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니아층이 있을 것이다. 그들 또한 매년 열리는 이 영화제를 많은 기대감과 설렘으로 분명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이 기대감과 설렘이 작은 턱하나 소소한 무심함과 배려 없는 태도에 장애인들은 이런 축제조차 함께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이질감으로 또다시 바뀌어 버릴 것이다. 이런 국제적인 축제의장에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한정되어 있을 것이다.

그나마 부산 국제영화제는 장애인들도 함께 동참 할 수 있는 축제의장이라 여기고 참여하려는 장애인들이 또다시 작은 턱. 기본적인 편의시설하나에 또 다시 허탈함과 좌절감을 뒤로 하고 발길을 돌려야 할 것이다.

형식에 가까운 소수의 영화축제란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김민기 (PIFF 편의시설모니터링단, 활동보조인)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를 함께하며 여러 가지 느낀점과 함께 장애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영화제라기 보단 형식에 가까운 소수의 영화축제란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여러 상영관을 돌며 영화 관람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편의시설들을 접하면서 아직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나 인식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다. 최근 지어진 영화관들은 화장실이며, 여러 편의시설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이었으나 좌석배치나 매표소 이용 등은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 휠체어 장애인들도 편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좌석배치에 좀 더 배려를 해주셨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조건 휠체어석은 앞자리가 고정석이 되어있어서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목에 통증을 느껴야하고, 거의 모든 매표소가 휠체어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데스크가 없어 불편을 겪어야했다. 국제영화제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되어 있어 그나마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지는 않았지만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 있어 조금 망설이는 듯한 태도 등은 조금 씁쓸함을 남겼다.



(수영만 요트장 야외상영장 전경 - 개막식)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야외상영관은 정말 축제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말 그대로 야외상영관인 만큼 시원한 바람과 함께 여러 가지 볼거리 먹을거리들로 축제의 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장애인들과 함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곳이었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고 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하여 사용하기 불편하였고,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화장실은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개막작과 폐막작은 대부분 야외상영관에서 상영하는 만큼 장애인들은 개·폐막작은 참여해야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츰차츰 개선해나갈 것이란 희망에 내년을 기약하며, 제15회 국제영화제는 장애인들도 축제의 장에 마음껏 동참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PIFF 장애인 편의제공 평가지표

1. 부산국제영화제(PIFF) 상영관 편의시설 조사표

1. 조사자

극장명		상영관명	
조사일시	2009년 월 일 시 분	조사자	

2. 편의시설 체크리스트

시설	항목	예	아니오	기타	
주출입구 접근로	1-1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이 1.2m 이상입니까?			
	1-2	보도 또는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준에는 연석·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1-3	보도 또는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되어 있습니까?			
	1-4	보도 또는 접근로에 보행장애물이 있습니까?			
	1-5	가로수는 지면에서 2.1m까지 가지치기를 하였습니까?			가로수가 있을 경우에만 표기할 것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2-1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3cm이하입니까?			
	2-2	주출입구의 높이차이가 3cm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였습니까?			
출입구 (문)	3-1	출입구(문)은 통과 유효폭이 0.8m이상입니까?			
	3-2	출입구(문)은 전면 유효거리는 1.2m이상입니까?			
	3-3	출입구의 바닥면에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있습니까?			
	3-4	회전문이 있을 경우 다른 형태의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3-5	여닫이문의 도어체크가 있을 경우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입니까?			
	3-6	출입문의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사이에 있습니까?			
	3-7	건축물 주출입구의 30cm 전면에는 점형블럭이나 다른 바닥재의 질감을 사용했습니까?			

시설	항 목	예	아니오	기 타	
복도	4-1	복도의 유효폭은 1.2m이상입니까?			
	4-2	바닥표면에는 장애인이 미끄러 넘어지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까?			
점자블럭	5-1	주출입구에 접근로에 점형블럭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5-2	감지형 점형블럭과 유도형 선형블럭이 알맞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점형블럭-36개의 원형도출점이 있음 ▶선형블럭-4개의 타원형 도출점이 있음			
	5-3	점자블럭의 색상이 주변의 색상과 구분이 됩니까?			
계단	6-1	계단의 유효폭은 1.2m이상입니까? 참의 유효폭이 1.2m이상입니까? ▶‘참’이란 계단이 꺾이는 구역의 면적)			
	6-2	계단에는 철편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철편의 높이는 18cm이하입니까? ▶한 계단의 높이			
	6-3	디딤판의 너비는 28cm이상입니까?			
	6-4	계단 측면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6-5	계단의 손잡이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이 있습니까?			
	6-6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 30cm 전면에는 점형블럭 설치 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고 있습니까?			
	6-7	계단의 수는 몇 개입니까?			
경사로	7-1	경사로의 유효폭은 0.9~1.2m 사이입니까?			
	7-2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이상의 활동공간이 있습니까? ▶ 시작·끝·참이 모두 기준에 만족할 경우에 만 “예”에 표기			
	7-3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입니까?			
	7-4	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일 경우 또는 경 사로의 높이가 0.15m이상일 경우 양측면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7-5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30 cm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였습니까?			
	7-6	손잡이의 높이는 경사로 바닥면으로부터 0.8 ~ 0.9m이내입니까?			
	7-7	손잡이의 양쪽부분 및 굴절부분에 점자표지 판이 부착되어 있습니까?			
	7-8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입니까?			
	7-9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평탄합니까?			

시설	항 목	예	아니오	기 타	
휠체어 리프트	8-1	계단 위 또는 아래에 각각 1개의 1.4m X 1.4m이상의 승강장이 있습니까? ▶ 승강장이란 탑승자 스스로가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갖춘 장소			
	8-2	승강장에는 시설관리자를 호출할 수 있는 벨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8-3	휠체어리프트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까?			
	8-4	휠체어리프트의 열쇠는 항상 사용가능합니까?			
	8-5	휠체어리프트는 고정형입니까? 수직형입니까? ▶ 고정형이란 리프트가 계단을 따라 대각선 모양으로 이동하는 형태 (예-지하철역에 설치된 리프트) ▶ 수직형이란 지면에서 위아래로 수직이동하는 형태			고정형() 수직형()
승 강 기	9-1	승강기는 전층운행하고 있습니까?			
	9-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m*1.4m이상의 활동공간이 있습니까?			
	9-3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80cm이상입니까?			
	9-4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1.2m사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9-5	조작반, 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까?			
	9-6	승강기 내부에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9-7	승강기의 각 층의 호출버튼의 30cm전면에는 점형블럭이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질감의 바닥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유도 및 안내설비	10-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이 주요시설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장소:
경보 및 피난설비	11-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 형태의 비상경보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설	항 목		예	아니오	기 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12-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습니까?			
	1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로 가는 통로의 높이차이가 있습니까?			
	12-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폭이 3.3m이상입니까?			
	12-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길이는 5m이상입니까?			
	12-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12-6	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였습니까?			
화장실 외부	13-1	화장실의 주출입구에 턱이나 높이차이가 있습니까?			
	13-2	주출입구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13-3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 따로 있습니까? 남녀공용으로 1개만 있습니까?			남녀따로() 남녀공통()
	13-4	화장실의 30cm전면에는 점형블럭이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질감의 바닥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13-5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 청각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	13-6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 면적이 폭 1m 이상, 깊이 1.8m이상 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까?			
	13-7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유효폭이 75cm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또는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활동공간을 1.4m*1.4m이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좌측() 우측() 전면()
	13-8	대변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80cm이상입니까?			
	13-9	대변기는 양변기(좌변기)입니까?			
	13-10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그리고 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소변기	13-11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그리고 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세면대	13-12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5cm 이하, 하단높이는 65cm이상입니까?			
	13-13	세면대의 밑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설	항 목		예	아니오	기 타
관람석	14-1	관람석까지 가는 통로에 턱이나 계단이 있습니까?			계단(턱) 개 총 cm
	14-2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14-3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14-4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m이상, 길이 1.3m이상입니까?			폭: cm 넓이: cm
	14-5	난청자를 위한 자기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장치명: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15-1	매표소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로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이 있습니까?			
	15-2	매표소의 높이는 1.1m이하입니까?			높이: m
	15-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럭이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질감의 바닥재를 설치하였습니까?			
	15-4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상품출구의 높이는 0.4~1.2m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15-5	음료대 분출구의 높이는 0.7~0.8m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2. 부산국제영화제(PIFF) 영화관람 만족도 조사설문지

아래의 항목을 설문작성자의 관점에서 체크하여 주십시오.

1. 작성자의 나이와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남 · 여)

2. 장애가 있으십니까? ①예 ___ 아니오 ___
있으시다면 장애유형과 등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급)

3. 보장구를 사용하십니까? ①예 ___ 아니오 ___
보장구를 사용하신다면 어떤 보장구를 사용하십니까?
①수동휠체어 ___ ②전동휠체어 ___ ③목발 ___ ④지팡이 ___ ⑤보청기 ___
⑥기타 ___
'기타'라고 답변 하신 분은 보장구를 사용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4. PIFF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셨습니까? ①예 ___ 아니오 ___
이용해보셨다면 홈페이지의 이용은 편리하십니까?
①매우 불편함 ___ ②불편함 ___ ③보통 ___ ④편리함 ___ ⑤매우 편리함 ___
'매우불편함'과 '불편함'을 선택하신 분은 구체적으로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5. 어느 극장 상영관을 이용하셨습니다는가? (영화관 관)

6.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상영관에 오셨습니까?
①PIFF순환버스 ___ ②두리발택시 ___ ③지하철 ___ ④일반버스 ___
⑤일반택시 ___ ⑥자가차량 ___ ⑦기타 ___
'기타'라고 답변 하신 분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7. 극장에 도착할 때 까지 이용하셨던 교통수단은 편리하십니까?

- ①매우 불편함___ ②불편함___ ③보통___ ④편리함___ ⑤매우 편리함___

‘매우불편함’과 ‘불편함’을 선택하신 분은 구체적으로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8. 현장에 도착해서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①예___ 아니오___

하셨다면 어떤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9. 현장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나 극장직원을 찾는 것은 어떠했습니까?

- ①매우 어려움___ ②어려움___ ③보통___ ④쉬움___ ⑤매우 쉬움___

10. 상영관에는 자원봉사자나 극장직원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부적절___ ②부적절___ ③보통___ ④적절___ ⑤매우 적절___

11. 자원봉사자나 극장직원에게 안내 및 이동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응대 형태는 어떠했습니까?

- ①매우 소극적___ ②소극적___ ③보통___ ④적극적___ ⑤매우 적극적___

12. 안내 및 이동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실제 도움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고 느끼셨습니까?

- ①매우 오래___ ②오래___ ③보통___ ④짧았다___ ⑤매우 짧았다___

13. 안내 및 이동 등의 도움을 주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불친절___ ②불친절___ ③보통___ ④친절___ ⑤매우 친절___

14. 안내 및 도움을 받는 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불편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예___ ②아니오___

‘예’라고 답변 하신 분은 어떤 부당한 행위를 경험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15. 장애인 좌석에서 영화를 관람하셨습니다가?

①예___ ②아니오___

만약 장애인좌석에서 영화를 관람하셨다면, 장애인 좌석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편리했습니다가?

①매우 불편함___ ②불편함___ ③보통___ ④편리함___ ⑤매우 편리함___

16. 한국 영화의 자막 혹은 화면해설 장치 등 관람에 필요한 콘텐츠가 갖추어져 있었습니까?<신규>

①예___ ②아니오___

17. 극장의 시설은 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하기에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불편함___ ②불편함___ ③보통___ ④편리함___ ⑤매우 편리함___

불편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18. 화장실 이용은 편리하셨습니다가?

①매우 불편함___ ②불편함___ ③보통___ ④편리함___ ⑤매우 편리함___

19.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셨다면 어떠한 부분이 불편하셨는지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예: 세정장치, 문잠금...)

21. 방문하신 영화관에서 가장 고쳐졌으면 하는 점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2. 모니터링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셨습니까? 있으시다면 간단히 적어주세요.

23. 이번에 방문한 상영관을 다시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전혀 없다___ ②없다___ ③보통___ ④있다___ ⑤꼭 이용하겠다___

24. 이번 14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장애인이 참여하기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좋음___ ②좋음___ ③보통___ ④나쁨___ ⑤매우 나쁨___

25. 부산국제영화제 관련하여 건의사항이나 소감을 적어주세요.

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PIFF 조직위원회, 지자체 질의 및 답변내용

1. 부산국제영화제(PIFF)관련 질의 내용

1. 업무 협조 요청 및 자료 요청 (2009년 9월 26일 발송)

가. 명 칭 : 14회 부산국제영화제 장애인참여 환경에 관한 모니터링

나. 기 간 : 2009년 09월 ~ 10월 (2개월간)

다. 모니터링요원 : 중증장애인 20명

라. 주 최 : (사)부산장애인인권포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마. 후 원 : 보건복지가족부

바. 향후계획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 09월 14, 21일 : 발대식 및 모니터요원 교육
- 2) 10월 08일 ~ 10월 16일 : 모니터링 실시
- 3) 10월 27일 : 모니터링 결과 자료집 발간
- 4) 10월 29일 : 모니터링 보고대회 진행 및 토론회

사. 협조사항

1) 입장권

- 가) 개막식, 폐막식 입장권 : 각 4매(편의시설 및 진행)
- 나) 상영관 당 각 4매 : 총 34개관 136매(편의시설 조사)
- 다) 영화제 관련 모든 웹 URL 개수와 주소 부문

연번	홈페이지이름	url 주소	비고
1			
2			
3			
4			
5			
6			

라) 영화제관련 공식 인쇄물 부문

연번	구분	개수	점자 출력물 개수	보이스 아이 (바코드) 개수	비고

(가) 인쇄물

- 각종 인쇄물에 보이콧바코드 삽입할 계획을 세웠었는지?
- 이번회에 그러한 것이 삽입 되지 못한 이유는?
- 또 앞으로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책자를 별도로 배포하거나 혹은 보이콧바코드 삽입할 계획은 있는지?

마) 국외영화 부문

총 편수	
우리말	
더빙 편 수	

바) 국내영화 부문

총 편수	
우리말	
자막 편 수	

(가) 시각장애인 영화관람

- 이번 1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화면해설 영화상영을 위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으며, 없다면 왜 하지 못했는지?
- '부산 센텀 CGV'에는 상영가능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안됐는지?
- 앞으로 화면해설 영화상영을 할 계획은 있는지?

사) 진행요원(자원봉사자)교육 부문

교육내용 교육프로그램	교육 장소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 강사	교육 이수자(명)
계		총 일	총 시간		총 명

아) 부대행사 부문

총 횟수	회
수화통역 횟수	회

자) 저상버스 도입여부 : ()

노선구간()

2.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답변내용 (2009년 11월 02일 이메일 수신)

사. 협조사항

1) 입장권

- 가) 개막식, 폐막식 입장권 : 일부 제공 가능
 나) 상영관 당 각 4매 : 일부 제공 가능
 다) 영화제 관련 모든 웹 URL 개수와 주소 부문

연번	홈페이지이름	url 주소	비고
1	PIFF 공식 웹 사이트	http://www.piff.org/	
2	PIFF 온라인 예매	http://www.piff.kr/	
3	PIFF 자원봉사자 커뮤니티	http://volunteer.piff.org/	
4	시네마테크 부산	http://cinema.piff.org/	
5	아시아 영화 아카데미	http://afa.piff.org/	

라) 영화제관련 공식 인쇄물 부문

연번	구분	개수	점자 출력물 개수	보이스 아이 (바코드) 개수	비고
1	리플렛	2	-	-	
2	안내책자	15	1	-	7곳
3	논문및 연구자료	현재 확인불가	-	-	영화제 종료 후 확인 가능
4	기타인쇄물	10			

(가) 인쇄물

- 각종 인쇄물에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삽입할 계획을 세웠었는지?
(답변 : 티켓카탈로그에 삽입할 계획이었음)
- 이번 회에 그러한 것이 삽입 되지 못한 이유는?
(답변 :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출판 직전에 무산됨)
- 또 앞으로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책자를 별도로 배포하거나 혹은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삽입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책자는 안내데스크 총 8군데에 배포 후 비치함. 보이스아이 바코드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재검토하여 내년부터는 삽입할 계획)

마) 국외영화 부문

총 편수	282편
우리말 더빙 편 수	- 편

바) 국내영화 부문

총 편수	73편
우리말 자막 편 수	6편

(가) 시각장애인 영화관람

(답변)

2회 상영 실시

1회 : 10월 11일 / 거북이 달린다 / CGV1관

2회 : 10월 13일 / 특별시 사람들 / 씨네 드 셰프

- 이번 1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화면해설 영화상영을 위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으며, 없다면 왜 하지 못했는지? (답변 : 無)
- '부산 센텀 CGV'에는 상영가능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안됐는지? (답변 : 無)
- 앞으로 화면해설 영화상영을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 無)

사) 진행요원(자원봉사자)교육 부문

교육내용 교육프로그램	교육 장소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 강사	교육 이수자(명)
장애인 인권 교육 및 응대 요령 (ex.시각장애우/휠 체어 탑승 장애인 응대)	부산은행 연수원	8월26일	2시간	금정장애 인자립생 활센터	70명
	부산은행 연수원	8월27일	2시간		70명
	시청자미디 어센터	9월19일	2시간		30명
	요트경기장 내 계측실	9월19일	2시간	이 명 회 팀장	50명
	국제영화제 회의실	9월19일	2시간		15명
	시네마테크 시사실	9월28일	2시간		135명
계		총6일	총12시간		총370명

아) 부대행사 부문

총 횟수	4 회
수화통역 횟수	4 회

자) 저상버스 도입여부 : (답변 : 도입하지 않음)

노선구간 : (답변 : 없음)

2.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 질의 내용

1. 업무 협조 요청 및 자료 요청 (2009년 10월 8일 발송)



The human rights forum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Busan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인권포럼

수 신 수신처 참조 (문화·체육시설 담당자)

참 조

제 목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각 구별 체육, 문화시설 현황 및 향후 개선계획」 자료요청

1. 귀 지자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단체는 장애인의 인권신장을 위한 관련정책을 개발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모니터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3. 2008년 4월11일부터 시행중인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문화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오는 2010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 예술사업자의 단계적으로 적용 하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4. 하지만, 편의시설 설치가 누락되거나 효용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형식적인 설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제도의 근본 취지, 즉 접근권 보장을 이루지 못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시설이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접근권이란 곧 생존권이며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장애인당사자든 아니면 편의시설 설치의 문제든, 시혜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거나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법규준수에만 머무르지 말고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이며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 할 것입니다.
5. 이에 준하여 편의시설 개선과 올바른 설치를 위해서 장애인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편의시설 개선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오니 각 기초단체에 등록된 체육, 문화시설(사설포함) 현황자료 및 향후 개선계획 자료를 요청하오니 10월15일까지 답신 부탁드립니다.

붙임 : 체육, 문화시설 현황자료 점검목록 1부. 끝.

(사)부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수신처 :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 문화체육시설 담당자

담당자 : 전웅길 사무국장 : 손원진 대표 : 김호상

협조자

시행 : 부산포럼2009-20 (2009. 10. 08) 접수

우 609-390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1동 230-15 1층

전화 051)582-7116 전송 582-3234 ableforum.com / gj-il2008@hanmail.net

[붙임]

1. 체육, 문화시설 현황자료 점검목록

연번	구명	동명	시설명	진입로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 화장실		건물 내 점자 블록 설치		장애인 관람석		대표소 높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단위(cm) 표기

2. 각 시설물 개선계획(자유형식)

2.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 답변내용

가. 답신사항

- 1) 연제구청 :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신. / 2009. 10. 9
- 2) 부산광역시, 기타 구.군 : 답신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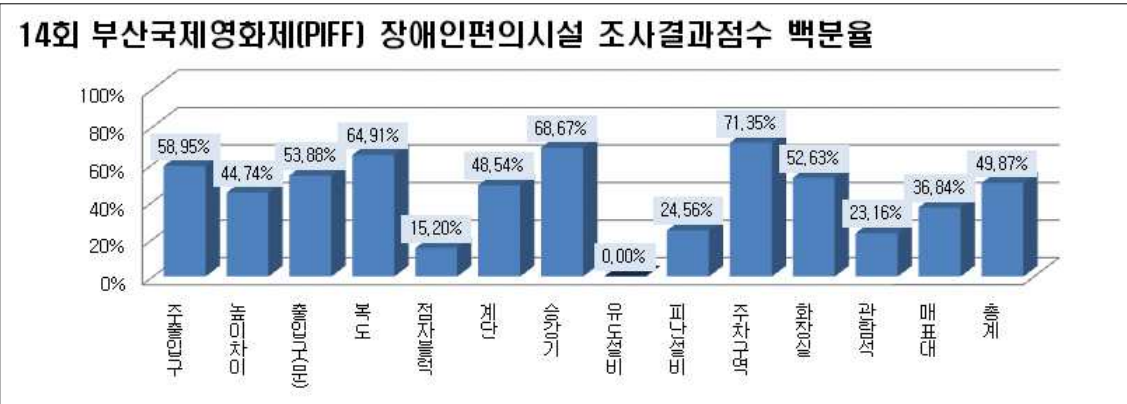
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모니터링 결과 통계자료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

1. 편의시설조사 결과 (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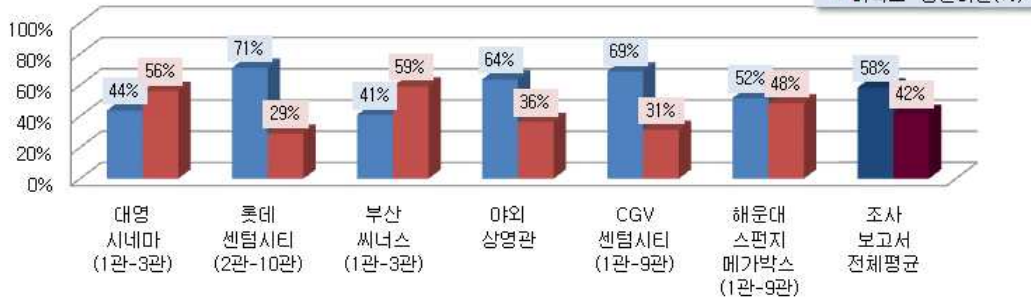
번호	항목	질문수	예	아니오	응답수	응답율	예 (%)	아니오 (%)	득점비율 (%)
1	주출입구	5	168	82	250	87.72%	67.20%	32.80%	58.95%
2	높이차이	2	51	28	79	69.30%	64.56%	35.44%	44.74%
3	출입구(문)	7	215	89	304	76.19%	70.72%	29.28%	53.88%
4	복도	2	74	38	112	98.25%	66.07%	33.93%	64.91%
5	점자블럭	3	26	91	117	68.42%	22.22%	77.78%	15.20%
6	계단	9	249	157	406	79.14%	61.33%	38.67%	48.54%
9	승강기	7	274	78	352	88.22%	77.84%	22.16%	68.67%
10	유도설비	1	0	46	46	80.70%	0.00%	100.00%	0.00%
11	피난설비	1	14	31	45	78.95%	31.11%	68.89%	24.56%
12	주차구역	6	244	67	311	90.94%	78.46%	21.54%	71.35%
13	화장실	13	390	244	634	85.56%	61.51%	38.49%	52.63%
14	관람석	5	66	168	234	82.11%	28.21%	71.79%	23.16%
15	매표대	5	105	115	220	77.19%	47.73%	52.27%	36.84%
총 계		66	1876	1234	3110	82.67%	60.32%	39.68%	4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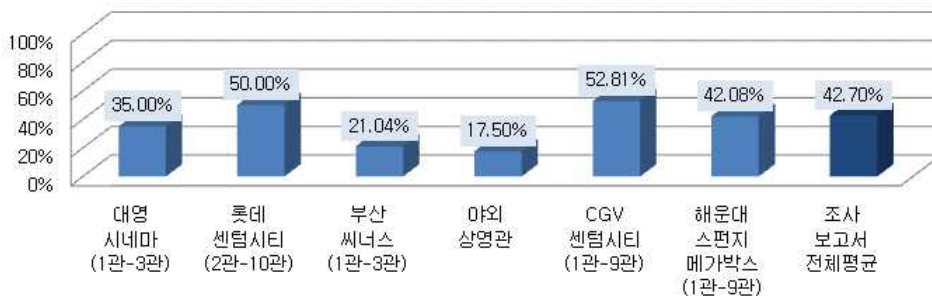
2. 편의시설조사 결과 (극장별)

번호	항목	보고서수	예	아니오	응답수	응답율	예	아니오	득점비율
					57		%	%	
1	대영시네마 (1관-3관)	6	168	216	384	80.00%	43.75%	56.25%	35.00%
2	롯데센텀시티 (2관-10관)	18	720	293	1013	70.35%	71.08%	28.92%	50.00%
3	부산씨너스 (1관-3관)	6	101	146	247	51.46%	40.89%	59.11%	21.04%
4	야외상영관	1	14	8	22	27.50%	63.64%	36.36%	17.50%
5	CGV센텀시티 (1관-9관)	8	338	154	492	76.88%	68.70%	31.30%	52.81%
6	해운대스핀지 메가박스 (1관-9관)	18	606	568	1174	81.53%	51.62%	48.38%	42.08%
조사보고서 전체평균		57	1947	1385	3332	73.07%	58.43%	41.57%	42.70%

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편의시설 상영극장별 현황



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편의시설 상영극장별 현황



3. 편의시설 조사결과 (문항별)

번호	시설	항목 번호	문항	예	아니 오	응답	응답율	예	아니오	득점 비율(%)
						71		%	%	
1	주 출입구 접근로	1-1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이 1.2m 이상입니까?	50	6	56	98.25%	89.29%	10.71%	87.72%
2		1-2	보도 또는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준에는 연석·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31	15	46	80.70%	67.39%	32.61%	54.39%
3		1-3	보도 또는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되어 있습니까?	42	14	56	98.25%	75.00%	25.00%	73.68%
4		1-4	보도 또는 접근로에 보행장애물이 있습니까?	11	45	56	98.25%	19.64%	80.36%	19.30%
5		1-5	가로수는 지면에서 2.1m까지 가지치기를 하였습니까?	34	2	36	63.16%	94.44%	5.56%	59.65%
6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2-1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3cm이하입니까?	40	15	55	96.49%	72.73%	27.27%	70.18%
7		2-2	주출입구의 높이차이가 3cm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였습니까?	11	13	24	42.11%	45.83%	54.17%	19.30%
8	출입구 (문)	3-1	출입구(문)은 통과 유효폭이 0.8m이상입니까?	54	2	56	98.25%	96.43%	3.57%	94.74%
9		3-2	출입구(문)은 전면 유효거리는 1.2m이상입니까?	53	3	56	98.25%	94.64%	5.36%	92.98%
10		3-3	출입구의 바닥면에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있습니까?	4	51	55	96.49%	7.27%	92.73%	7.02%
11		3-4	회전문이 있을 경우 다른 형태의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11	7	18	31.58%	61.11%	38.89%	19.30%
12		3-5	여닫이문의 도어체크가 있을 경우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입니까?	21	0	21	36.84%	100.00%	0.00%	36.84%
13		3-6	출입문의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사이인가?	46	1	47	82.46%	97.87%	2.13%	80.70%
14		3-7	건축물 주출입구의 30cm 전면에는 점형블럭이나 다른 바닥재의 질감을 사용했습니까?	26	25	51	89.47%	50.98%	49.02%	45.61%
15	복도	4-1	복도의 유효폭은 1.2m이상입니까?	52	4	56	98.25%	92.86%	7.14%	91.23%
16		4-2	바닥표면에는 장애인이 미끄러넘어지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까?	22	34	56	98.25%	39.29%	60.71%	38.60%

번호	시설	항목 번호	문 항	예	아 니 오	응답	응답율	예	아니오	특점 비율(%)
						71		%	%	
17	점자 블럭	5-1	주출입구에 접근로에 점형블럭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15	30	45	78.95%	33.33%	66.67%	26.32%
18		5-2	감지형 점형블럭과 유도형 선형블럭이 알맞게 설치돼 있나? ▶ 점형블럭-36개의 원형도출점이 있음 ▶ 선형블럭-4개의 타원형 도출점이 있음	1	37	38	66.67%	2.63%	97.37%	1.75%
19		5-3	점자블럭의 색상이 주변의 색상과 구분이 됩니까?	10	24	34	59.65%	29.41%	70.59%	17.54%
20	계단	6-1	계단의 유효폭은 1.2m이상입니까?	41	8	49	85.96%	83.67%	16.33%	71.93%
21			참의 유효폭이 1.2m이상인가? ▶ '참'이란 계단이 꺾이는 구역의 면적	39	7	46	80.70%	84.78%	15.22%	68.42%
22		6-2	계단에는 철편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17	26	43	75.44%	39.53%	60.47%	29.82%
23			철편의 높이는 18cm이하인가? ▶한 계단의 높이	22	12	34	59.65%	64.71%	35.29%	38.60%
24		6-3	디딤판의 너비는 28cm이상입니까?	43	6	49	85.96%	87.76%	12.24%	75.44%
25		6-4	계단 측면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38	10	48	84.21%	79.17%	20.83%	66.67%
26		6-5	계단의 손잡이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총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이 있습니까?	5	43	48	84.21%	10.42%	89.58%	8.77%
27		6-6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 30cm전면에는 점형블럭 설치 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고 있습니까?	4	43	47	82.46%	8.51%	91.49%	7.02%
28	6-7	계단의 수는 몇 개입니까?	40	2	42	73.68%	95.24%	4.76%	7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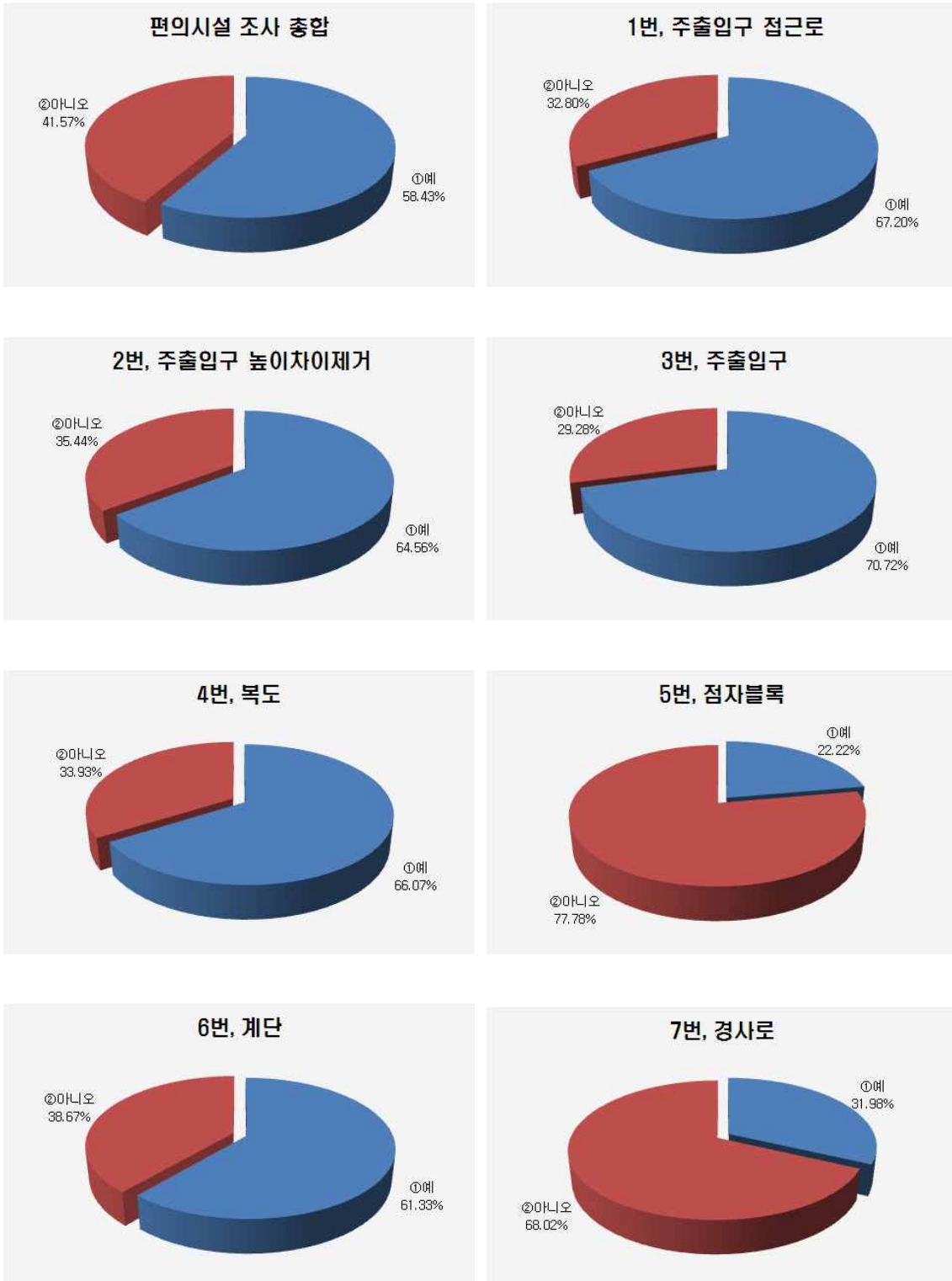
번호	시설	항목 번호	문 항	예	아 니 오	응답	응답율	예	아니오	득점 비율(%)
						71		%	%	
29	경사로	7-1	경사로의 유효폭은 0.9~1.2m 사이입니까?	15	11	26	45.61%	57.69%	42.31%	26.32%
30		7-2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이상의 활동공간이 있습니까? ▶ 시작·끝·참이 모두 기준에 만족할 경우에만 “예” 표기	9	14	23	40.35%	39.13%	60.87%	15.79%
31		7-3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입니까?	16	10	26	45.61%	61.54%	38.46%	28.07%
32		7-4	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일 경우 또는 경사로의 높이가 0.15m이상일 경우 양측면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2	23	25	43.86%	8.00%	92.00%	3.51%
33		7-5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30cm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였습니까?	1	25	26	45.61%	3.85%	96.15%	1.75%
34		7-6	손잡이의 높이는 경사로 바닥면으로부터 0.8~0.9m이내인가?	4	18	22	38.60%	18.18%	81.82%	7.02%
35		7-7	손잡이의 양쪽부분 및 굴절부분에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까?	0	22	22	38.60%	0.00%	100.00%	0.00%
36		7-8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입니까?	6	20	26	45.61%	23.08%	76.92%	10.53%
37		7-9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평탄합니까?	18	8	26	45.61%	69.23%	30.77%	31.58%
38	휠체어 리프트	8-1	계단 위 또는 아래에 각각 1개의 1.4m X 1.4m이상의 승강장이 있습니까? ▶ 승강장이란 탑승자 스스로가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치를 갖춘 장소	0	0	0	0.00%			0.00%
39		8-2	승강장에는 시설관리자를 호출할 수 있는 벨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0	0	0	0.00%			0.00%
40		8-3	휠체어리프트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까?	0	0	0	0.00%			0.00%
41		8-4	휠체어리프트의 열쇠는 항상 사용가능합니까?	0	0	0	0.00%			0.00%
42		8-5	휠체어리프트는 고정형입니까? 수직형입니까? ▶ 고정형이란 리프트가 계단을 따라 대각선 모양으로 이동하는 형태 (예-지하철역 설치 리프트) ▶ 수직형이란 지면에서 위아래로 수직이동하는 형태	0	0	0	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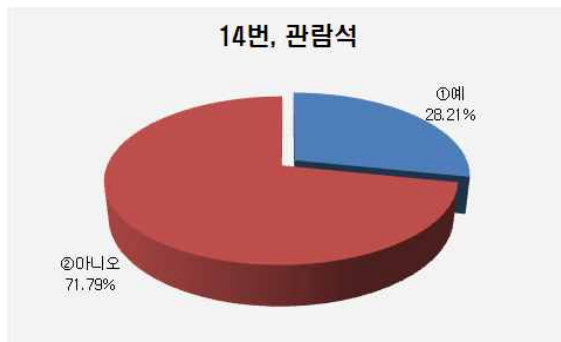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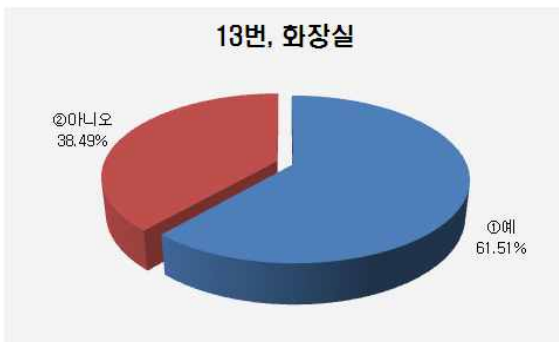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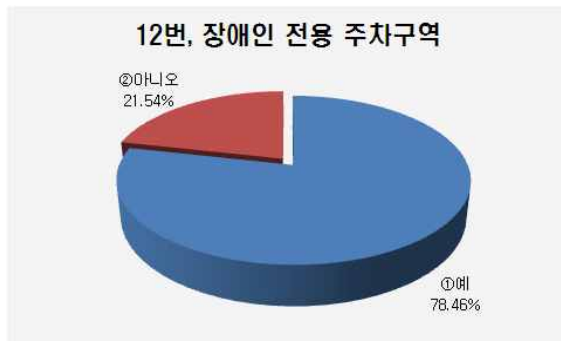
번호	시설	항목 번호	문 항	예	아 니 오	응답	응답율	예	아니오	득점 비율(%)
						71		%	%	
43	승강기	9-1	승강기는 전층 운행하고 있습니까?	49	2	51	89.47%	96.08%	3.92%	85.96%
44		9-2	승강기(엘리베이터)의 전면에는 1.4m*1.4m이상의 활동공간이 있습니까?	50	0	50	87.72%	100.00%	0.00%	87.72%
45		9-3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80cm 이상입니까?	46	4	50	87.72%	92.00%	8.00%	80.70%
46		9-4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1.2m사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33	17	50	87.72%	66.00%	34.00%	57.89%
47		9-5	조작반, 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까?	29	21	50	87.72%	58.00%	42.00%	50.88%
48		9-6	승강기 내부에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45	6	51	89.47%	88.24%	11.76%	78.95%
49		9-7	승강기의 각 층의 호출버튼의 30cm전면에는 점형블럭이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질감의 바닥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22	28	50	87.72%	44.00%	56.00%	38.60%
50	유도 및 안내 설비	10-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이 주요시설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0	46	46	80.70%	0.00%	100.00%	0.00%
51	경보 및 피난 설비	11-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 형태의 비상경보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까?	14	31	45	78.95%	31.11%	68.89%	24.56%
52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12-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습니까?	51	4	55	96.49%	92.73%	7.27%	89.47%
53		1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로 가는 통로의 높이차이가 있습니까?	42	10	52	91.23%	80.77%	19.23%	73.68%
54		12-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폭이 3.3m이상입니까?	33	16	49	85.96%	67.35%	32.65%	57.89%
55		12-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길이는 5m이상입니까?	32	17	49	85.96%	65.31%	34.69%	56.14%
56		12-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50	3	53	92.98%	94.34%	5.66%	87.72%
57		12-6	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였습니까?	36	17	53	92.98%	67.92%	32.08%	63.16%

번호	시설	항목 번호	문 항	예	아 니 오	응답	응답율	예	아니오	득점 비율(%)
						71		%	%	
58	화장실 외부	13-1	화장실의 주출입구에 턱이나 높이차이가 있습니까?	5	49	54	94.74%	9.26%	90.74%	8.77%
59		13-2	주출입구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 습니까?	5	23	28	49.12%	17.86%	82.14%	8.77%
60		13-3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 따로 있습니까? 남녀공용으로 1개만 있습니까?	35	7	42	73.68%	83.33%	16.67%	61.40%
61		13-4	화장실의 30cm전면에는 점형블 럭이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질감의 바닥재 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30	24	54	94.74%	55.56%	44.44%	52.63%
62		13-5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 청각장애인용	37	16	53	92.98%	69.81%	30.19%	64.91%
63		대 변 기	13-6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 면적이 폭 1m이상, 깊이 1.8m이상 되도록 설치되어 있 습니까?	20	30	50	87.72%	40.00%	60.00%
64	13-7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유효폭이 75cm이상의 활동공간 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또는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1.4m이상의 활 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29	22	51	89.47%	56.86%	43.14%	50.88%
65	13-8		대변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 은 80cm이상입니까?	33	21	54	94.74%	61.11%	38.89%	57.89%
66	대 변 기	13-9	대변기는 양변기(좌식변기) 입 니까?	47	7	54	94.74%	87.04%	12.96%	82.46%
67		13-10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그리 고 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 습니까?	41	13	54	94.74%	75.93%	24.07%	71.93%
68	소 변 기	13-11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그리 고 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 습니까?	20	12	32	56.14%	62.50%	37.50%	35.09%
69	세 면 대	13-12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 으로부터 85cm이하, 하단높이는 65cm이상입니까?	43	11	54	94.74%	79.63%	20.37%	75.44%
70		13-13	세면대의 밑에는 무릎 및 휠체 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습니 까?	45	9	54	94.74%	83.33%	16.67%	7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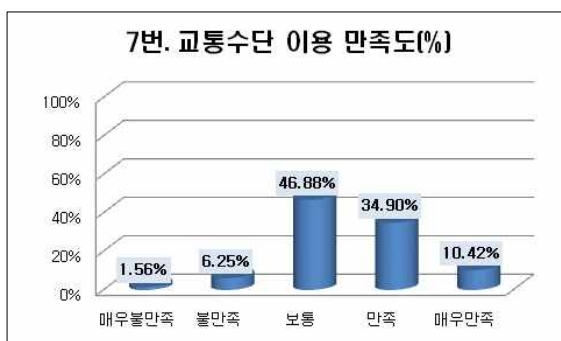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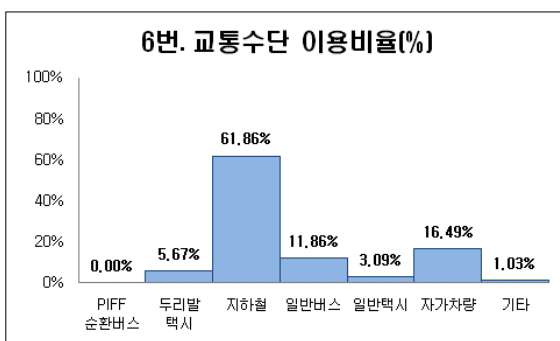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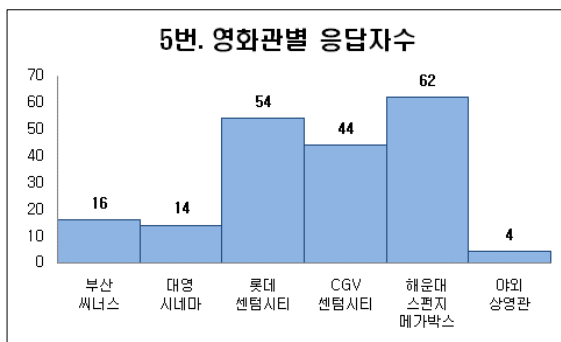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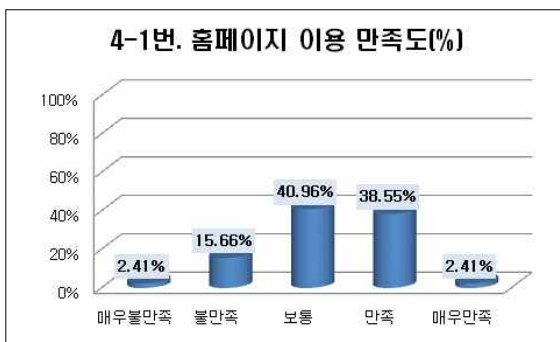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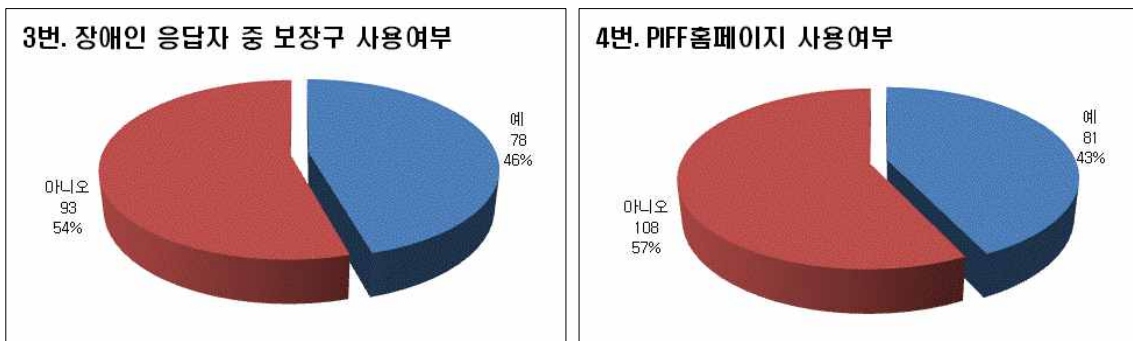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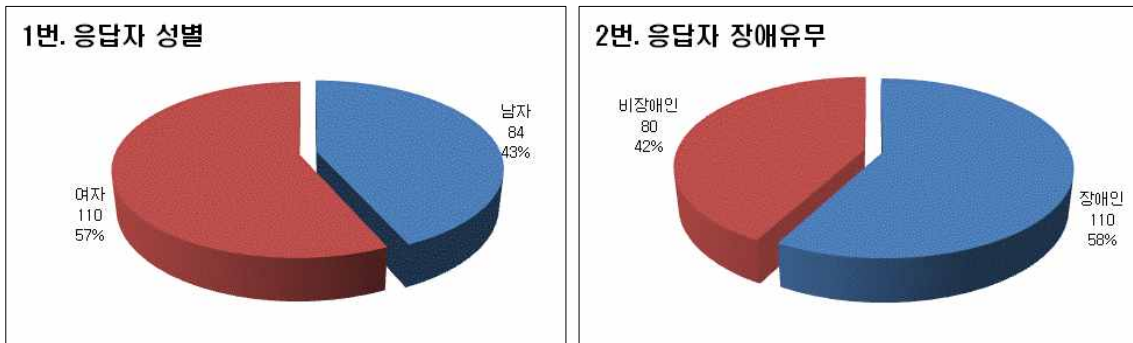
번호	시설	항목 번호	문 항	예	아 니 오	응답	응답율	예	아니오	득점 비율(%)
						71		%	%	
71	관람석	14-1	관람석까지 가는 통로에 턱이나 계단이 있습니까?	14	39	53	92.98%	26.42%	73.58%	24.56%
72		14-2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15	38	53	92.98%	28.30%	71.70%	26.32%
73		14-3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18	25	43	75.44%	41.86%	58.14%	31.58%
74		14-4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m이상, 깊이 1.3m이상입니까?	13	26	39	68.42%	33.33%	66.67%	22.81%
75		14-5	난청자를 위한 자기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6	40	46	80.70%	13.04%	86.96%	10.53%
76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15-1	매표소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로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이 있습니까?	51	3	54	94.74%	94.44%	5.56%	89.47%
77		15-2	매표소의 높이는 1.1m이하입니까?	36	16	52	91.23%	69.23%	30.77%	63.16%
78		15-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럭이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질감의 바닥재를 설치하였습니까?	2	45	47	82.46%	4.26%	95.74%	3.51%
79		15-4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상품출구의 높이는 0.4~1.2m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12	21	33	57.89%	36.36%	63.64%	21.05%
80		15-5	음료대 분출구의 높이는 0.7~0.8m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4	30	34	59.65%	11.76%	88.24%	7.02%
전 체				1947	1385	3332	73.07%	58.43%	41.57%	4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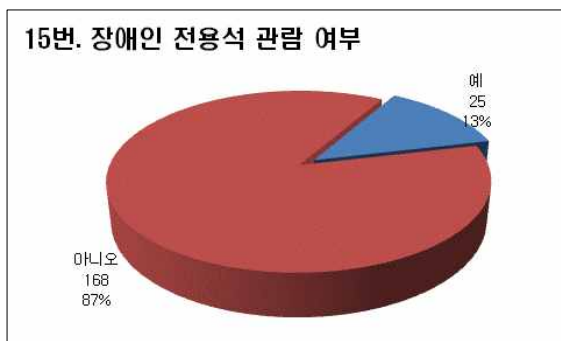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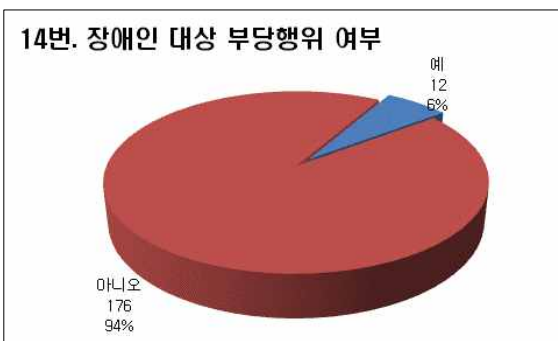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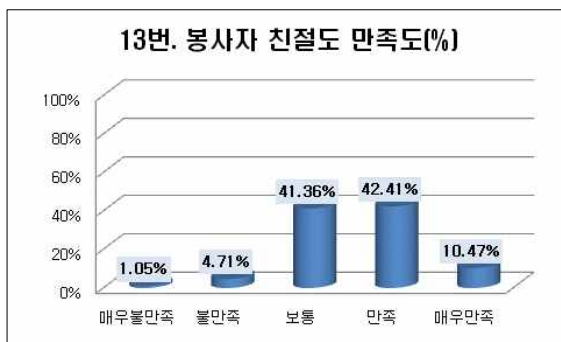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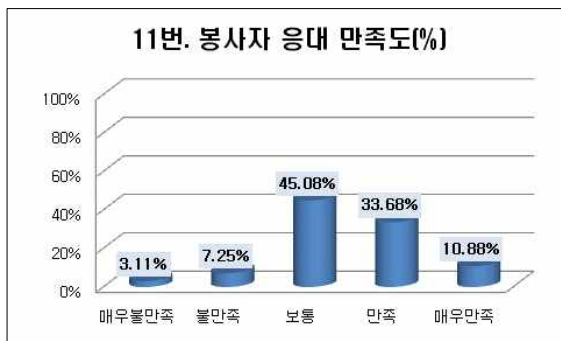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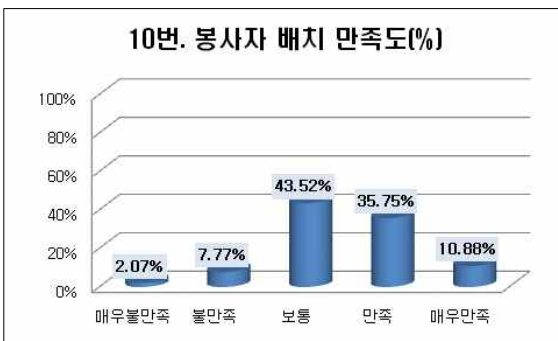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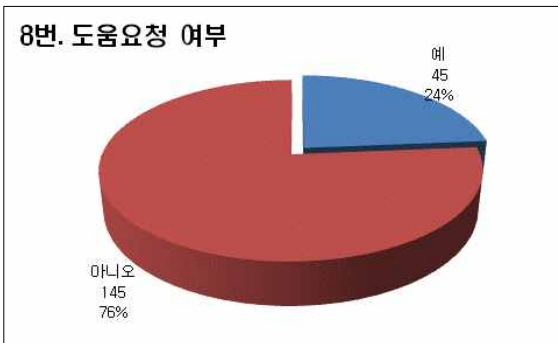
4. 편의시설 조사결과 (문항별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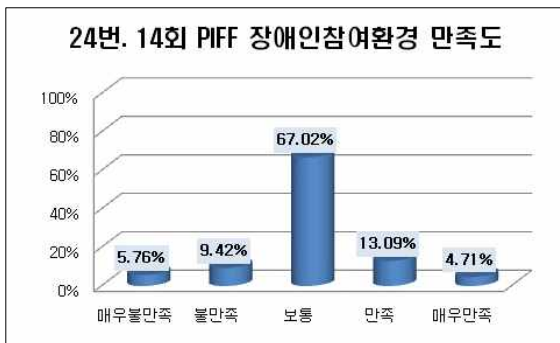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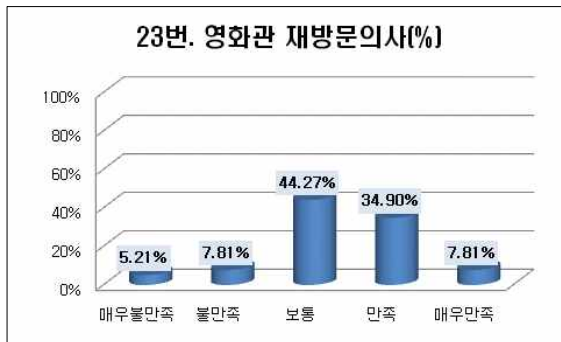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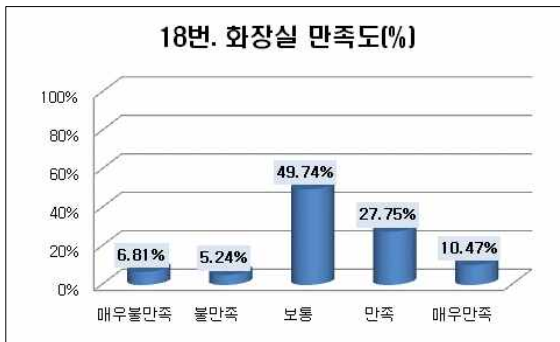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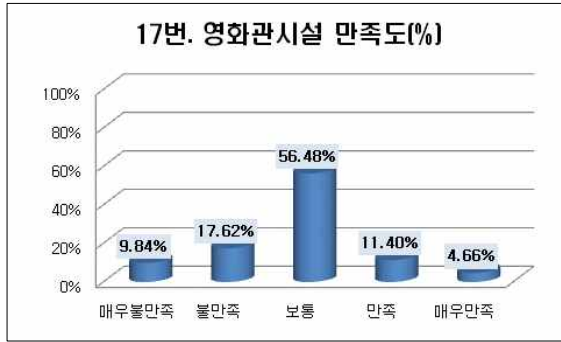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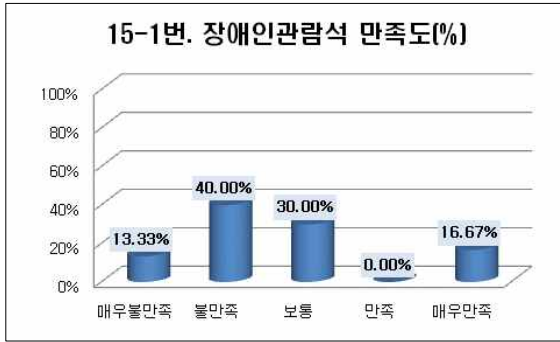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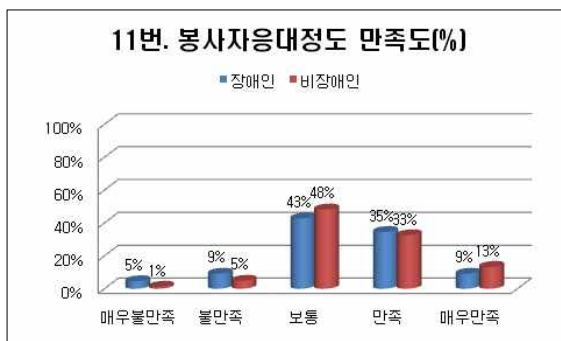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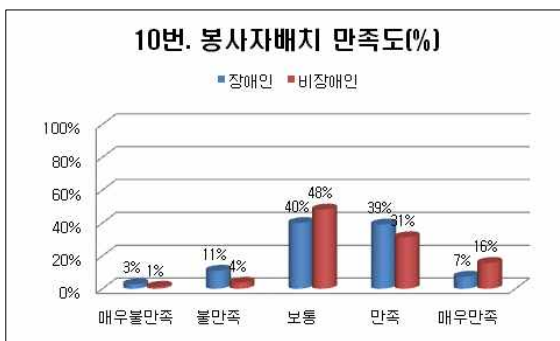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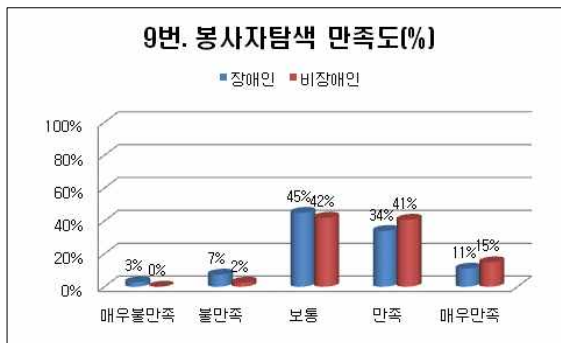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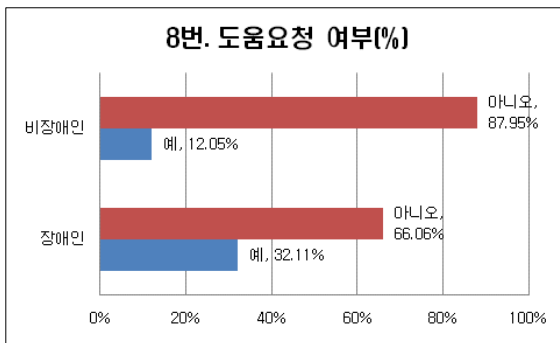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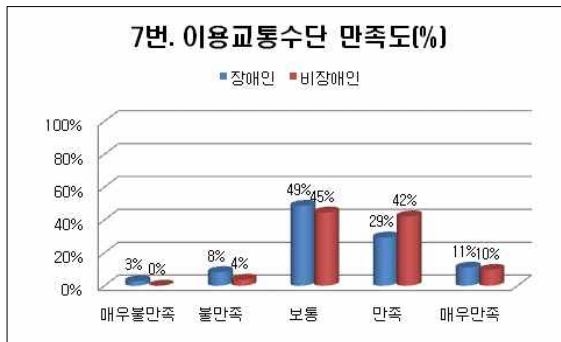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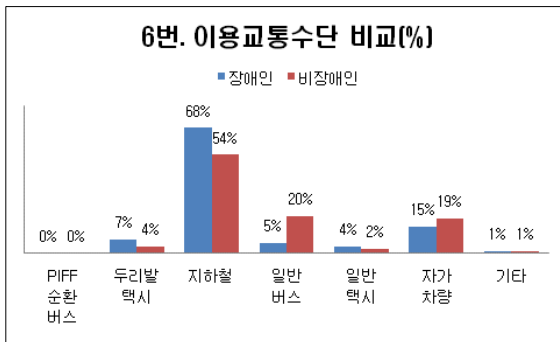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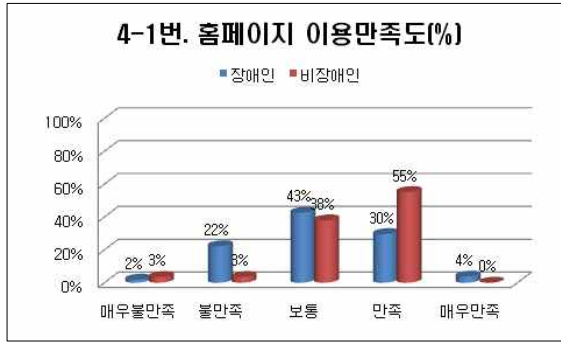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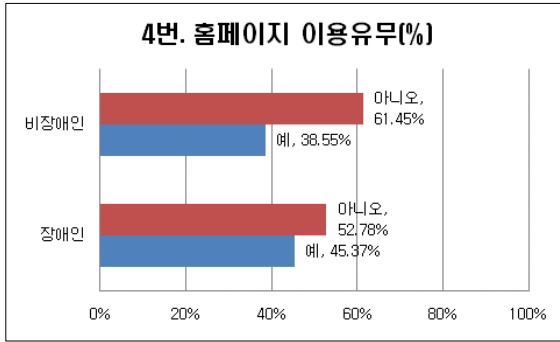
5. 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문항별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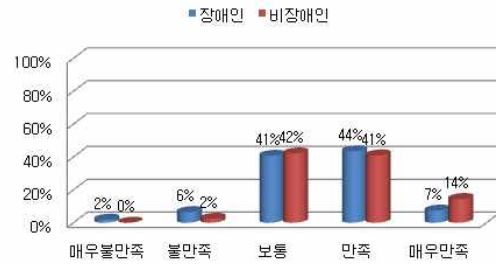
6. 모니터단 설문조사 장애인/비장애인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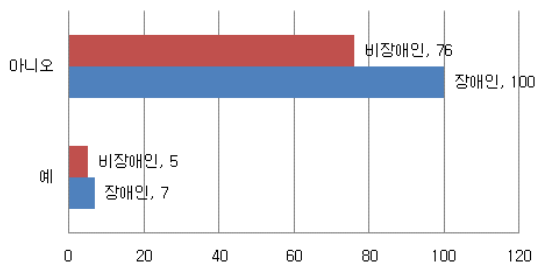
12번. 도움요청후 대기시간 만족도(%)



13번. 봉사자 친절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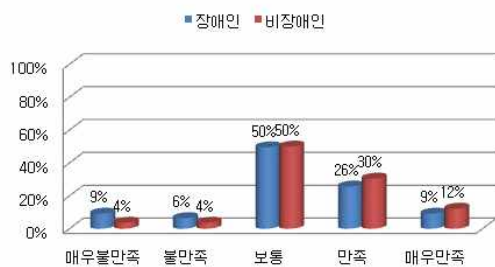
14번. 장애인대상 부당행위 여부(건)



17번. 영화관시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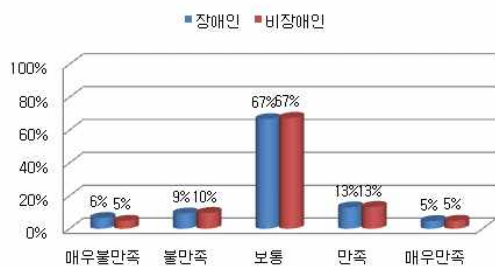
18번. 화장실 만족도(%)



23번. 영화관 재방문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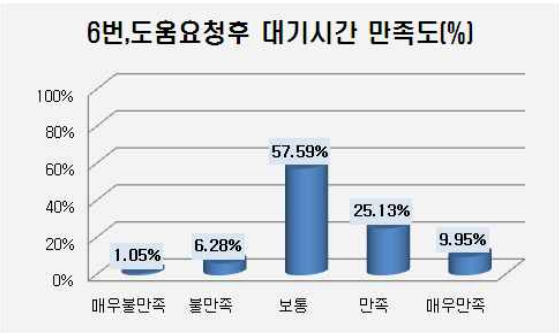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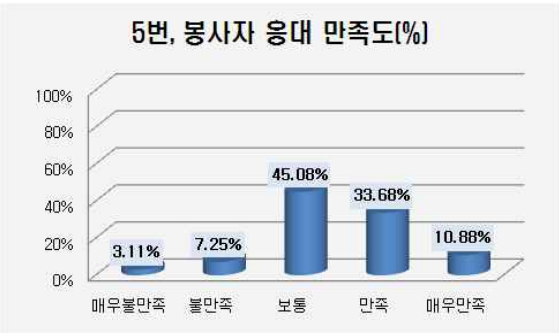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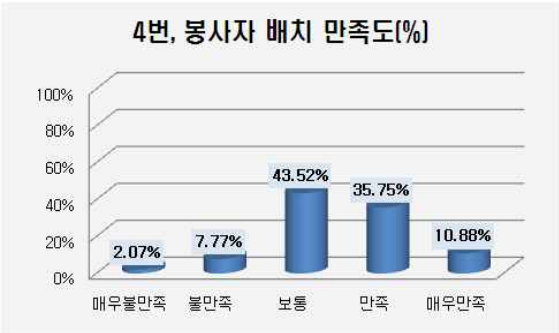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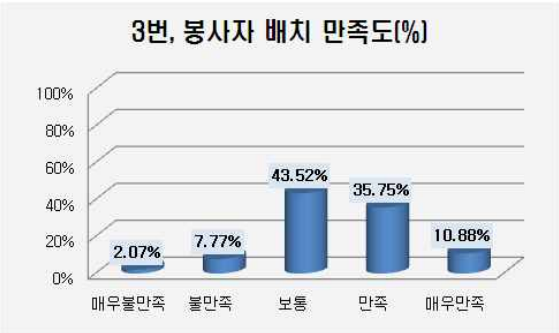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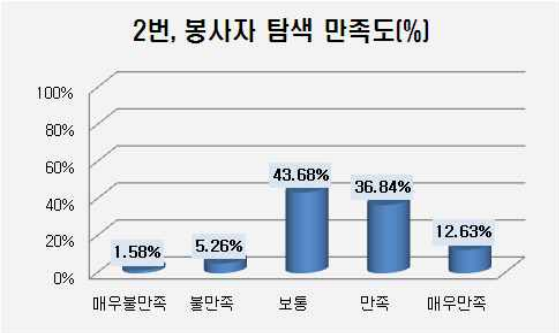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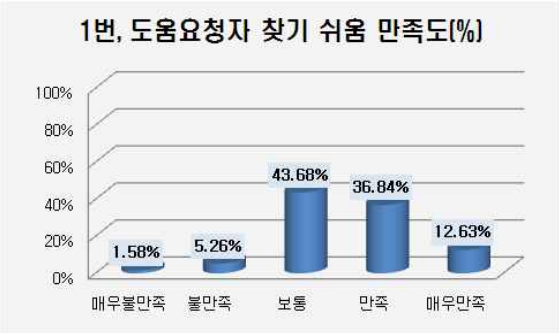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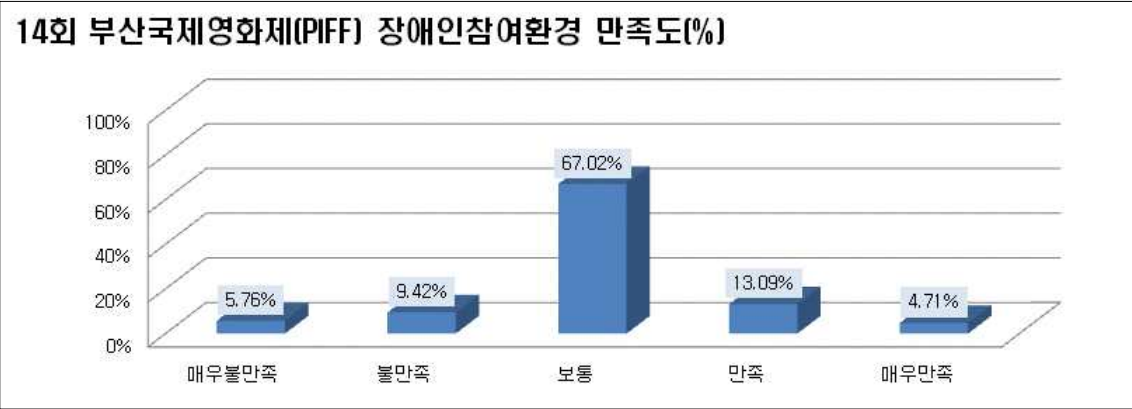


24번. 14회 PIFF 장애인참여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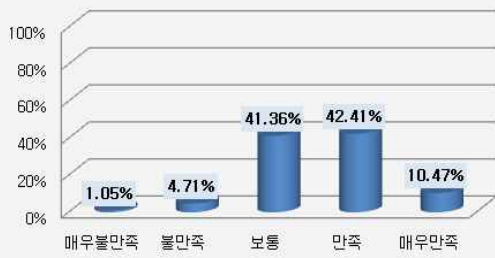


6. 모니터단 설문조사중 만족도조사 결과 (점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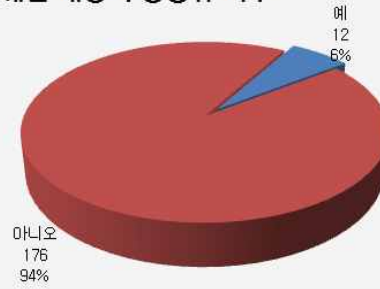
번호	조사 항목	구분 문항	항목					응답수	응답률
			①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매우 긍정적	110	
1	홈페이지 편리성	PIFF 홈페이지 이용이 편리하였습니까?	1	12	23	16	2	54	49.1%
2	교통수단의 편리성	극장 도착까지 이용하였던 교통수단은 편리하였습니까?	3	9	53	32	12	109	99.1%
3	도우미 찾기	현장에 도착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나 극장직원을 찾는 것은 어떠했습니까?	3	8	49	37	12	109	99.1%
4	도우미 배치	행사현장에 적절하게 자원봉사자나 극장직원이 잘 배치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	12	44	43	8	110	100%
5	도우미의 적극성	극장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응대하였습니까?	5	10	47	38	10	110	100%
6		안내 및 이동 등의 도움을 주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	11	58	29	8	108	98.2%
7	도우미의 친절도	도움을 주는 사람의 친절도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	7	44	47	8	108	98.2%
8	장애인 관람석	장애인 좌석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편리했습니까?(장애인 좌석에서 관람했을 경우에만 답변)	3	9	6	0	4	22	20%
9	장애인 영화관람 편의성	이번에 방문한 상영관은 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하기에 시설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	18	60	14	6	110	100%
10	편의시설의 편의성	화장실 이용은 편리하셨습니까?	10	7	54	28	10	109	99.1%
11	영화관 재방문 의사	이번에 방문한 상영관을 다시 방문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7	13	48	33	8	109	99.1%
12	영화제 평가	14회 국제영화제는 장애인이 참여하기 어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10	72	14	5	108	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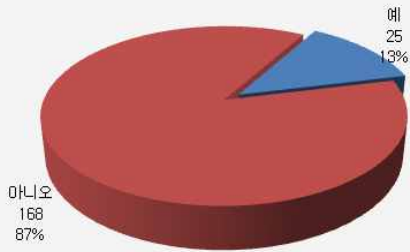
7번, 봉사자 친절도 만족도(%)



8번, 장애인 대상 부당행위 여부



9번, 장애인 전용석 관람 여부



10번, 장애인관람석 만족도(%)



11번, 영화관시설 만족도(%)



12번, 영화관 재방문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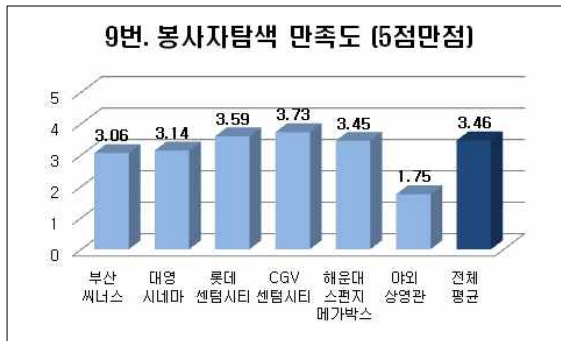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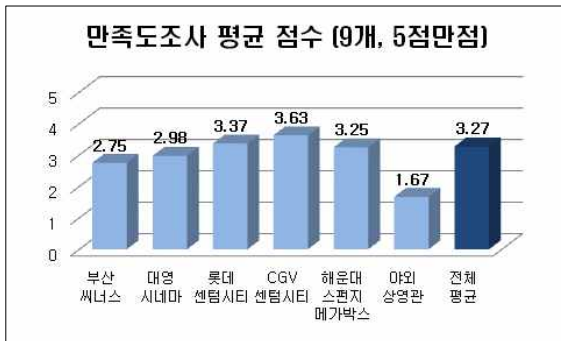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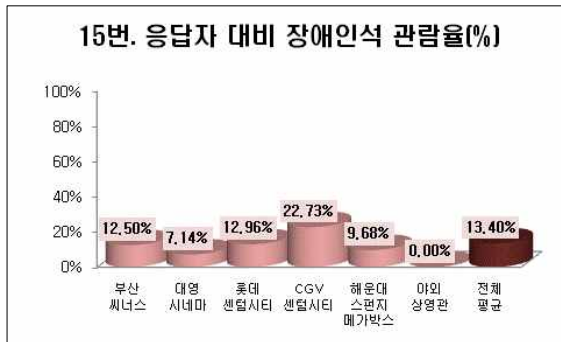


14회 PIFF 장애인참여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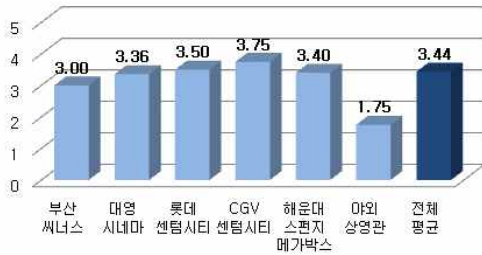


7. 모니터단 만족도조사 결과 (극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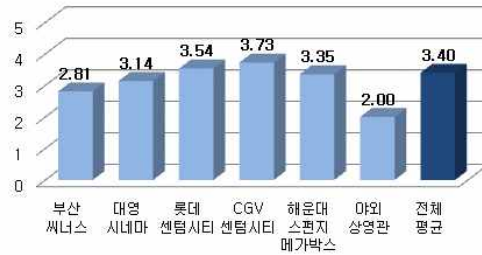
구분	응답항목	응답수	봉사자 탐색 만족도	봉사자 배치 만족도	응대정 도 만족도	대기시 간 만족도	친절도 만족도	극장시 설 만족도	화장실 만족도	재방문 의사 만족도	총평 만족도	합계
합계	부산씨너스	16	49	48	45	49	50	32	40	38	45	396
	대영시네마	14	44	47	44	46	47	32	36	39	40	375
	롯데센텀시티	54	194	189	191	179	187	155	190	188	163	1636
	CGV센텀시티	44	164	165	164	162	168	140	162	167	144	1436
	해운대스편지 메가박스	62	214	211	208	200	220	183	198	200	177	1811
	아외상영관	4	7	7	8	7	9	5	4	6	7	60
	전체 합계	194	672	667	660	643	681	547	630	638	576	5,714
평균	부산씨너스	16	3.06	3.00	2.81	3.06	3.13	2.00	2.50	2.38	2.81	2.75
	대영시네마	14	3.14	3.36	3.14	3.29	3.36	2.29	2.57	2.79	2.86	2.98
	롯데센텀시티	54	3.59	3.50	3.54	3.31	3.46	2.87	3.52	3.48	3.02	3.37
	CGV센텀시티	44	3.73	3.75	3.73	3.68	3.82	3.18	3.68	3.80	3.27	3.63
	해운대스편지 메가박스	62	3.45	3.40	3.35	3.23	3.55	2.95	3.19	3.23	2.85	3.25
	아외상영관	4	1.75	1.75	2.00	1.75	2.25	1.25	1.00	1.50	1.75	1.67
	전체 평균	194	3.46	3.44	3.40	3.31	3.51	2.82	3.25	3.29	2.97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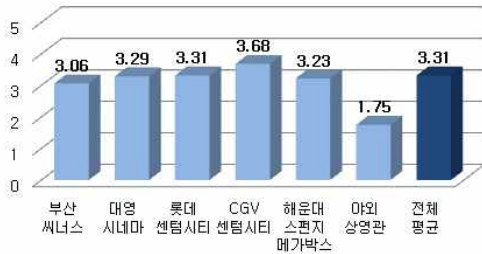
10번. 봉사자배치 만족도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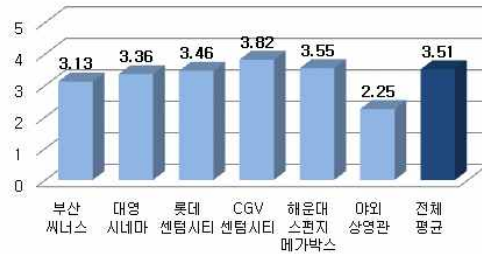
11번. 봉사자응대정도 만족도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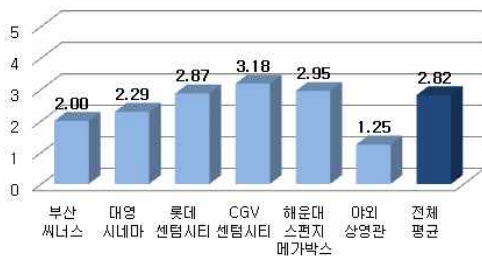
12번. 대기시간 만족도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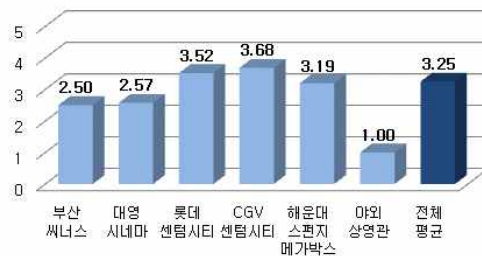
13번. 봉사자 친절도 만족도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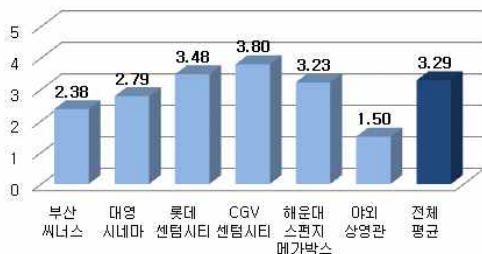
17번. 극장시설 만족도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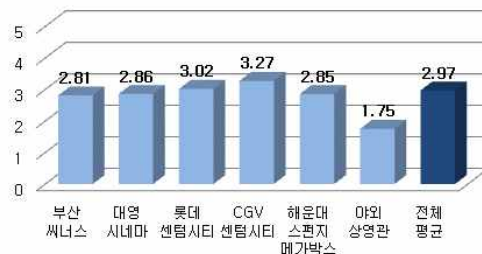
18번. 화장실 만족도 (5점만점)



23번. 재방문 의사 만족도 (5점만점)



24번. PIFF 장애인참여환경 만족도



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PIFF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단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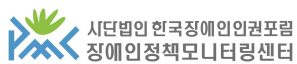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단 소개

1. 모니터단 명단

번호	업무구분	성명	장애유형	모니터링시 특이점	모니터활동내역	
1	단장	손원진	지체 2급	보행가능 자가차량	1개	전체사업진행/ 해운대 메가박스 1관
2	현장조사	곽봉금	뇌병변 3급	보행가능 대중교통이용	2개	롯데시네마 3관/ 해운대 메가박스 M관
3	현장조사	최용수	지체 3급	보행가능 대중교통이용	2개	센텀CGV 4관/ 부산극장 1관
4	현장조사	정연경	뇌병변 1급	수동휠체어 이용 이동시 도우미필요	2개	롯데시네마 8관/ 센텀CGV 6관
5	현장조사	한지아	청각 2급	보행가능 수화통역사필요	2개	대영시네마 3관/ 해운대 메가박스 3관
6	현장조사	금봉철	지체 1급	전동휠체어사용 지하철이용	2개	롯데시네마 2관/ 해운대 메가박스 10관
7	현장조사	전혜주	지체 1급	전동휠체어사용 지하철이용	2개	해운대 메가박스 9관/ 롯데시네마 4관
8	현장조사	이정호	뇌병변 1급	보행가능/상지장애 지하철이용	2개	센텀CGV 7관/ 해운대 메가박스 8관
9	현장조사	김 강	지체 3급	보행가능 대중교통이용	2개	센텀CGV 5관/ 롯데시네마7관
10	현장조사	김경민	뇌병변 2급	보행가능 대중교통이용	2개	롯데시네마 5관/ 센텀CGV 1관
11	현장조사	전웅길	뇌병변 5급	보행가능 대중교통이용	2개	야외극장/ 롯데시네마 6관
12	현장조사	정성규	뇌병변 2급	보행가능 대중교통이용	1개	롯데시네마 10관
13	현장조사	김미강	뇌병변 2급	보행가능 대중교통이용	1개	해운대 메가박스 6관
14	현장조사	손경연	지체 2급	보행가능 자가차량	1개	해운대 메가박스 2관
15	현장조사	서범주	지체 1급	전동휠체어사용 지하철이용	2개	롯데시네마 9관/ 센텀CGV 2관
16	현장조사	정승천	비장애인		2개	센텀 CGV S관/ 부산극장 2관
17	현장조사	손우영	비장애인		2개	부산극장 3관/ 대영시네마 3관
18	현장조사	강민아	비장애인		2개	해운대 메가박스 7관/ 센텀CGV 3관
19	현장조사	이이현	비장애인		1개	해운대 메가박스 4관

2. 편의시설 모니터링 수행 일정

번호	극장	상영관	날짜	모니터 시간	영화명	보고서 작성자	작성자 장애유형
1	대영씨네마	1	2009-10-14 (수)	19:00	난징!난징!	한지아	청각2급
2	대영씨네마	2	2009-10-09 (금)	17:00	쿠티 스란크	김태은	비장애인
3	대영씨네마	3	2009-10-13 (화)	17:00	그녀, 중국 여자	손우영	비장애인
4	아외극장	1	2009-10-10 (토)	17:30	오픈콘서트-세자매	전웅길	뇌병변5급
5	롯데씨네마	2	2009-10-12 (월)	16:30	밤으로의 질주	금봉철	지체1급
6	롯데씨네마	3	2009-10-14 (수)	14:00	더스트	곽봉금	뇌병변3급
7	롯데씨네마	4	2009-10-09 (금)	16:30	카이로타임	전혜주	지체1급
8	롯데씨네마	5	2009-10-09 (금)	13:00	귀향	김경민	뇌병변2급
9	롯데씨네마	6	2009-10-09 (금)	13:30	아버지와의 마지막 여행	전웅길	뇌병변5급
10	롯데씨네마	7	2009-10-09 (금)	17:00	배후	김강	지체3급
11	롯데씨네마	8	2009-10-12 (월)	14:00	기다리게 하는 도시	정연경	뇌병변1급
12	롯데씨네마	9	2009-10-09 (금)	17:00	아니타	서범주	지체1급
13	롯데씨네마	10	2009-10-09 (금)	11:00	메트로피아	정성규	비장애인
14	부산극장	1	2009-10-10 (토)	13:30	메신저	최용수	지체3급
15	부산극장	2	2009-10-13 (화)	20:00	미스 키키	정승천	비장애인
16	부산극장	3	2009-10-14 (수)	20:00	숲	손우영	비장애인
17	해운대메가박스	1	2009-10-11 (일)	13:30	리알을 찾아서	손원진	지체2급
18	해운대메가박스	2	2009-10-14 (수)	17:00	안나의 길	손경연	비장애인
19	해운대메가박스	3	2009-10-13 (화)	13:00	검은머리	한지아	청각2급
20	해운대메가박스	4	2009-10-13 (화)	19:30	오발탄	이이현	비장애인
21	해운대메가박스	6	2009-10-10 (토)	20:00	계몽영화	김미강	비장애인
22	해운대메가박스	7	2009-10-14 (수)	16:00	킵 오브	강민아	비장애인
23	해운대메가박스	8	2009-10-09 (금)	12:30	뭘 또 그렇게까지	이정호	뇌병변1급
24	해운대메가박스	9	2009-10-09 (금)	13:30	친애하는 음악	전혜주	지체1급
25	해운대메가박스	10	2009-10-14 (수)	16:30	올리버+향기어린이악몽	금봉철	지체3급
26	해운대메가박스	M	2009-10-12 (월)	13:00	병사의 제전	곽봉금	뇌병변3급
27	CGV센텀시티	1	2009-10-12 (월)	14:00	새벽의 끝	김경민	뇌병변2급
28	CGV센텀시티	2	2009-10-12 (월)	17:00	도쿄 실락원	서범주	지체1급
29	CGV센텀시티	3	2009-10-15 (목)	20:00	우견야랑	강민아	비장애인
30	CGV센텀시티	4	2009-10-12 (월)	16:30	작은연못	최용수	지체3급
31	CGV센텀시티	5	2009-10-12 (월)	11:00	만성중독	김강	지체3급
32	CGV센텀시티	6	2009-10-14 (수)	17:00	카라오케	정연경	뇌병변1급
33	CGV센텀시티	7	2009-10-13 (화)	14:30	새벽의 끝	이정호	뇌병변1급
34	CGV센텀시티	S	2009-10-15 (목)	12:30	사랑의순간	정승천	비장애인



시민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150-849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3동 355-294
신일빌딩 2층 한국장애인인권포럼
Tel.(02)833-3097 Fax.(02)833-3096
E-mail. ableforum@hanmail.net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611-7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1992
(연산동 1422-8) 국민연금부산회관 7층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Tel.(051)710-9715 Fax.(051)710-9717



시민 부산장애인인권포럼

609-837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1동 230-16
1층 부산장애인인권포럼
Tel.(051)582-7116 Fax.(051)582-3378
E-mail. web8282@nate.com